

최종년도
최종보고서

BSPN 00279-920-7

신남극조약체제에 대한 대응전략연구
National Strategies for the New Antarctic
Treaty Regime

연구기관
한국해양연구소

과학기술처

제 출 문

과학기술처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신남극조약체제에 대한 대응전략연구”과제의 최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1996. 6.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해양연구소

총괄연구책임자 : 권 문 상

연 구 원 : 이 원 갑

이 용 희

정 갑 용

이 지 현

박 성 욱

연 구 조 원 : 조 희 정

신 혜 정

이 연 정

요 약 문

I. 제 목

신남극조약체제에 대한 대응전략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959년에 채택된 남극조약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남극조약체제는 1991년 남극환경보호의정서가 채택됨으로써 남극을 둘러싼 자원개발과 환경보전측면에서 새로운 국제질서를 형성하는 전기를 맞게 되었다. 신남극조약체제는 남극환경보전과 지구환경의 연계성을 기초로 인류의 인식을 새롭게 일깨우며, 남극환경보전을 위한 관계국의 직접적인 국내적 조치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1986년 남극조약가입과 1988년의 남극과학기지 건설로 남극에 대한 과학연구 활동을 통하여 인류공영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신남극조약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남극조약협약의 당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고 남극연구의 세계화에 기여하여야 할 것이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는 남극조약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남극조약체제와 남극환경보호의정서의 주요내용을 분석하고, 주요국의 대응현황을 검토하여 신남극조약체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IV. 연구개발결과

본 연구의 수행결과 남극환경보호의정서 채택을 계기로 형성된 신남극조약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향후 남극을 둘러싼 국제적 활동에 선도적 지위는 물론 남극자원개발에 대한 기득권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남극환경보호의정서상의 국가의무에 관한 제반사항을 수용하고 남극에서의 과학활동을 비롯한 연구진흥을 위하여 관련 국내법을 제정할 것을 검토하였다.

또한 신남극조약체제에 대한 정책분야의 연구를 활성화하고 이를 담당할 전문인력의 양성이 시급함을 연구결과로 도출하였다.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본 연구의 결과는 신남극조약체제에 대응한 국가정책수립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SUMMARY

I. Title

National Strategies for the New Antarctic Treaty Regime

II. Study Objectives and Justification

The Antarctic Treaty Regime based on 1959 Antarctic Treaty entered into a new era, with the adoption of 1991 Protocol to the Antarctic Treaty on Environment Protection, establishing the new international order on the resources development and environment protection, of the Antarctic. The New Antarctic Treaty Regime promotes the awareness of human being on the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protection of Antarctic Environment and that of Global Environment. It also recognizes the responsibility of domestic implementation by the state parties for the protection of Antarctic Environment.

Having joined the Antarctic Treaty in 1986 and established Antarctic Research Center in 1988, Korea has made a lot of efforts to carry out scientific study on Antarctic environment. As a contracting party of ATCP, Korea needs to respond actively to the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and expand the Antarctic Study at global scale.

III. Contents and Scope

This study analyzes the existing Antarctic Treaty Regime, focusing on the Antarctic Treaty, and the Protocol to the Antarctic Treaty on Environment Protection. It also reviews the status of major countries' response and suggests Korea's national strategies for the New Antarctic Treaty Regime.

IV. Results

Korea needs to respond actively to the New Antarctic Treaty Regime which has been established with the adoption of the Protocol to the Antarctic Treaty on Environment Protection, in order to play a leading role in international relationships and to acquire vested rights on the development of Antarctic resources. In this study, Korea's need was examined to enact a relevant legislation to implement the national responsibilities on the Protocol to the Antarctic Treaty on Environment Protection and to promote the scientific researches on the Antarctic.

V. Contribution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policy responding to the New Antarctic Treaty Regime.

〈 목 차 〉

제 1 장 서 론	1
1. 연구목적	3
2. 연구범위 및 방법	5
제 2 장 남극환경보전에 관한 법체제	7
제1절 남극환경보전에 관한 일반국제법	9
제2절 남극조약체제	13
제 3 장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체제	45
제1절 성립배경 및 구성	47
제2절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체제의 내용	51
제3절 남극환경보호 현황	69
제 4 장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체제의 동향	83
제1절 제20차 남극조약협의 당사국회의	85
제2절 주요국의 동향	91

제 5 장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의정서체제에 대한 대응전략 101

제1절 남극과학연구진흥의 필요성 103

제2절 남극과학연구기본계획의 수립 105

제3절 남극과학연구지원체제 강화 106

제4절 남극조약체제상 국가의무의 이행 107

제5절 남극활동에 대한 국제협력 증진 109

제 6 장 결 론 113

< 참 고 문 헌 > 117

< 부 록 > 125

< Contents >

Part I . Introduction	1
Section 1. Objective	3
Section 2. Methods and Scope	5
Part II . Legal System on Ant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	7
Section 1. General International Law for Ant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	9
Section 2. The Existing Antarctic Treaty Regime	13
Part III . 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	45
Section 1. Background and Composition	47
Section 2. Major Features of the 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	51
Section 3. Activities for Ant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 under the Antarctic Treaty Regime	69

Part IV. Current Status of the 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	83
Section 1. The 20th Antarctic Treaty Consultating Parties Meetings	85
Section 2. State Practices of Major Countries	91
Part V. National Strategy for the New Ant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 System	101
Section 1. Need to enhance Antarctic Scientific Research Activities ...	103
Section 2. Establishment of Antarctic Scientific Research Basic Plan .	105
Section 3. Strengthening of Supporting System of Antarctic Scientific Research	106
Section 4. Implementation of Natinal Duties under the Antarctic Treaty Regime	107
Section 5. Promo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109
Part VI. Results and Recommendations	113
Reference	117
Appendix	125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1986년 남극조약에의 가입과 1988년 남극기지건설로 남극에 대한 연구활동을 개시하였고, 1995년 5월에는 서울에서 제19차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를 개최하는 등 남극조약체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남극의 가혹한 자연조건과 지리적 원격성으로 인하여 남극생태계는 다른 생태계보다 인간이 야기한 어떠한 변화에 대한 적응이나 저항의 가능성이 극히 적은 취약성을 안고 있으므로, 인간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상되지 않은 지상 최후의 남극지역의 생태계에 문제를 야기할지 모른다는 국제사회에서의 우려가 커져 왔다.

인간의 활동은 항상 어느 정도의 위험을 갖고 있으므로, 어떤 수준에서 위험이 인류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검증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현상태에서 최소한의 인류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결과의 발생을 예방하고, 남극의 환경문제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오염물질의 배출규제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환경파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게 하는 대책이 필요하며, 남극지역에서의 활동은 남극환경과 관련생태계에 대한 해로운 영향을 제한하도록 계획되고 수행하며, 남극의 이용에 있어 그 파괴를 사전에 회피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가장 그 파괴의 정도가 적은 방법을 택하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니된다.¹⁾

남극자원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은 지구 최후의 천연대륙을 오염시키고 급기야 지구 전체의 기후 등 자연조건을 악화시킬 위험부담을 안게 될지도 모르므로, 남극만이 지니고 있는 심미적, 자연적 가치를 보존하여 인류공동의 유산으로 남기기 위하여 모든 개발을 거부하고,²⁾ 남극환경과 관련생태계의 보호와 남극의 자연적인 미학적 가치 및 특히 지구환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의 가치를 포함한 남극의 고유한 가치를 보호하는 것은 남극조약지역에서의 모든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근본적인 고려사항이다.³⁾ 그러나, 환경보호에

1) Peter Beck,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Antarctic*(London: Croom Helm Ltd., 1986), pp.213-218.

2) 동 지역에서는 과학탐사를 제외한 광물자원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금지된다(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제7조).

3) 동 의정서 제3조 1항.

관한 한, 기존의 남극조약체제는 아무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남극환경보전체제에서 남극환경보전을 위한 포괄적인 규범을 담고 있는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가 채택되었다.⁴⁾

이에, 1959년에 채택된 남극조약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남극조약체제는 1991년의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에 의하여 새로운 국제질서형성의 전기를 맞이하고 있는 바, 동의정서는 남극의 환경보전과 지구환경의 연계성을 기초로 환경문제에 대한 인류의 인식을 새롭게 일깨우며, 남극의 환경보전을 위한 당사국의 직접적인 국내적 조치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1994년 11월에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해양법협약상의 해양관할권 문제, 해양환경보호의 문제 등 기존의 남극체제와의 충돌 내지 모순의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는 장래의 남극체제에 대한 불안요소로서 작용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양자를 어떻게 조화롭게 적용하는가가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남극연구를 통하여 인류공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우리나라로서는 동 의정서체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남극연구의 세계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남극조약체제에 대한 활발한 연구를 통하여 국제협력 및 우리의 국제적 위상도 드높이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체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먼저 남극환경보호에 관한 일반국제법은 무엇이며, 이러한 일반국제법과 남극환경보호를 위한 법규간의 상충문제를 알아본 뒤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이전에 체결된 각종 남극관련 조약등을 분석하여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체제와의 상이점을 도출하여 그에 따른 전략적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즉, 기존의 남극조약체제와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체제를 분석하여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기존 남극체제에 대한 국가정책을 우선 고찰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남극조약의정서에 따라 새로이 수립될 것이 요구되는 국가정책 및 국내법 제정 등 국가적 의무이행방안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에 그 목적이 있다.

4) 동 의정서는 채택 당시의 남극조약협의당사국 26개국에 의해 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의 문서가 기탁된 뒤 30일후에 발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동 의정서 제23조).

제 2 절 연구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채택으로 인하여 형성되기 시작한 신 남극조약체제에 대응한 우리나라의 대응전략을 모색하는 것을 연구의 범위로 하였다. 즉,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의 주요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국가의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고 이에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남극조약체제를 이루고 있는 남극조약(1959년), 남극물개보존협약(1972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1980년) 등의 국제조약과 남극 동식물군의 보존을 위한 합의규칙(1964년),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된 권고들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남극환경보전에 관한 일반국제법으로서 환경보호에 관한 일반원칙, 1972년 스톡홀름선언, 1992년 리우선언,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등의 관련사항을 검토하였으며,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의 국내적 수용을 위한 각국의 국내법으로서 노르웨이의 'Regulations Relating to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Antarctica' 와 호주의 'Antarctic(Environment Protection) Legislation Amendment Act 1992', 'Antarctic Treaty(Environment Protection)(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Regulations(1993. 5. 27)', 'Antarctic Treaty(Environment Protection)(Waste Management) Regulations(1994. 3. 4)', 그리고 미국의 관련법안인 'Ant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of 1996'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해양연구소의 연구진을 중심으로 과학기술처, 외무부의 자료지원 및 관련학계 등의 협조체제하에 연구사업이 수행되었다.

제 2 장

남극환경보전에 관한 법체제

제 1 절 남극환경보전에 관한 일반국제법

1. 환경보호에 관한 일반원칙

최근 20세기의 유례없는 급속한 과학기술과 문명의 발전은 기아, 질병, 전쟁의 발생을 억제하였고, 그 결과 급격한 인구증가, 산업활동의 팽창, 농업생산성의 확대 등을 가져와서 인위적인 환경변화는 심각한 국제사회의 문제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인간이 활동하는 가운데 방출되는 물질과 에너지가 인간의 건강과 재산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피해를 주는 것을 환경오염이라 하는 바, 국제적 환경보호를 위한 움직임은 일찍부터 있어 왔다.

본래, “자기 것을 이용함에 있어서는 타인에게 위해가 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Sic Utere Tuo Ut Alienum Non Laedas)”는 원칙은 개인간의 관계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국가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적용될 일반국제법상의 원칙으로서,⁵⁾ 오늘날 대부분의 학자들은 국가가 자국영토에 대해 영토주권을 향유할지라도 그것은 국가에 대해 무제한적인 행동의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며, 모든 국가는 인접국 또는 그 국민에 부당하게 유해한 방향으로 그 영토가 이용됨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⁶⁾. 이에 따라 국가는 자국영토내에서 타국에 부당하게 유해한 오염 또는 수류변경을 막지 않으면 안되고 타국 선박의 무해통항에 개방되어 있는 영해·해협·운하 및 하천에 기뢰나 그 밖의 통항장애물의 부설을 방지해야 하며, 인접국의 대기권이나 공해를 오염시킬 산업활동 또는 핵실험을 억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할 것이다.⁷⁾

이와 같은 일반원칙은 다음과 같은 선언 즉 1949년 12월 6일 국제법위원회가 유엔총회에 제출한 ‘국가의 권리 의무에 관한 선언’ (Draft Declaration on Right and Duties of States)⁸⁾, 1946년 12월 19일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설치된 조사위원회 보고서, 1947년 10월 21일 유엔총회 제100차 전체회의 결의109(III), “유엔발칸위원회 추

5) 김찬규, “환경오염과 국제법”, 법과 환경(서울: 삼영사, 1977년), pp.245-255.

6) L.Oppenheim - H.Lauterpacht, *International Law*(8th ed., 1955), Vol. I, p.291.

7) 동일한 취지는 코로푸해협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발견된다. *Corfu Channel Case, Jugement of April 9th, 1949* : I.C.J. Reports 1949, p.22.

8) “모든 국가는 자국영역내에서 보급되는 상황이 국제평화와 질서를 위협하지 않도록 확보할 의무를 진다”는 것이다(제7조).

가보고서”(Supplementary Report of the UN Committee on the Balkans), ⑤ 1933년 12월 26일 미주 제국가간에 조인된 “국가의 권리, 의무에 관한 몬테비데오 협약”⁹⁾ (Montevideo Convention on the Rights and Duties of States)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¹⁰⁾

이러한 원칙에 비추어 각국은 비록 자국영역내에서의 행위라 할지라도 타국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환경오염 기타 유해한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그러한 부작위의무는 남극에 있어서도 다를 바 없다고 볼 것이다.¹¹⁾ 즉, 이러한 것은 모두 국가는 타국의 권리행사에 방해되게 자기 영역을 이용할 수 없다는 일반국제법상의 원칙에서 유래한 것이며 바로 그러한 원칙에 비추어 각국은 환경오염을 야기시킬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고 남극지역에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된다.¹²⁾

이와 같은 결론은 비록 남극조약체제의 밖에 머물고 있는 국가라 할지라도 남극조약당사국과 마찬가지로 일반국제환경법상의 금지명령에 종속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그러한 금지명령은 지나친 일반성과 환경보호를 위한 규제기준의 모호성 때문에 구체적 상황에서 환경피해를 둘러싸고 국제분쟁이 발생할 소지를 안고 있다.¹³⁾

2. 1972 스톡홀름 선언

1970년 4월 22일 제1회 지구의 날(Earth Day)이 제정된 이래 지구공동체에 대한 관심은 날로 높아져 갔는데,¹⁴⁾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에서 1972년 유엔환경회의(UN

9) 동 협약은, “…… 이러한 권리의 행사는 국제법에 따른 타국의 권리행사 이외의 것에 의해서 제한되지 아니한다(제2조)”고 규정한다.

10) 김찬규, 앞의 논문, pp.245~249.

11) L.Oppenheim - H. Lauterpacht, *op. cit.*, Vol. I, pp.346-347.

12) 김찬규, “국제적으로 본 해양오염방지의 실태”, *경희법학*, 제16권 1호, 1979년 8월, p.91.

13) B.A. Boczek, “The protection of the Antractic Ecosystem : A study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13, No.3, 1983, pp.390.

14) 특히 지구의 환경오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주목을 끄는 것에는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를 개최기로 한 유엔결의(UNGA Resolution 2398(X X II))의 채택은 해양을 포함한 지구환경문제에 있어서 획기적 전환점이 되었다. 1972년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유엔인간환경회의에서는 환경보호문제가 국제법적 규제를 요하는 국제적 관심사로 크게 부각되었고, 1972년 인간환경에 관한 유엔회의의 스톡홀름 선언이 채택되었다.

동 선언은 서문과 26개의 원칙, 그리고 109개의 권고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동 회의에서는 국제환경기구의 창설을 논의하여 1972년 12월 15일에는 유엔환경계획(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 UNEP)이 창설되어 환경문제를 비로소 유엔체제하에 두기로 하였다.¹⁵⁾

동 선언 가운데에서, 특히 제국가는 유엔헌장과 국제법원칙에 따라 자국의 환경정책에 의거하여 자국의 자원을 개발할 주권을 보유하며, 자국의 관할권 또는 통제하에 행한 활동이 타국의 환경 또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환경에 대한 손해를 야기치 않도록 책임을 진다는 스톡홀름선언 원칙²¹¹⁶⁾은 공유자연자원에 관한 1978 UNEP 보고서, 기타 수 많은 국제협정과 결의 등의 문서에서 열거되고 언급되어 왔다.¹⁷⁾ 그 밖에, 자연자원, 특히 자연생태계의 대표적 샘플보호, 야생동물과 그 서식처의 보호 관리에 대한 인간의 책임, 재생할 수 없는 자원의 보호, 사용 및 그 사용수익의 인류 공유 보장, 제국가의 해양오염 방지조치, 자국의 자원개발 주권 보유 및 타국이나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환경침해 금지 등은 남극지역 환경보호를 위하여 특별한 관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¹⁸⁾

1972년 로마클럽이 발표한 “성장의 한계”, 1972년 유엔환경인간회의가 채택한 “인간환경선언”, 1980년 미국정부가 작성한 “서기 2000년의 지구” 등이 있다.

15) 그러나 유엔체제하의 각 기구 및 기관에서 분산하여 환경문제를 다루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UNEP는 환경관련업무를 기획, 평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16) “국가의 경제적 권리와 의무에 관한 헌장”(Charter of Economic Rights and Duties of States)과 *Charter of Economic Rights and Duties of States*, Dec.12, 1974, UN(GA) Res. 3281 (XXIT), 29 U.N. GAOR, Supp.(No. 31) 50, U.N. Doc. A/9631(1975), Art.30.

17) Boczek, *op. cit.*, p.389.

18) Stockholm Declaration, Principle 21. 한편, 남극지역은 공해와 같이 “국가관할권을 넘는 지역”이다. Boczek, *op. cit.*, p.389.

3. 1992년 리우선언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는 1982년에 유엔총회에서 세계자연헌장(World Charter for Nature)을 채택하고, 1987년에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의 보고서를 채택하여 환경문제의 구조적 발생원인으로서 인구증가, 식량부족, 에너지 사용증대, 빈곤, 외채 등 사회·경제적 남북격차를 지적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 등을 지적하였다. 1988년에는 유엔총회결의로서 유엔환경개발회의의 개최 필요성, 회의개최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채택하였다. 1989년 유엔총회에서는 준비위원회를 발족시켰으며, 1990년 유엔총회에서는 UNCED개최를 1992년 6월1일부터 6월 12일까지 리우데자네이로에서 개최기로 결의하였다. 준비위원회에서는 제4차 최종준비회의(1992년 3월 9일부터 4월 3일까지 미국, 뉴욕에서 개최)를 개최하여 「지구헌장」초안을 마련하고,¹⁹⁾ 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리우환경선언』을 선포하고,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온난화방지협약, 삼림보호원칙, 의제21 (Agenda 21)이 채택하고, 집행기구로서 유엔경제사회이사회 직속으로 지속개발위원회(CSD)를 설치할 것을 결정하였다.

4.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국제환경법의 성장에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역시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국제적 노력이며, 이러한 노력은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에서 결실을 맺었다.²⁰⁾ 제3차 유엔해양법협약은 제12부(part X II)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의 46개 조항을 해양환경보호에 할애하여 일반적 원칙(제192조~제206조)은 물론, 해양오염원을 육상활동, 해저자원개발 활동, 심해저개발 활동, 해양투기, 선박활동 및 대기를 통한 오염으로 분류하여 규제 원칙을 천명하였으며(제207조~제212조), 기타 집행관할 등 절차적 문제에까지도 비교적 상세한 조항을 두었다.

19) 동아일보, 1992년 5월 4일자, 10면.

20) 1982년 12월 10일에 Montego Bay에서 체결된 새로운 해양법적인 UN해양법협약은 전문과 총 320개의 조문, 9개의 부속서와 6개의 특별부속서 및 4개의 결의로 되어 있다. 한국해양연구소, 국제연합해양법협약(1991년), 참조.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이라는 제목의 제12편은 다시 11개의 항목으로 세분되어 있다. 11개 항목의 내용은 총칙편 및 지역협력,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원조, 공해위험의 감시 및 환경평가, 해양공해의 예방, 감소, 통제를 위한 국제규칙과 국내립법, 해양공해 규제법규의 강제시행, 권력남용에 대한 안전조치, 얼음에 덮인 수역, 국제책임, 주권면제, 해양공해 규제에 관한 다른 협약상의 의무로 되어 있다.

1982년 해양법협약 제12편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펴 보면 매우 포괄적인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²¹⁾. 모든 국가들에 대하여 바다 사용에 상응하는 환경보존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당사국들은 해양환경의 오염을 예방, 감소, 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국제기구를 통하거나 관계국가들간의 접촉을 통하여 보편적·지역적으로 상호협력하여야 한다²²⁾.

제 2 절 남극조약체제

남극의 법적 지위와 남극에서의 인간의 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법적 체제는 남극조약체제를 모범으로 하고 있는 남극조약체제(Antarctic Treaty System : ATS) 또는 남극체제(Antarctic System)로서, 남극조약을 중심으로 하여 이로부터 파생된 기구와 제도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이다.²³⁾

이러한 남극조약체제는 1959년의 남극조약, 1961년에 정책결정권을 가진 국가, 즉 남극조약협의당사국(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Parties : ATCPs)에 의하여 합의된 수많은 ‘권고’(Recommendations), 1978년에 발효한 ‘1972 남극물개보존조약(1972 Convention of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Seals.)’, 1982년에 발효한 ‘1980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 CCAMLR.)’, ‘국제과학연맹이사회(International Council of Scientific

21) Peter Beck,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a Antarctica*(London: Croom Helm Ltd., 1986), p.213.

22) *Ibid.*, pp.241-215.

23) Lee Kimball, “*Antarctic Issues Today*”, presented 2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ast Asia and the Law of the Sea, IIED(July 1984), p.1.

Union : ICSU)에 의하여 1985년에 설치된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Antarctic Reserach : SCAR)’ 그리고 최근 1991년 10월에 채택된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의정서(Protocol on the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y)’ 등이 그것이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남극조약체제로서 남극조약, 남극물개보존협약, 남극해양생물자원협약,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권고 등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1959년 남극조약

1) 성립배경

남극조약 원서명국이 1961년 6월 23일 비준함으로써 발효하게 된 남극조약은 전문과 14개조로 된 것으로, 남극의 평화적 이용과 군사적 사용금지, 과학조사의 국제협력증진, 영유권 주장의 동결을 골자로 하며, 남극점을 둘러싼 남위 60° 이남의 지역을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는(표 II-1 참조), 남극체제에서의 모범에 해당하는 법규범이다²⁴⁾

1959년의 남극조약체제는 미국이 1948년에 일부국가에 의한 남극의 공동관리를 제의한 후에 칠레가 동년 남극에 대한 영유권을 5년간 동결시키겠다고 반응을 보인데 이어 남극에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각국의 관심이 국제적 규율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는데 연유한다. 이러한 관심은 1957-58년 국제지구관측년도(International Geophysical Year : IGY)를 계기로²⁵⁾, 미국과 소련이 여타 10개국(영국, 프랑스, 벨기에, 노르웨이, 칠레, 아르헨티나, 남아공화국, 호주, 뉴질랜드, 일본)과 함께 협력의 정신으로 1959년 12월 1일에 워싱턴에서 남극조약체제를 채택하였으며 동조약은 1961년 6월 23일에 발효하였다.

12개 원서명국으로부터 출발한 남극조약은 1995년 5월 현재 남북한을 포함한 42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24) Lee Kimball, *op. cit.*, pp.1-2.

25) The British Antarctic Survey Natural Environmental Research Councils, A Visitor's Introduction to the Antarctic and its Environment(1984), p.8.

<표 II-1> 남극조약체제의 지리적 적용범위

조 약 명 칭	지리적 적용범위	해당 조문
남극조약	남위 60도 이남	제6조
남극물개보존협약	남위 60도 이남	제1조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남위 수렴선 이남(대체로 남위 45도와 일치)	제1조
남극광물자원활동규제협약	남위 60도 이남	제5조
남극연구과학위원회	남극 수렴선 이남(단, 수렴선 이북의Amster- dam, Crozet, Gough, Kerguelen,Macquarie, Prince E.을 포함)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남위 60도 이남	제1조

자 료 : 각 남극관련 협약에서 발췌.

2) 주요내용

1959 남극조약은 남극에서의 과학적 협력과 평화적 공존을 위한 노력으로서 30년 가까이 남극을 관리해왔는데,²⁶⁾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²⁷⁾

i)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며 군사적 이용을 금지(제1조)하고, ii) 과학조사의 자유를 보장(제2조)하며, iii) 과학조사를 위한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사계획에 관한 정보와 과학자 및 조사결과를 상호교환하며(제3조), iv) 영유권주장을 동결(제4조)하고, v) 핵폭발, 방사능, 발암물처분을 금지하고(제5조), vi) 협약 적용범위는 남위 60도 이남지역으로 하며(제6조), vii) 가입은 유엔회원국이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ATCP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제13조1항).

26) F.M. Auburn, *op. cit.*, p.52.

27) The British Antarctic Survey Natural Environmental Research Council, *op. cit.*, pp.8-9.

그러나 핵폭발 및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을 금지한 것 외에는 남극조약은 남극지역의 환경보호에 관하여 명언한 바 없다. 다만 이 조약 제9조는 특별히 동의 가능한 조치에 관한 사정에 속하는 것으로서 '남극지역에서의 생물자원의 보존과 보호'를 열거하고 있다. ATCP는 남극생물자원의 보호·보존을 제9조 1항(f)에서 도출되는 그들의 의무로 보고 있으며, 이 규정을 남극환경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조치의 근거로 확대 해석한다.

한편 조약의 주요 목적이 남극지역에서의 과학적 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촉진하는 것이므로 당사국에게 그 목적을 방해할수 있는 모든 환경상의 피해발생을 회피해야 할 묵시적인 의무가 있다고 주장될 수 있다.²⁸⁾ 이 조약 제5조의 핵폭발 및 방사성 폐기물 처분금지는 이러한 시각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3) 운영체계

남극조약체제가입은 유엔회원국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협의당사국 전원합의를 얻어 이뤄지는데, 남극조약의 운영은 1959년 원서명국인 12개국 (미국, 소련, 일본, 칠레, 아르헨티나, 남아연방공화국,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벨기에, 호주, 뉴질랜드) 과 추후 가입한 14개국 (폴란드, 서독, 인도, 브라질)과 비협의당사국 17개국 등 모두 43개국으로 구성된 이른바 「남극조약체제협의당사국」에 의해 배타적으로 이뤄지고 있다.²⁹⁾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는 매년마다 회의(Consulative Meeting)를 갖고 결정, 조치, 결의 등의 이름으로 남극운영에 관한 중요한 여러 입법을 제정하고 있으며,³⁰⁾ ATCP의 운영은 만장일치로 한다. 보통,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 옵서버로 참석하는 국제기구는 남극해양생물자원위원회(CCAMLR),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AR), 남극국가사업운영자회의(COMNAP) 등 3개 국제기구이며, 동 협의회에 참석하는 전문가가

28) Boczek, *op. cit.*, p.368.

29) 외무부, 제20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결과보고서, 1996년 6월, p.1.

30) 1995년 5월 현재 남극운영에 관한 권고문은 모두 210개에 이르며, 제19차 회의(대한민국, 서울)에서는 이들 권고들을 법적 효력을 가지는 조치, 내부의 사무처리에 관한 결정 및 권고적 성격을 지니는 결의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들 권고문은 대부분 협의당사국에 의해 비준되어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

룹으로는 남극 및 남빙양연합(ASOC), 세계기상기구(WMO), 국제자연보존연맹(IUCN), 국제수로기구(IHO), 국제남극관광협회(IAATO),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국제해사기구(IMO), 정부간 해양위원회(IOC) 등이 있다.

<표 II-2>는 1996년 6월 현재의 남극조약협약의 당사국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표 II-2> 남극조약협약의 당사국 현황

(1996년 6월 현재)

<p>원서명국(12개국)</p> <p>미국, 러시아,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일본, 칠레, 남아공,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뉴질랜드</p>
<p>추후 가입국(14개국)</p> <p>대한민국, 브라질, 중국, 에쿠아도르, 핀란드, 독일, 인도, 이태리, 네덜란드, 페루, 폴란드, 스페인, 우루과이, 스웨덴</p>
<p>비협약당사국(17개국)</p> <p>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체코, 덴마크, 그리스, 파테말라, 파푸아 뉴기니아, 슬로바키아, 스위스, 쿠바, 헝가리, 루마니아, 북한, 우쿠라이나, 터어키</p>

자 료 : 외무부, 제20차 남극조약협약의 당사국회의의 결과보고서, 1996. 6, p.1.

2. 1972년 남극물개보존협약

1) 성립배경

19세기 초엽이래 기업의 관심을 끈 남빙양의 생물자원은 바다표범과 고래였다. 고래개발규제조치로서는 '1931년 국제고래규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Regulation of Whaling)'과 '1946년 국제포경규제협약'이 있지만, 고래는 고도의 이주성 동물인 까닭에 포경에 관한 협약은 세계적으로 적용되며 따라서 남극해는 그 적용해역의 일부에 불과하다.³¹⁾

19세기에 수백만의 희생을 가져온 남극해역의 남획으로 인하여 상업적 개발이 수년 동안 휴지상태에 놓이자 1964년 제3차 남극조약협의회의(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 ATCM)에서는 자국정부가 자국민에 의한 원양물개포획을 자발적으로 규제할 것을 제의하게 되고(Rec. 3-6), 1966년 제4차 회의에서는 “남극원양물개포획의 자발적 규제에 관한 잠정치침”³²⁾이 승인되었으며(Rec.4-21), 1968년 제5차 회의에서는 협약의 초안이 심의되어, 런던에서 개최되었던 1972년 2월 11일 남극물개보존회의에서 마침내 남극물개보존협약이 채택되었다. 이 협약은 본래 1964년 벨지움에서 개최된 제3차 남극조약협의회의에서 제기되어 협의당사국들은 남극의 자연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자국민의 물개포획을 규제하기로 합의하였다.³³⁾ 이어 1966년 제4차 협의회의에서 남극물개 포획기의 자발적 규제를 위한 임시지침이 권고문 형식으로 채택되었고³⁴⁾, 이를 근간으로 1972년 영국의 런던에서 협약이 체결되었다.

남극생물자원의 보존과 합리적 이용만을 위하여 체결된 최초의 극지협약이 1972년 남극물개보존협약으로, 1972년 남극조약체제 원서명국 12개국의 서명과 이들중 10개국(뉴질랜드, 호주 제외)의 비준을 얻어 1978년에 발효된 이 남극물개보존협약³⁵⁾은 남극권내에 서식하고 있는 6종류의 물개를 보존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동 협약의 적용대상지역은 남극조약체제와 같이 남위 60° 이남의 지역이나 현재 남극물개에 대한 상업적 포획은 개시되지 않고 있어 이 협약은 예방적 조치의 성격을 강력하게 띄고 있으며 협약가입은 현 회원국의 전원동의에 의해 가능하다.

2) 주요내용

이 협약은 남위 60°이남 해역에서의 남방코끼리물개, 레오파드물개, 웨델물개, 크랩이더물개, 로스물개, 남빙털물개 등 6개 종류의 물개에 대해 포획허용한도, 포획시

31) 고래는 남극조약체제 체계밖의 세계적인 국제협약에서 규율되고 있다. Boczek, *op. cit.*, p.373.

32) Interim Guide Lines for the Voluntary Regulation of Antarctic Pelagic Sealing.

33) B.A. Boczek, *op. cit.*, pp.347-425.

34) 권고문 4-21.

35)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Seals*, London, 1 June-31 Dec. 1972 (Entered into Force on 11 March 1978).

기, 포획지역, 포획방법별로 규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실제로 시행된 바는 없다. 포획이 있으리라는 가정하에서 이 협약이 교섭되긴 했으나 그 교섭과 발효 이래 남극지역에서는 어떠한 상업적 물개포획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 기능이 상실되고 있는 이 협약은 결국 규제역할보다는 예방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II-2>는 남극물개보존협약의 비준 및 발효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표 II-2> 남극물개보존협약의 비준 및 발효현황

(1995년 5월 8일 현재)

국 명	서 명	기 탁
아르헨티나	1972. 6. 9	1978. 3. 7
호 주	1972. 10. 5	1987. 7. 1
벨 기 에	1972. 6. 9	1978. 2. 9
칠 레	1972. 12. 28	1980. 2. 7
프 랑 스	1972. 12. 19	1975. 2. 19
일 본	1972. 12. 28	1980. 8. 28
뉴질랜드	1972. 6. 9	미비준
노르웨이	1972. 6. 9	1973.12. 10
러 시 아	1972. 6. 9	1978. 2. 8
남 아 공	1972. 6. 9	1972. 8. 15
영 국	1972. 6. 9	1974. 9. 10
미 국	1972. 6. 28	1977. 1. 19
추 후 가 입 국		
폴 랜 드		1980. 8. 15
독 일		1987. 9. 30
캐 나 다		1990.10. 4
브 라 질		1991. 2. 11
이 태 리		1992. 4. 2

자 료 : Doc. in XIXth Consultative Meeting, XIX ATCM/INF 11, May 8, 1995.

3. 1980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1) 성립배경

1970년대 중반 이후 여러 국가들에 의한 남극대륙 및 주변해역의 적극적인 과학 탐사로 물개 이외의 남극생물자원에 대한 상업적 개발가능성은 남극조약협약의 당사국들의 중요한 관심사로 등장하게 되었다.

남극해양생물자원, 특히 크릴새우(Krill)의 상업적 개발에 대한 압력은 남극해양생태계를 위태롭게 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가중시켜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음부터 남극환경보호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인식했던 남극조약협약의 당사국들(ATCPs)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해 왔으며 남극조약체제 제9조 1항(f)의 규정으로부터 남극생물자원보존에 관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왔다.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풍요로운 곳으로 알려진 남극해에 있어서의 해양생물자원개발에 대한 시도가 과열되고 어업권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발생하기 전에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정을 교섭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남극생물자원을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체제형성의 필요성이 1972년 제7차 남극조약협약의 당사국회의(ATCM)에서의 남극해양생물자원문제에 대한 논의를 기점으로 하여 남극해에서의 어업활동과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합리적 관리체제확립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1975년 제8차 회의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어,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³⁶⁾은 1980년 5월 20일 캔버라에서의 최종외교회의에서 협약의 최종문안이 채택되고, 1982년 4월 7일에 발효하기에 이르렀다. 우리나라는 1985년 4월에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에 가입하였으며 동년 11월엔 보존위원회 회원국의 지위를 취득했다.³⁷⁾

동협약은 호주에 사무국을 두고 매년 회의를 개최, 각국의 남극 해양생태계 자료를 분석하여 어중에 따른 그 해의 어획 쿼터를 결정하고 있다.³⁸⁾

36)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CCAMLR), Canberra, 20 May 1980(Entered into Force on 7 April, 1982).

37) J.N. Barnes, "The Emerging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 An Attempt to Meet the New Realities of Resource Exploitation in the Southern Ocean", *The New Nationalism and the Use of Common Spaces*, ed. J.I. Charney (New Jersey : Allanheld Osmun Publishers, 1982), p.249.

2) 주요내용

이 협약은 남극대륙 및 그 주변해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모든 생물자원, 즉 어족, 갑각류 및 조류 등의 합리적 이용을 포함한 적절한 보존에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적용대상지역은 남극조약이나 물개보존협약과는 달리 광범위하여 남위 60도 이남지역은 물론 남극수렴선³⁹⁾(Antarctic Convergence Line)까지 확대되어 있다. 이 협약의 가장 큰 특징은 남극생물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적절히 보존하는 데에 있어서 이른바, “생태계 접근방법(Ecosystem approach)”을 원용했다는 데에 있다.⁴⁰⁾ 이 생태계 개념은 개별적인 생물자원에 관해서가 아니라 전체적인 해양생태계의 보존에 접근하는 것이다⁴¹⁾.

이 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⁴²⁾

- i) 이 협약은 남위 60°이남 해역의 남극해양생물자원과 60°S와 남극수렴선의 보호와 합리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및 제2조).
- ii) 남극조약체제 협의당사국은 이 협약에서 우월한 입장이 인정된다(제5조).
- iii)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ommiss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를 설치하여 각종 조사 및 보존조치(금어구역, 어획방법 및 어획량, 금어기, 보존어종지정 등)를 취하도록 한다(제7조 및 제9조).
- iv) 협약채택회의에 참가한 각 협약당사국은 보존위원회의 회원국이 되며 추후 가입국은 해양생물자원에 대한 조사 또는 어획활동에 종사하는 기간 동안 보존위원회의 회원국이 될 자격이 있다(제7조 2항).
- v) 협약비당사국의 국민 또는 선박의 활동이 협약의 목적수행을 저해할 때에는 그

38) 김수암, “남극해 어류자원의 현황 및 생물학적 특징”, 한국극지연구, 제1권 1호, 1990, pp.67-75.

39) 남극수렴선은 대체로 50°S-60°S 근처에서 바닷물이 수렴하는 불연속대로서, 남극해역에서 흐르는 해류의 차갑고 염도가 높은 바닷물이 수렴하여 심해류가 생기는 남극해의 비교적 좁은 부근해역으로, “극전선대(Polar Front Zone)”이라고도 알려진 이 수렴선이 남빙양의 표면경계선을 이룬다. 즉 남극해역과 아남극해역의 환경을 이루며, 이곳을 경계로 하여 수온이 2°C-3°C 가량 달라지고 생태계가 갑자기 달라진다.

40) J.N. Barnes, *op. cit.*, pp.300-345.

41) Boczek, *op. cit.*, p.380.

42) 외무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 가입안(1985년), pp.9-32.

국가의 주의를 환기해야 한다. 계약당사국의 그러한 활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제10조).

vi) 각 계약당사국은 이 협약의 규정과 보존위원회가 채택한 모든 조치의 준수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제21조).

vii) 이 협약목적과 협약규정준수의 확보를 위하여 감시 및 검사제도를 수립한다(제24조).

연안국 관할권에 대한 회의적인 자세, 위원회와 그 자문기관으로서의 과학위원회의 설치, 남극조약체제와의 다변적 관련등을 포함하고 있는 이 협약의 기본적인 규정들이 주요문제에 대한 경쟁요인간의 타협의 산물임을 의미한다⁴³⁾. 또한 회의결정에 있어서의 만장일치제, 국제공동체이익의 외면, 생태계에 관한 중요한 정보의 축적을 유도하는 기구창설의 실패, 국가별 어획고 할당제, 강제적 분쟁해결제도, 집권화된 시행제도 등에 관한 규정의 실패 등과 같은 이 협약의 결점은 남극해안환경보존에 관한 이 협약의 약속을 약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수 많은 정치적, 제도적, 과학적, 기술적 요인들이 협약의 시행에 부정적 적용을 할 수도 있으나 협약당사국들이 자제와 협력으로 협약의 목적을 성실히 실천해 간다면 CCAMLR은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무분별한 상업적 개발과 자원보존 및 현장보존의 균형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국제협력의 모델로서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3) 운영체계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은 남극조약협약당사국의 제9차 회의의 결정에 따라 1977년부터 1980년까지 수 차례의 특별회의를 열어 1980년 5월 20일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을 채택하였으며, 1982년 4월 7일 발효되었다.

1995년 5월 현재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 위원회는 대한민국,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에, 브라질, 칠레, 유럽공동체,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태리,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러시아, 남아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등 22개국으로 되어 있고, 이밖에 동 위원회의 구성국은 아니지만 동 협약을 수락한 나라는 불가리아, 캐나다, 핀란드, 그리스, 네덜란드, 페루 및 우루과이 등 7개국이다.⁴⁴⁾

43) Ronald F. Frank, *op. cit.*, p.318.

44) Document in XIXth Consultative Meeting, XIX ATCM/WP 7, May 8, 1995.

<표 II-3>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의 비준 및 발효현황(1995년 5월 2일 현재)

국 명	서 명	비 준	발 효
아르헨티나	1980. 9. 11	1982. 5. 28	1982. 6. 27
호 주	1980. 9. 11	1981. 5. 6	1982. 4. 7
벨기에	1980. 9. 11	1984. 2. 22	1984. 3. 23
브라질		1986. 1. 28	1986. 2. 27
불가리아		1992. 9. 1	1992. 9. 30
캐나다		1988. 7. 1	1988. 7. 31
칠 레	1980. 9. 11	1981. 7. 22	1982. 4. 7
유럽공동체		1982. 4. 21	1982. 5. 21
핀란드		1989. 9. 6	1989.10. 6
프랑스	1980. 9. 16	1982. 9. 16	1982.10. 16
독 일	1980. 9. 11	1982. 4. 23	1982. 5. 23
그리스		1987. 2. 12	1987. 3. 14
인 도		1985. 6. 17	1985. 7. 17
이태리		1989. 3. 29	1989. 4. 28
일 본	1980. 9. 12	1981. 5. 26	1982. 4. 7
대한민국		1985. 3. 29	1985. 4. 28
네덜란드		1990. 2. 23	1990. 3. 25
뉴질랜드	1980. 9. 11	1982. 3. 8	1982. 4. 7
노르웨이	1980. 9. 11	1983.12. 6	1984. 1. 5
페 루		1989. 6. 23	1989. 7. 23
폴란드	1980. 9. 11	1984. 3. 28	1984. 4. 27
러시아	1980. 9. 11	1981. 5. 26	1982. 4. 7
남아공	1980. 9. 11	1981. 7. 23	1982. 4. 7
스페인		1984. 4. 9	1984. 5. 9
스웨덴		1984. 6. 6	1984. 7. 6
우크라이나		1994. 4. 22	1994. 5. 22
영 국	1980. 9. 11	1981. 8. 3	1982. 4. 7
미 국	1980. 9. 11	1982. 2. 18	1982. 4. 7
우루과이		1985. 3. 22	1985. 4. 21

자 료 : Document in XIXth Consultative Meeting, XIX ATCM/INF 36, May, 11, 1995.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의 운영기구로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표기)가 있으며 동위원회가 각종 결정권(제9조, 10조, 24조)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원회 당사국이 되지 않는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의 가입은 의미가 없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의 원서명국 15개국이 자동적으로 구성하고 있는 위원회의 가입조건은 남극해양생물을 조사 또는 어획활동을 하는 기간동안으로 규정(제7조 2항 b)하고 있으나,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CCAMLR)의 가입국으로서 위원회 가입을 신청한 선례가 아직 없다.⁴⁵⁾ 그러나 위원회 가입은 상기 제7조 2항 (b)만으로 충족되지 않는 것은 어떤 나라의 위원회 가입이 기존 위원회 당사국의 이의가 있을 때는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위원회는 중요한 본질문제가 아닌 사항에 대해서는 다수결로 처리하나 본질문제는 만장일치로 처리한다. 위원회의 상주사무소는 호주의 Hobart에 주재하는 바, 위원회는 제1차회의를 1982년 5월 25일-6월 11일간 Hobart에서 개최하여 재정 및 사무직원 근무규칙 등을 결정하였고 1983년 8월 29일-9월 9일간 제2차 회의를 열어 의사규칙 등을 결정하였다⁴⁶⁾.

또한, 이 협약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운영위원회와 상설과학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운영위원회는 생물자원보존을 위한 제반 자료정리, 현존생물자원포획 통계집계, 보존대책의 채택 등 제반조치의 결정권을 행사하며 상설과학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과학고문역할을 맡고 있다.⁴⁷⁾

4. 남극연구과학위원회

1) 성립배경

남극체제는 남극의 과학조사에 관심을 표명하고 있거나 또는 조사에 관련되어 있는 국제과학기구와도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는데, 현 남극체제와 유기적 관련을 맺고 있는 국제과학기구의 대표적인 예는 남극연구과학위원회(Scientific Committee on

45) Ronald F. Frank, *op. cit.*, pp.340-345.

46) 장순근, “남극의 사적지와 역사적 기념물과 우리나라”, 한국극지연구, 제1권 1호, 1990년 12월, pp.35-49.

47) *Ibid.*, p.250.

Antarctic Reserch : SCAR)이다.⁴⁸⁾ 남극연구과학위원회는 1958년 2월 세계과학연맹 이사회(ICSU)의 부설기관으로 창설되어 남극의 과학탐사를 유도, 발전하고 국제협력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95년 현재 남극연구과학위원회의 정회원국은 대한민국을 비롯하여 아르헨티나, 호주, 벨기 등 25개국이다(표 II-4 참조).

준회원국은 페루, 스위스,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파키스탄, 캐나다, 우크라이나, 불가리아 등 8개국이고(표 II-5 참조), 단체회원은 IGU(International Geographical Union), IUBS(International Union of Biological Sciences), IUGG(International Union of Geodesy and Geophysics), IUGS(International Union of Geological Sciences),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IUPS(International Union of Physiological Sciences), URSI(Union Radio Scientifique Internationale) 등 7개 국제기구이다(표 II-6 참조).

남극과학위원회(SCAR)의 가입은 남극연구를 하고 있는 모든 나라에 개방되어 있으며 현재 준회원국인 페루를 제외한 25개 남극조약협약의당사국이 가입되어 있고 세계과학연맹이사회(ICSU)의 회원국은 남극과학조사 활동의의를 서면으로 표명할 경우 2년마다 열리는 동 위원회의 정기회의에 옵서버로 참가할수 있다.

2) 운영체계

SCAR은 작업그룹과 전문가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작업그룹은 생물학 그룹, 측지학 및 지리학적 정보 그룹, 지질학 그룹, 빙하학 그룹, 인간생태 및 의학 그룹, 대기 물리 및 화학 그룹, 고체 지구물리학 그룹, 태양-지자기 및 천체물리 연구그룹 등 8개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문가그룹은 물개 연구그룹, 남극해 생태계 연구그룹, 남극지질구조 및 진화 연구그룹, 남극환경문제 및 보전에 관한 연구그룹, 지구변화와 남극 연구그룹, 남극 데이터 관리에 관한 SCAR-COMNAP 임시계획 연구그룹 등의 7개 그룹으로 이루어져 있다.⁴⁹⁾

48) D.W.H. Walton and W.N. Bonner, Antarctic -A Key Environments(Oxford: Pergamon Press, 1985), pp.17-20.

49) Document in XIXth Consultative Meeting, XIX ATCM/INF 31, May 8, 1995, pp.10-11.

<표 II-4> 남극과학위원회의 정회원국

(1995년 5월 현재)

국 명	준회원 가입일자	정회원 가입일자
아르헨티나		1958. 2. 3
호 주		1958. 2. 3
벨기에		1958. 2. 3
칠 레		1958. 2. 3
프랑스		1958. 2. 3
일 본		1958. 2. 3
뉴질랜드		1958. 2. 3
노르웨이		1958. 2. 3
남아공		1958. 2. 3
러시아		1958. 2. 3
영 국		1958. 2. 3
미 국		1958. 2. 3
독 일		1978. 5. 22
폴란드		1978. 5. 22
인 도		1984. 10. 1
브라질		1984. 10. 1
중 국		1986. 6. 23
스웨덴	1987. 3. 24	1988. 9. 12
이태리	1987. 5. 19	1988. 9. 12
우루과이	1987. 7. 29	1988. 9. 12
스페인	1987. 1. 15	1990. 7. 23
네덜란드	1987. 5. 20	1990. 7. 23
대한민국	1987. 12. 18	1990. 7. 23
핀란드	1988. 7. 1	1990. 7. 23
에콰아도르	1988. 9. 12	1992. 6. 15

자 료 : Document in XIXth Consultative Meeting, XIX ATCM/INF 31, May 8, 1995, p.8.

<표 II-5> 남극과학위원회의 준회원국

(1995년 5월 현재)

국 명	준회원 가입일자	비 고
페루	1987. 4. 14	
스위스	1987. 6. 16	
콜롬비아	1990. 7. 23	
에스토니아	1992. 6. 15	
파키스탄	1992. 6. 15	
캐나다	1994. 9. 5	
우크라이나	1994. 9. 5	
불가리아	1995. 3. 5	

자료 : Document in XIXth Consultative Meeting, XIX ATCM/INF 31, May 8, 1995, p.8.

<표 II-6> 남극과학위원회의 단체회원

(1995년 5월 현재)

IGU : International Geographical Union
IUBS : International Union of Biological Sciences
IUGG : International Union of Geodesy and Geophysics
IUGS : International Union of Geological Sciences
IUPAC :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
IUPS : International Union of Physiological Sciences
URSI : Union Radio Scientifique Internationale

자료 : Document in XIXth Consultative Meeting, XIX ATCM/INF 31, May 8, 1995, p.8.

5. 남극 동식물군의 보존을 위한 합의규칙

1) 성립배경

1964년 브르셀에서 개최된 제3차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에서는 ‘남극의 동물군과 식물군의 보존을 위한 합의규칙’(Agreed Measures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Fauna and Flora)을 채택하였다. 동 규칙은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가 남극의 환경보호에 관하여 취한 최초의 것으로, 특별보호지역 및 특별과학관심지역을 지정하여 독특한 환경보존제도를 유지하는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⁵⁰⁾ 이 합의규칙은 명령적 문언을 충분히 갖춘 조약형태로 작성되어 있다. 남극조약체제에 따른 하나의 작용으로서의 권고내용을 구성하고 있는 이 합의규칙을 남극조약체제와는 별개로 남극조약체제체제의 한 구성요소로 취급하고 있는 까닭이 여기에 있으며, 빙봉을 포함한 남위 60° 이남의 지역을 대상으로 남극의 동·식물, 이들의 환경의 적응 및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들 생물이 멸종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보호가 주목적이며, 그 대상으로는 고래를 제외한 포유동물과 새와 식물을 포함한다.⁵¹⁾

2) 주요내용

동 합의규칙에 의하면, 남극고유의 포유동물이나 조류를 살상·포획·방해하는 행위나 그러한 행위의 시도를 금지한다. 본 합의규칙 부속서 A에 열거된 고유의 포유동물과 조류는 ‘특별보호생물’로서 지정되어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또한 일정한 지역의 독특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생태학적 관심을 갖는 그러한 구역에 특별한 지위가 부여되고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합의규칙은 ATCP가 남극환경보호에 대하여 취한 최초의 중요한 공헌이 되는 것으로서,⁵²⁾ 그 중요한 내용을 일별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다.

i) 합의규칙 전문은 남극조약체제지역을 ‘특별보존구역’(Special Conservation

50) Peter Beck,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Antarctica(London : Croom Helm Ltd., 1986), pp.218-220.

51) Gillian D. Triggs, The antarctic Treaty regime -law, environment and resources-(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pp.152-153.

52) B.Witchell, "Resources in Antarctica", Marine Policy, April 1977, p.95.

Area: SCA)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합의규칙은 남극육지지역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제1조 2항).

- ii) 합의규칙은 허가가 부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극고유의 포유동물이나 조류를 살상, 포획, 방해하는 행위나 그러한 행위의 시도를 금지한다(제6조 1, 2항).
- iii) 합의규칙 부속서 A에 열거된 고유의 포유동물과 조류는 ‘특별보호생물’(Specially Protected Species : SPS)로 지정되어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제6조 5항). 각 참가국정부는 그러한 생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해안과 빙봉에 인접한 해안의 오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모든 다양한 조치를 취할것이 요구된다(제7조 102항).
- iv) 일정 구역의 독특한 자연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생태학적 관심을 갖는 구역은 ‘특별보호구역’(Specially Protected Area : SPA)으로 지정되어 각국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제8조).
- v) 남극지역의 일정 장소는 동식물보존과는 다른 이유로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특별과학관심지역’(Sites of Special Scientific Interest: SSSI)의 지정이 1975년에 도입되었다.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장기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구역은 연구기획에만 이용되도록 지정되었다.

진보적인 환경보존제도로서 높이 평가되고 있는 합의규칙은 제정부가 고유의 동물이나 조류의 포획과 같은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재판권 분쟁문제는 미해결상태로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남극조약체제 제8조 재판권에 관한 불완전한 규정이 합의규칙에도 적용될 것 같다.

6. 남극광물자원활동규제협약⁵³⁾

1930년대 이전까지는 남극의 경제적 가치는 포경이나 물개사냥 이외에는 거의 인식되지 않았으나, 남극에서의 인간활동이 증대되면서 남극의 자원에 관한 관심은 고조되고 있으며, 국가들간의 미묘한 이해대립과 국제적인 환경보호추세가 어울어져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발전되고 있다.

53) Convention on the Regulation of Antarctic Mineral Resources Activities: CRAMRA.

< 표 3 > 남극 광물자원개발규제협약의 주요 내용

조 항	주 요 내 용
제1장(일반규정) 제1조 - 9조	용어의 정의 협약의 적용범위 : 남극조약과 같이 남위 60° 이남 남극조약과 같이 각 체약국의 법률적 입장보호 (이 협약의 어떤 조문과 행위도 영유권주장 또는 부정의 근거가 되지 못함) 광물자원활동과 관련된 기지, 장비, 설치물의 사찰허용
제2장(제도,기구) 제18조 - 33조	남극 광물자원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과학·기술·환경 자문 위원회 설치 남극 광물자원 규제 위원회 설치 및 기능 사무국 설치
제3장(시추,채굴) 제37조 - 54조	개발탐사의 절차 명시
제4장(탐사) 제39조 - 52조	탐사신청 및 허가절차 설명
제5장(개발) 제53조 - 54조	개발허가신청 및 절차 설명
제6장(분쟁해결) 제55 - 59조	분쟁해결방법선택 및 절차
제7장(종결조항) 제60 - 67조	협약발효규정(협약에 명시된 기구설립에 필요한 11개 선진국과 5개 개도국 포함한 16개 협의당사국 비준을 얻은 뒤 30일 이후 발효) 및 개정, 탈퇴 절차 등

자 료 : 외무부, 남극광물자원협약안, 1988.

1961년 발효된 남극조약은 남극의 비군사화, 핵실험 금지, 과학탐사의 자유등 평화적 이용에 관한 여러 가지 원칙들을 명시하고 있으나, 자원활동 규제에 관한 어떤 장치나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1959년의 남극조약 이후 남극의 조약체제는 광물자원의 개발과 같은 문제가 야기할 복잡한 각국의 이해관계의 대립 때문에, 남극의 운영에 대하여 1차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남극조약협의당사국들은 특별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으며⁵⁴⁾, 또한 남극의 광물자원개발문제는 남극을 국가관할권밖에 있는 심해저와 같은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선언하기를 요구하는 나라들이 대다수에 해당한다.⁵⁵⁾

54) C.C. Joyner, "Antarctica and the law of the Sea : An Introductory Overview",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13, 1983, p.278.

55) Lee Kimball, "Antarctic Issues Today", presented 25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ast Asia and the Law of the Sea, I.I.E.D., July 1984, p.3.

일찌기 1970년 동경에서 열린 제 6차 남극조약회의에서 이미 몇몇 국가들은 자국 기업들이 제기하는 남극광물자원 개발에 관해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그 후 제 7차 회의에서는, 일부 국가의 극지개발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음을 감안하여 광물자원개발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논의하였다.⁵⁶⁾ 1972년 제7차 협의당사국회의에서는 남극지역에서의 광물자원의 부존가능성을 인정하는 권고 VII-6의 채택을 채택하였고, 1975년 제8차 협의당사국회의에서는 광물자원개발활동이 초래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남극과학위원회를 초청하였고, 동시에 각 국가들에게 광물자원의 개발과 관련한 협약이 성립될 때까지 남극의 광물자원활동을 삼가도록 촉구하였다(권고안 VIII-14). 1977년 제9차 협의당사국회의에서는 광물자원과 관련된 활동은 독특한 남극환경과 이에 의존하는 생태계의 보호를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권고를 채택(IX-1), 1979년 제10차 협의당사국회의에서는 광물자원개발활동이 환경적인 이유로 수락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권고를 채택하기도 하였다(X-1).⁵⁷⁾

또한, 남극조약협의당사국들은 그 동안 장차 수립될 광물자원체제의 원칙에 대하여 논의를 하여 왔으며, 특히, 1981년 제11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는 광물자원체제가 고려해야 할 여러 원칙을 채택하였는데(XI-1), 협의당사국들은 남극광물자원의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남극조약의 그대로 존치하여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도 남극의 독특한 환경 및 그에 의존하는 생태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 광물자원활동은 인류의 공동이익에 반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것 및 어떠한 경우에도 광물자원체제는 영유권주장과 관련된 남극조약 제4조를 훼손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 것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 1975년 제 8차 회의부터 광물자원개발 관련 권고문이 채택되기 시작했으며, 우선 이 회의에서 남극조약에 명시된 원칙과 목적에 따라 광물자원 문제에 접근할 것에 합의하고 적절한 관련 협정이 체결될 때까지 남극지역에서의 상업적 탐사, 개발활동을 유예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런던에서 개최된 9차 회의에서는 광물자원활동을 규제할 적절한 장치를 만드는데 따른 4가지 기본원칙을 설정하였다.⁵⁸⁾

56) F.M. Auburn, "Legal Implications of Petroleum Resources of the Antarctic Continental Shelf", *Ocean Yearbook*, Vol. I, 1978.

57) F.M. Auburn, "Consultative Status under the Antarctic Treaty",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28, 1979.

58)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회의 권고문 IX-1: Antarctic Mineral Resources의 4항.

첫째, 남극조약 협의당사국들은 남극광물자원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능동적이고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남극조약은 그 자체가 전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셋째, 남극의 특수한 환경과 그에 따른 생태계의 보호가 기본적으로 고려 되어야 한다. 넷째, 협의당사국들을 남극 광물자원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남극에 대한 인류 전체의 이해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들은 1981년 제11차 회의에서도 다시 채택되었으며, 또한 남극광물자원 문제해결의 시급성이 천명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안 작성의 본격적인 협상이 1982년 6월 부터 제 4차 남극조약 특별회의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특별회의는 1년에 2번씩 모두 11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회의 의장인 Christopher Beeby(뉴질랜드 외무성 관리)의 초안을 근거로 최종문안이 채택될 때까지 모두 4개의 수정안이 검토되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1988년 6월 2일 뉴질랜드 웰링턴에서 33개국에 의해 ‘남극 광물자원활동 규제협약’(CRAMRA) 이 채택되었다.

총 67개 조문과 1개 부속서로 구성된 동 협약은 1988년 11월 25일 부터 1년간 서명을 위해 개방되었으며,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16개 남극조약 협의당사국의 비준을 받으면 효력을 발생하도록 규정하였다.⁵⁹⁾ 그러나 남극광물자원의 개발에 관해서는 조약국들간 즉 영유권 주장국, 비주장국, 개발도상국, 선진국들 서로의 이해가 상충되고 있었으며, 80년대말 지구환경문제의 대두와 국제민간환경기구의 반발에 힘입어 몇몇 협의당사국들은 CRAMRA의 서명과 비준을 거부하였다. 더 나아가 호주와 프랑스 등은 동협약을 폐기하고 광물탐사를 포함한 남극에서의 모든 인간활동을 규제할 포괄적인 체제의 수립을 요구하고 나서게 됨에 따라 남극자원 문제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협의당사국들의 서명 거부에 따라 CRAMRA는 자동 폐기되었으며, 1990년 칠레에서 제 11차 남극조약 특별회의가 개최 되었다. 이 때 남극광물자원개발에 대한 현실적 접근을 주장하는 미국, 소련, 영국, 일본과 개발금지를 지지하는 호주, 프랑스, 이태리 등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노르웨이 대표인 Rolf Anderson은 양측의 주장을 토대로 타협안(일명 Anderson Draft), 즉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Protocol to the Antarctic Treaty on Environmental

59) CRAMRA Article 62. Entry Into Force, *Handbook of the Antarctic Treaty System*(US Department of State, Washington DC, 1994), Eighth edition, p.277.

Protection)의 초안을 작성하였으며 이는 새로운 체제수립을 위한 차기 협상의 초안으로 채택되었다⁶⁰⁾.

그 후 1991년 4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친 특별회의가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남극환경보호의정서가 채택되어, 그 제7조에서는 향후 50년간 광물자원활동을 금지하고, 동 의정서 제25조 5항에는 남극광물자원활동금지 조항의 개정 절차를 특별히 명시하고 있다. 즉 5항 가호에는 남극광물자원 활동이 허락되기 위해서는, 우선 광물활동에 관한 구속력있는 법적 체제가 갖추어져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50년후 법적 체제로 남극 광물자원활동 규제협약(CRAMRA)이 부활되든지, 혹은 적어도 이를 모체로 한 새로운 체제가 만들어질 가능성을 질게 시사하고 있다.

7.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권고

1) 성립경과

남극의 법적 지위와 남극에서의 인간의 활동을 규제하고 있는 법적 체제는 남극조약체제를 모범으로 하고 있는 남극조약체제이다. 남극조약체제 운영의 관건이 되는 것은 현재 42개국으로 구성된 ‘남극조약협의회의’(Antarctic Treaty Consultative Meeting: ATCM)로서, 이들 배타적 그룹의 회원들만이 남극정책의 결정에 참여하는 특권을 가진다.

이와 같은 남극조약협의당사국들의 모임인 동 당사국회의에서 남극조약체제상 가장 중요한 입법행위에 해당하는 권고안을 만드는 바, 이들 권고안의 내용은 주로, 보호구역의 지정, 역사적 장소나 기념물의 지정, 통신이나 보급 등에 있어서의 국제협력, 과학조사에 있어서의 협력 등이고, 특히 남극의 환경보호에 관한 많은 권고들은 일정한 시기에 독립한 하나의 협약으로 성립되어 그 독자적인 법영역을 구축하기도 한다.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권고안은 1961년 호주 캔버라에서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가 처음으로 열려진 이래로 1996년 네덜란드의 유티리히트에서 제20차 회의가 열리기까지 모두 216개의 권고안이 채택되었다.⁶¹⁾

60) 김예동,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체제의 최근 동향”, 해양정책연구, 1990, pp.231-247.

61) 외무부, 제16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 참가보고(보고자료 91-28(법규)), 1991년 11

<표 II-7>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 개최지 및 일자

(1996년 5월 현재)

회 기	장 소	일 자	권고문채택
제 1차	호주, 캔버라	1961. 7.10 - 7.24	I 1 - 16
제 2차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1962. 7.18 - 7.28	II 1 - 10
제 3차	벨기에, 브뤼셀	1964. 6. 2 - 6.13	III 1 - 11
제 4차	칠레, 산티아고	1966.11. 3 - 11.18	IV 1 - 23
제 5차	프랑스, 파리	1968.11.18 - 11.29	V 1 - 9
제 6차	일본, 동경	1970.10.19 - 10.31	VI 1 - 15
제 7차	뉴질랜드, 웰링턴	1972.10.30 - 11.10	VII 1 - 9
제 8차	노르웨이, 오슬로	1975. 6. 1 - 6.20	VIII 1 - 14
제 9차	영국, 런던	1977. 9.19 - 10. 7	IX 1 - 6
제10차	미국, 워싱턴	1979. 9.17 - 10. 5	X 1 - 9
제11차	아르헨티나, 부레노스아이레스	1981. 6.23 - 7. 7	XI 1 - 3
제12차	호주, 캔버라	1983. 9.13 - 9.27	XII 1 - 8
제13차	벨기에, 브뤼셀	1985.10. 8 - 10.18	XIII 1 - 16
제14차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로	1987.10. 5 - 10.16	XIV 1 - 10
제15차	프랑스, 파리	1989.10. 9 - 10.20	XV 1 - 12
제16차	독일, 본	1991.10. 7 - 10.18	XVI 1 - 13
제17차	이태리, 베니스	1992.11. 9 - 11.20	XVII 1 - 4
제18차	일본, 교토	1994. 7.10 - 7.24	XVIII 1 - 2
제19차	대한민국, 서울	1995. 7.10 - 7.24	XIX 1 - 16
제20차	네덜란드, 유트레히트	1996. 4.29 - 5.10	XX 1 - 7

자 료 : Peter J, Beck, International Politics of Antarctica(London : Croom Helm, 1986), p.154, 외무부, 제14, 15, 16, 17, 18, 19 및 제20차 남극 조약당사국회의 참가보고서 참조.

월, p.130. SCAR Bulletin, in *Polar Record* 29(173), 1993, pp.353-364. SCAR Bulletin, in *Polar Record* 30(174), 1994, pp.230-239. 외무부, 제19차 남극조약 협의 당사국회의 결과보고서(1995년 5월), pp.32-33.

2) 주요내용

동 권고안의 내용을 살펴 보면 이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첫째는 남극조약당사국회의의 의제선정, 회의개최시기, 개최장소 및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권고사항이며, 둘째는 남극지역에서의 과학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보급, 통신, 우편, 기상, 항공기의 사용, 대피소의 지정, 긴급구조, 기지의 설치 등에 국제적 협력을 위한 권고사항이며, 셋째는 각 회기마다 특별히 발생하는 여러 사항, 즉 항공기사고, 기념우표의 발행, 남극조약기념식 등에 대한 권고이며, 넷째는 남극의 환경보호 및 자원의 보존을 위한 제반조치에 관한 권고사항으로 이것이 전체 권고안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권고안의 효력은 남극조약체제에서의 중요한 입법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바, 첫째 남극조약체제에서는 입법기관이 따로 없다는 점이며, 남극지역에서 적용되는 국제사회의 법규범은 기존의 남극관련조약들과 2년마다 열리기로 되어 있는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권고안이 그 전부인 것이다. 둘째로 기존의 남극관련조약은 이 권고안이 거듭되어 그 내용을 발전시켜 각 당사국들간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약이나 협약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이란 점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권고안 자체는 남극조약체제에서의 중요한 입법활동에 해당되는 것이다. 남극조약 제9조 1항(f)의 확장 발전에 의하여 UN(GA),⁶²⁾ 또는 “본조약의 원칙과 목적을 조장”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남극조약당사국들(ATCPs)은 본 조약의 원칙과 목적의 조장을 그들의 권리이자 의무로 인식하고 있다.⁶³⁾

제1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까지 성립된 권고안의 전체 내용은 <표 II-8>이하와 같다.

62) B.A. Boczek, op.cit, pp.367-368.

63) W.M. Bush, Antarctica and International Law(New York : Oceana Publications, 1982), Vol.I, p.92.

<표 II-8> 남극조약협약의 당사국회의 권고 현황(제1차 - 제3차 회의)

(1996년 6월 현재)

제1차 남극조약협약회의(캔버라, 1961년 7월 10-24일)	
I-1 과학조사계획의 정보교환	I-2 과학자의 교류
I-3 과학 데이터의 교환	I-4 SCAR
I-5 국제적 기구	
I-6 활동에 관한 정보교환	
I-7 보급문제에 관한 정보교환	
I-8 남극 동식물군의 보존	
I-9 역사적 유적	I-10 긴급구조
I-11 통신	I-12 우편
I-13 핵설비와 기술에 관한 정보교환	
I-14 협의회 행정기구	
I-15 제2차 협의회	I-16 협의회 준비
제2차 남극조약협약회의(부에노스 아이레스, 1962년 7월 18-28일)	
II-1 과학 데이터의 교환	II-2 남극 동식물군의 보존
II-3 통신	II-4 활동에 관한 정보교환
II-5 보급문제에 관한 심포지움	
II-6 통지된 활동의 변경	
II-7 과학적 물질의 선적	
II-8 국제태양관측년(1964-1965)	
II-9 협의회 권고안	
II-10 제3차 협의회	
제3차 남극조약협약회의(브뤼셀, 1964년 6월 2-13일)	
III-1 항공설비에 관한 정보교환	
III-2 대피소의 지정	III-3 보급
III-4 차기회의	III-5 통신
III-6 전문가회의에 관한 문제점	
III-7 권고안의 수락	
III-9 동식물군의 보존을 위한 임시적 가이드 라인	
III-10 남극 동식물군의 보존에 관한 SCAR의 관점	
III-11 남빙양 물개잡이와 동물군의 채취	

<표 II-9>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 권고 현황(제4차 - 제6차 회의)

(1996년 6월 현재)

제4차 남극조약협약회의(샌티아고, 1966년 11월 3-18일)	
IV-1 ~ IV-17 특별보호구역	
IV-18 남극 동식물군의 보존에 관한 합의규칙 제6조의 이행에 관한 상호협력	
IV-19 동규칙 제12조(1)(d)의 이행	
IV-20 동식물군보존에 관한 임시적 가이드라인	
IV-21 남빙양 물개잡이 자발적 규제에 대한 임시적 가이드라인	
IV-22 남빙양 물개잡이에 대한 SCAR의 관심	
IV-23 정보교환의 데이터	IV-24 전문가회의
IV-25 보급제회의	IV-26 통신
IV-27 남극여행의 영향	IV-28 차기회의
(5) 제5차 남극조약협약회의(파리, 1968년 11.18-29)	
V-1 기념우표문제	V-2 통신개선에 관한 규칙
V-3 남빙양	V-4 역사적 유물
V-5 특별보호구역	
V-6 남극 동식물군의 보존에 관한 합의규칙의 변경	
V-7 남빙양 물개잡이 자발적 규제에 관한 임시적 가이드라인의 개정에 관한 SCAR의 관련제안	
V-8 남빙양 물개잡이에 관한 협약초안의 조사	
V-9 제6차 협의회	
(6) 제6차 남극조약협약회의(동경, 1970년 10.19-31)	
VI-1 통신	VI-2 통신설비의 정보교환
VI-3 기상	VI-4 인간의 남극환경에 대한 영향
VI-5 남극에서의 방사성 동위원소의 사용	
VI-6 방사성 동위원소사용을 포함하는 과학조사활동의 상호협력	
VI-7 여행자와 민간탐사자의 활동에 의한 영향	
VI-8 특별보호구역의 출입허가	
VI-9 동식물군의 보존에 관한 데이터	
VI-10 특별보호구역	VI-11 뉴질랜드
VI-12 과학조사로켓	VI-13 해저지형조사에 관한 정보교환
VI-14 역사적 기념물	VI-15 제7차 협의회

<표 II-10> 남극조약협약의 당사국회의 권고 현황(제7차 - 제10차 회의)

(1996년 6월 현재)

제7차 남극조약협약회의(웰링턴, 1972년 10월 30일-11월 10일)	
VII-1 인간의 남극환경에 대한 영향	VII-3 특별과학관심구역
VII-2 특별보호구역의 재검토	VII-4 남극에서의 여행자와 민간탐사자의 활동에 의한 영향
VII-5 실험용 동식물의 반입	VII-6 남극자원 -광물개발의 영향
VII-7 통신	VII-8 수송에서의 협력
VII-9 역사적 기념물	
제8차 남극조약협약회의(오슬로, 1975년 6월 9-20일)	
VIII-1 특별보호구역	VIII-2 특별보호구역의 재검토
VIII-3 특별과학관심구역	VIII-4 특별과학관심구역 : 운영계획의 임시적 가이드라인
VIII-5 특별보호구역의 출입허가	VIII-6 연차적 정보교환
VIII-7 수송에서의 협력	VIII-8 비협약국들의 활동
VIII-9 여행자와 민간탐사자의 영향	VIII-10 해양생물자원
VIII-11 인간의 환경에 대한 영향탐사와 기지활동에 있어서의 행위규범	VIII-12 핵폐기물의 처분
VIII-13 남극환경	VIII-14 남극자원 -광물자원개발의 영향
제9차 남극조약협약회의(런던, 1977년 9월 19일-10월 7일)	
IX-1 남극광물자원	IX-2 남극해양생물자원
1. 과학조사	2. 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관한 임시적 가이드라인
3. 명확한 보존체제의 정립	IX-3 통신의 개선
IX-4 수송에서의 협력	IX-5 인간의 남극환경에 대한 영향
IX-6 남극해양환경의 기름오염	
제10차 남극조약협약회의(워싱턴, 1979년 9월 17일-10월 5일)	
X-1 남극광물자원	X-2 남극해양생물자원
X-3 통신문제의 개선과 기상관측자료의 수집과 배포	X-4 인간의 남극환경에 대한 영향 : 암석표본의 수집
X-5 인간의 남극환경에 대한 영향 : 특별과학관심구역	- 임시적 가이드라인
X-6 인간의 남극환경에 대한 영향 : 특별과학관심구역	X-7 남극해양환경의 기름오염
X-8 여행자와 민간탐사자의 영향	남극조약 관련규정과 수락된 원칙에 관한 선언
X-9 제20회 남극조약 기념식	

<표 II-12>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 권고 현황(제15차 - 제20차 회의)

(1996년 6월 현재)

<p>제15차 남극조약협약회의(파리, 1989년 10월 9-20일)</p> <p>XV-1 폐기물처리의 권고 초안 XV-2 해양오염의 방지, 제재 및 대응 XV-3 환경 모니터링의 언어 XV-4 동식물군 보존에 관한 합의규칙 및 특별보호구역운용 규칙 제8조의 변경에 관한 권고 초안 XV-5 권고 초안(특별과학관심지역의 3개지역 추가지정) XV-6 과학조사설비: 특별보호구역인 제11번 구역의 특별과학관심구역 제32번으로의 지정 XV-7 남극보호지역체제: 특별보호지역의 설정 XV-8 다용도 목적계획지역의 설립권고 초안 XV-9 기지의 집중에 관한 권고 초안 XV-10 권고 초안(남극빙에 관한 연구) XV-11 온존층과 기후변화에 관한 선언문 초안 XV-12 권고문(남극연구프로그램의 수립, 국제과학프로그램에 공헌)</p>
<p>제16차 남극조약협약회의(본, 1991년 10월 7-18일)</p> <p>XVI- 1 정보의 교환 XVI- 2 - XVI-9 남극보호지역체제 XVI-10 남극보호지역체제: 동체제의 재검토 XVI-11 남극보호지역체제: 새 역사적 유물과 기념물 XVI-12 지구물리 데이터의 접근 XVI-13 남극지역에서의 여행과 민간활동(92년 11월 9일 베니스 비공식회의 개최 권고)</p>
<p>제17차 남극조약협약회의(이태리 베니스, 1992년 11월 11-20일)</p> <p>XVII- 1 환경감시 및 관리 XVII- 2 특별보호지역 관리계획의 개정 XVII- 3 역사적 장소 및 유물 지정 XVII- 4 남극에서의 지구변화연구 및 국제협력</p>
<p>제18차 남극조약협약회의(일본 교토, 1994년 4월 11-22일)</p> <p>XVIII-1 여행 및 비정부활동</p>
<p>제19차 남극조약협약회의(대한민국 서울, 1995년 5월 8-19일)</p> <p>결정 1, 2(95): 협의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되는 문서를 조치, 결정, 결의로 구분 및 결정1에 필요한 의사 규칙의 개정 조치(5개): 특별보호관리구역관리계획, 특별과학관심구역 지정 결의(9개): 자료교환, 핵폐기물, 관광과 비정부활동, 연료의 저장과 취급, 남극사찰점검표 작성 등에 관한 결의</p>
<p>제20차 남극조약협약회의(네덜란드 유포르트, 1996년 4월 29-5월 10일)</p> <p>3.A: 특별과학관심구역 관리계획의 개정 3.B: 보호지역의 지정(역사적 장소 및 기념물) 3.C: 청소년의 교육 및 문학가, 예술가 및 음악가의 기여를 강조 3.D: 사찰관에게 제시할 환경목록의 비치 3.E: 특별과학관심구역 지정기간의 연장 3.F: 역사적 장소 및 기념물의 효과적 관리와 보존 3.G: 남극보호구역 번호의 재지정</p>

자 료 : 정갑용, 남극환경보전에 관한 국제법적 연구(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년 9월. *Polar Record* 29, 1993; *Polar Record* 30, 1994; 외무부, 제19차 및 제20차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 결과보고서, 참조.

3) 권고에 대한 각국의 승인 현황

제19차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에서 영국은 기존의 협의당사국회의에서 채택된 권고문들은 그 성격상 강제적이거나 권고적인 사안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다시 정리할 것을 제의하였다.

<표 II-13>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 권고에 대한 승인현황 (제1차 - 제6차)

(1995년 5월 현재)

당사국	제1차(16)	제2차(10)	제3차(1)	제4차(28)	제5차(9)	제6차(15)
아르헨티나	All	All	All	All	All	All
호주	All	All	All	All	All	All
벨기에	All	All	All	All	All	All
브라질(83)	All	All	All	All	All	All(10)
칠레	All	All	All	All	All	All
중국(85)	All	All	All	All	All	All(10)
에콰아도르						
핀란드						
프랑스	All	All	All	All	All	All
독일	All	All	All(8)	All(1-11, 13-19)	All(5,6)	All(9,10)
인도	All	All	All(8)	All(18)	All	All(9,19)
이태리	All	All	All	All	All	All
일본	All	All	All	All	All	All
대한민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All	All	All	All	All	All
노르웨이	All	All	All	All	All	All
페루(89)						
폴란드(77)	All	All	All	All	All	All
러시아	All	All	All	All	All	All
남아공	All	All	All	All	All	All
스페인	All	All	All	All	All	All
스웨덴						
영국	All	All	All	All	All	All
우루과이	All	All	All	All	All	All
미국	All	All	All	All	All	All

<표 II-14>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 권고에 대한 승인현황 (제7차 - 제12차)
(1995년 5월 현재)

당사국	제7차(9)	제8차(14)	제9차(6)	10차(9)	11차(3)	12차(8)
아르헨티나	All	All	All	All	All	All
호주	All	All	All	All	All	All
벨기에	All	All	All	All	All	All
브라질(83)	All(5)	All	All	All	All	All
칠레	All	All	All	All	All	All
중국(85)	All(5)					
에콰아도르						
핀란드						
프랑스	All	All	All	All	All	All
독일	All(5)	All(1,2,5)	All	All	All	All
인도	All	All	All	All(1,9)		
이태리	All(5)	All	All	All(1,9)		
일본	All	All	All	All	All	All
대한민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All	All	All	All	All	All
노르웨이	All	All	All	All	All	All
페루(89)						
폴란드(77)	All	All	All	All	All	All
러시아	All	All	All	All	All	All
남아공	All	All	All	All	All	All
스페인(88)	All	All	All	All(1,9)	All(1)	All
스웨덴						
영국	All	All	All	All	All	All
우루과이	All	All	All	All	All	All
미국	All	All	All	All	All	All

<표 II-15> 남극조약협약의 당사국회의 권고에 대한 승인현황(제13차 - 제18차)

(1995년 5월 현재)

당사국	제13차(16)	제14차(10)	제15차(1)	제16차(28)	제17차(9)	제18차(15)
아르헨티나	All	All	All			
호주	All	All	All			
벨기에	All	All				
브라질(83)	All	All				
칠레	All	All	All			
중국(85)	All	All				
에콰아도르						
핀란드						
프랑스	All	All				
독일	All (10-13)	All	All(3,4,8,1 0,11,22)	All(4,6,7, 8,9,10)	All(2,3)	
인도						
이태리						
일본	All	All				
대한민국						
네덜란드						
뉴질랜드	All	All	All	All	All	
노르웨이	All	All	All	All	All	
페루(89)						
폴란드(77)	All	All	All			
러시아	All	All				
남아공	All	All				
스페인						
스웨덴						
영국	All					
우루과이	All	All				
미국	All	All				

자 료 : Document in XIXth Consultative Meeting, XIX ATCM/WP 1, May 8, 1995, pp.149-154.

남극조약 제9조 제4항에 따른 모든 협의당사국의 국내 승인절차를 마쳐야 유효함으로써 많은 권고문들이 아직까지 발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따라서 이를 법률적으로 기속하는 사안과 단순히 권고적인 사안으로 구분하여 권고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이를 신속하게 발효할 수 있도록 제안하여, 법적 구속력있는 조치, 내부조직문제에 관한 결정, 권고적인 성격을 가지는 결의로 분류하였다.⁶⁴⁾

64) 외무부, 제1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결과보고서(1995년 5월), pp.25-26.

제 3 장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 정서 체제

제 1 절 성립배경 및 구성

1982년 9월, 말레이시아가 유엔총회에서 남극문제를 거론한 후 남극문제는 1983년 3월 비동맹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채택되어 남극대륙에 있어서의 국제적 협력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다. 1983년 유엔총회의 의제로 채택되어 이 문제에 관한 토의 끝에 사무총장으로 하여금 남극대륙의 모든 분야에 걸친 포괄적이고 실질적이며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요청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15차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1989년 10월 파리)에서 남극환경보호를 위한 포괄적 조치 및 재정문제(의제 제7항)가 논의되었으며 제11차 남극조약협약당사국 특별회의에서 이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합의하였고 1991년 10월 4일에 스페인의 마드리드에서 31개국이 서명하여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가 채택되었다.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는 남극조약의 보충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조약의 효력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며, 남극조약체제의 다른 법률문서로부터 발생하는 의정서 당사국의 권리, 의무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으로⁶⁵⁾, 그 주요내용이 환경원칙제정, 당사국간 협력의무 규정, 광물자원활동금지(50년간), 사전환경영향평가제도 채택, 환경보호위원회 설치, 의정서준수 및 사찰수락의무규정,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조치 수립의무, 연차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의정서의 개정은 의정서 발효후 50년 경과시, 어떠한 남극조약협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재검토회의가 개최되며, 동 회의에서의 개정은 의정서 채택당시 남극조약협약당사국의 3/4을 포함한 다수결로 채택된다.⁶⁶⁾

이 의정서에 대한 유보는 허용되지 않으며, 채택 당시의 모든 남극조약협약당사국이 동 의정서를 비준, 수락, 승인하거나 가입한 날로부터 30일 경과시에 발효하기로 되어 있으며,⁶⁷⁾ 1996년 6월 현재 22개국이 비준하고 있다.

동 의정서의 구성은 전문, 27개조 및 중재재판소 설치에 관한 문서와 5개 부속서로 이루어져 있다.⁶⁸⁾

65) 동 의정서 제4조.

66) 동 의정서 제25조.

67) 동 의정서 제23조.

68) Text in *International Legal Materials*, Vol.30, No.6, Nov., 1991, pp.1461-1486.

< 표 III -1> 의정서의 본문(전문 및 27개조)

- 제1조(정의)
- 제2조(목적 및 지정)
- 제3조(환경원칙)
- 제4조(남극조약체제의 다른 구성요소와의 관계)
- 제5조(남극조약체제의 다른 구성요소와의 조화)
- 제6조(협력)
- 제7조(광물자원활동의 금지)
- 제8조(환경영향평가)
- 제9조(부속서)
- 제10조(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 제11조(환경보호위원회)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 제13조(이 의정서의 준수)
- 제14조(사찰)
- 제15조(비상대응조치)
- 제16조(배상책임)
- 제17조(당사국의 연례보고)
- 제18조(분쟁해결)
- 제19조(분쟁해결절차의 선택)
- 제20조(분쟁해결절차)
- 제21조(서명)
- 제22조(비준, 수락, 승인 또는 가입)
- 제23조(발효)
- 제24조(유보)
- 제25조(개정 또는 변경)
- 제26조(수탁자에 의한 통고)
- 제27조(정본 및 유엔에의 등록)

< 표 III -2> 중재재판에 관한 부록(13개조)

- 제1조(정의)
- 제2조(목적 및 지정)
- 제3조(환경원칙)
- 제4조(남극조약체제의 다른 구성요소와의 관계)
- 제5조(남극조약체제의 다른 구성요소와의 조화)
- 제6조(협력)
- 제7조(광물자원활동의 금지)
- 제8조(환경영향평가)
- 제9조(부속서)
- 제10조(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 제11조(환경보호위원회)
- 제12조(위원회의 기능)
- 제13조(이 의정서의 준수)

< 표 III -3> 부속서 I (환경영향평가, 8개조)

- 제1조(예비단계)
- 제2조(초기 환경평가)
- 제3조(종합적 환경평가)
- 제4조(종합적 환경평가에 기초한 결정)
- 제5조(감시)
- 제6조(정보의 배포)
- 제7조(긴급사태)
- 제8조(개정 또는 변경)

< 표 III -4> 부속서 II (남극동식물군 보존, 9개조)

- 제1조(정의)
- 제2조(긴급사태)
- 제3조(토착 동식물군 보호)
- 제4조(비토착종, 기생충 및 질병의 반입)
- 제5조(정보)
- 제6조(정보의 교환)
- 제7조(남극조약체제 이외 기타 협약과의 관계)
- 제8조(재검토)
- 제9조(개정 또는 변경)

< 표 III -5> 부속서 II의 부록

- 부속서의 부록 A(특별보호종)
 - B(동물과 식물의 수입)
 - C(미생물 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

< 표 III -6> 부속서 III(폐기물처리 및 관리, 13개조)

제1조(일반적 의무)
제2조(남극조약지역으로부터의 제거에 의한 폐기물처리)
제3조(소각에 의한 폐기물처리)
제4조(육상에서의 기타 폐기물처리)
제5조(해양에서의 폐기물처리)
제6조(폐기물보관)
제7조(금지품)
제8조(폐기물 관리계획)
제9조(폐기물 관리계획의 배포 및 재검토)
제10조(관리활동)
제11조(재검토)
제12조(긴급사태)
제13조(개정 또는 변경)

< 표 III -7> 부속서 IV(해양오염방지, 15개조)

제1조(정의)
제2조(적용)
제3조(기름의 배출)
제4조(유해액체물질의 배출)
제5조(쓰레기의 처리)
제6조(오물의 배출)
제7조(긴급사태)
제8조(의존 및 관련 생태계에 대한 효과)
제9조(선박의 저장능력 및 수용시설)
제10조(선박의 설계, 건조, 선원배치 및 장비)
제11조(주권면제)
제12조(예방조치, 긴급대비 및 대응)
제13조(재검토)
제14조(MARPOL 73/78과의 관계)
제15조(개정 또는 변경)

< 표 III -8> 부속서 V(보호지역 및 관리, 12개조)

제1조(정의)
제2조(적용)
제3조(남극특별보호지역)
제4조(남극특별관리지역)
제5조(관리계획)
제6조(지정절차)
제7조(허가)
제8조(역사적 장소 및 기념물)
제9조(정보 및 배포)
제10조(정보의 교환)
제11조(긴급사태)
제12조(개정 및 변경)

제 2 절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체제의 내용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는 남극조약의 보충적 성격을 가진 것으로서 조약의 효력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며, 남극조약체제의 다른 법률문서로부터 발생하는 의정서 당사국의 권리, 의무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으로⁶⁹⁾, 그 주요내용이 환경원칙제정, 당사국간 협력의무 규정, 광물자원활동금지(50년간), 사전환경영향평가제도 채택, 환경보호위원회 설치, 의정서준수 및 사찰수락의무규정, 긴급사태에 대한 대응조치 수립의무, 연차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국가의 일반의무

1) 환경원칙제정 및 이행

각 당사국은 남극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방지, 예정된 활동에 대한 사전 환경영향평가 실시, 긴급사태 발생시 대응, 기수행중인 활동에 대한 감시, 과학조사활동의 우선적 수행보장 등의 의무가 있다.⁷⁰⁾ 남극조약지역내에서 행해지는 활동을 계획하고 실행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열거하여, 예컨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방지, 계획된 행위의 사전환경영향평가, 긴급사태발생시 대책, 수행중 행위에 대한 감시체제, 지구환경연구에 필수적인 연구를 비롯한 과학적 조사활동의 우선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남극조약 제7조 5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통고가 요구되는 과학적 조사계획, 관광, 기타 모든 정부 및 비정부의 행위는 동조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한편, 의정서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그 권한내에서 법률, 규칙, 행정행위, 이행조치들을 채택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당사국은 의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유엔헌장과 일치하는 적절한 노력을 행할 것, 당사국은 위의 조치들을 다른 모든 당사국에게 통보할 것, 당사국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이 의정서의 목적 및 원칙의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행위에 다른 모든 당사국이 관심을 갖도록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⁷¹⁾

69) 동 의정서 제4조.

70) 동 의정서 제3조.

2) 국제협력

당사국은 남극환경보호에 관한 과학적·기술적·교육적 협력프로그램 추진, 타당사국의 환경영향평가활동원조, 타당사국의 유용한 정보의 제공, 기지 및 기타시설의 위치선택시 타당사국과의 합의, 남극조약협회의에서 합의된 조치의 수행, 자국의 활동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남극지역 외측인접국과의 협력 등이 요구된다.⁷²⁾

따라서,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사항에 노력하여야 한다.

- i) 남극환경과 그 부속물 및 관련 생태계의 보호와 관련된 과학적, 기술적, 교육적 가치에 관한 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하며,
- ii) 타당사국의 환경영향평가 준비활동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제공하며,
- iii) 타당사국에게 모든 잠재적 환경위험에 관련된 것으로서 요구된 정보와 남극환경과 그 부속 및 관련 생태계에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고의 효과를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노력을 제공하고,
- iv) 장래 예정되는 기지 및 기타시설의 위치선택을 함에 있어 집중되는 행위에 의한 축적된 효과를 피하기 위하여 타당사국과 협의하고,
- v) 기지 및 기타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공동탐사 및 재정의를 하고,
- vi) 남극조약협회의에서 합의될 수 있는 조치의 수행으로 당사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들의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함에 있어 타 당사국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남극지역내에서의 자국의 활동이 남극지역 밖의 인접국에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3) 광물자원활동의 금지

과학조사를 제외한 광물자원에 관한 모든 활동이 금지되며, 동 금지는 의정서 발효후 50년 경과시 개최되는 재검토회의에서 개정될 때까지 유효하다. 50년후 개최되는 재검토회의에서의 개정여부는 의정서 채택당시 남극조약 협의당사국의 3/4을 포함한 다수결로 결정되며, 위의 절차에 따라 개정된 의정서는 의정서 채택당시의 모든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을 포함한 전체 남극조약 협의당사국 3/4이 비준함으로써 발효된

71) 동 의정서 제13조.

72) 동 의정서 제6조.

다. 만약 동 개정안이 3년이내에 발효되지 않는 경우 의정서 가입국은 탈퇴를 할 수 있으며, 동 탈퇴는 통보후 2년 경과시 유효하다.⁷³⁾

의정서 제7조의 남극광물자원활동의 금지는, 어떤 활동이 수락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내용으로 하는 구속력있는 법제도가 발효되지 않는 한 지속된다. 위의 구속력있는 법제도는 남극조약 제4조에 언급된 바와 같은 모든 국가의 이익을 완전히 보장하여야 하며 그 원칙을 적용하여야 한다.⁷⁴⁾

4) 환경영향평가

각 당사국은 남극조약 제7조 5항에 따라 사전통고가 요구되는 사항 (남극대륙탐험, 남극에 설치된 기지, 과학조사 및 기타 평화적 목적을 위해 남극에 배치된 군요원 또는 장비)과 관련되는 과학조사프로그램, 관광, 기타 모든 정부차원 및 비정부차원의 활동과 그에 관련된 보급활동을 계획함에 있어 부속서 I의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거쳐야 하고, 또한 기존활동 규모의 증감, 활동의 추가, 시설의 폐기 등 모든 활동의 변화에 대해서도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적용하며, 2국 이상이 공동계획하는 경우에는 1국을 선정하여 환경영향평가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조정하도록 한다.⁷⁵⁾

환경영향평가결과는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영향 이하인 경우,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영향인 경우,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영향 이상인 경우로 나뉘어진다⁷⁶⁾. 환경영향평가절차는 예비단계, 초기단계, 종합적 평가단계로 구분되며, 예비단계는 국내적 절차에 의해 수행되고, 그 이후의 절차는 예비단계의 평가결과가 경미하거나 일시적인 것이거나 또는 그 이상의 것으로 평가된 경우 진행된다.

또한, 각 당사국은 동 위원회의 당사국이 되며, 대표를 지명하여야 하며, 각 당사국은 의정서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법률, 규칙, 행정조치, 집행조치 등을 채택하고 이를 모든 당사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동 위원회의 회원이 되며, 전문가와 자문위원을 동반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대표를 지명해야 하며, 남극조약의 체약국으로서 이 의정서 비당사국은 옵서버의 지위를 가진다.⁷⁷⁾

73) 동 의정서 제7조.

74) 동 의정서 제25조.

75) 동 의정서 제8조.

76) 동 의정서 제8조.

77) 동 의정서 제11조.

5) 기타

각 당사국은 남극조약협약당사국 및 남극조약협약회의에서 지명한 감시인이 수행하는 사찰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 의정서에 따라 작성, 유지되어야 하는 모든 기록뿐만 아니라 남극조약 제7조 3항에 따라 검사에 개방되는 기지, 시설, 장비, 선박, 항공기의 모든 부분에 대한 사찰에 응해야 한다.⁷⁸⁾

또한, 각 당사국은 남극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급사태 발생에 대비한 비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타당사국과 긴급사태발생시 즉시 통보절차 및 협력 대응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⁷⁹⁾ 즉, 각 당사국은 제활동중에 발생하는 환경에 대한 긴급사태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처를 하여야 하며, 잠재적인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당사국은 위의 긴급계획수립 및 시행을 위해 협력해야 하며, 환경에 대한 긴급사태시 즉시 통보절차 및 협력대응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각 당사국은 의정서의 규정상 요구되는 통보, 정보 및 비상계획을 내용으로 하는 연차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 각 당사국은 매년 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보고서에는 제13조 3항에 따라 행해진 통보, 제15조에 따라 수립되는 긴급계획 및 의정서상에 명문의 규정으로 회람과 교환이 요구되는 정보를 제외한 기타 모든 통보 및 정보를 수록하여야 한다. 보고서는 모든 당사국과 환경보호위원회 및 차기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에 배포하여야 한다.⁸⁰⁾

남극에서의 활동으로 인한 환경훼손시 배상책임에 관한 부속서의 제정을 규정하고 있다.⁸¹⁾

각 당사국은 의정서의 해석, 적용에 관한 분쟁발생시 그 해결방법 선택을 위해 협의하여야 하며, 각 당사국은 의정서의 서명, 비준, 수락, 승인, 가입시 어느 때라도 국제사법재판소와 중재재판소 중 하나 이상의 분쟁해결절차를 서면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분쟁해결절차에 관하여 분쟁당사자간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중재재판소에 동 분쟁의 해결이 부탁된다.⁸²⁾

78) 동 의정서 제14조.

79) 동 의정서 제15조.

80) 동 의정서 제17조.

81) 동 의정서 제16조.

2. 중재재판제도

1) 중재관의 지명권한

각 당사국은 3인 이상의 중재관을 지명할 권한을 가진다. 이들 중 적어도 1인은 이 의정서가 동 당사국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후 3개월 이내에 지명되어야 한다. 각 중재관은 남극문제에 경험이 있고 정통한 국제법 지식과 공정성, 능력 및 성실성에 대한 최고의 명성을 지녀야 한다. 지명된 자의 성명은 중재관 명부를 구성하며, 각 당사국은 동 명부에 항상 최소한 중재관 1인의 성명을 유지한다. 중재관을 지명한 당사국은 동 중재관의 성명을 명부에서 철회할 수 있으며, 이를 즉시 총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⁸³⁾

분쟁당사국이 소송을 개시할 때에는 중재관 명부에서 자국민인 1인의 중재관을 임명하며 이를 서면으로 타방 분쟁당사국 또는 분쟁당사국들과 총장에게 통보한다.

동 통보후 40일 이내로부터 타국 분쟁당사국은 중재관 명부로부터 자국민인 제2의 중재관을 임명할 수 있다. 제2의 중재관 임명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당사국들은 합의에 의하여 중재관 명부에서 제3의 중재관을 임명한다.

제2의 중재관이 규정된 기간내에 임명되지 않거나 규정된 기간내에 제3의 중재관 임명에 합의하지 않는 경우,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장에 의하여 지명된다.

2) 재판소의 잠정조치

중재재판소는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분쟁당사국들 각각의 권리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남극환경과 보존 및 관련 상태에 대한 중대한 훼손의 방지를 위하여 동 상황하에서 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는 잠정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⁸⁴⁾ 또한 분쟁당사국들은 제9조에 따라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상기에 규정된 잠정조치를 즉각적으로 준수한다.⁸⁵⁾

82) 동 의정서 제18조 내지 제20조.

83) 동 의정서 부록 제2조 참조.

84) 동 의정서 부록(중재재판) 제6조 1항.

3) 정보제공의 의무

분쟁당사국들은 중재재판소의 작업을 촉진시켜야 하고, 특히 당해국가의 국내법 및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재판소에 모든 관련문서와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필요시 증인 또는 전문가를 불러 증거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⁸⁶⁾

4) 비용부담의무

중재재판소가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중재관의 보수를 포함한 중재재판소의 비용은 분쟁당사국들이 동일하게 부담한다.⁸⁷⁾

3. 환경영향평가제도

1) 사전 검토의무

의정서 제8조에서 언급된 남극에서의 제안된 활동의 환경영향은 그 활동이 개시되기 전에 적절한 국내절차에 따라서 검토되어야 하며, 어떤 활동이 경미하거나 또는 일시적인 것 이하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정되면, 그 활동은 즉시 수행될 수 있다.⁸⁸⁾

2)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의무

① 초기 환경평가

초기 환경평가는 어떤 활동이 경미하거나 또는 일시적인 것 이하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결정되지 않았거나 또는 종합적인 환경평가가 동 부속서 제3조에 따라서 작성되고 있지 않다면, 초기환경평가가 작성되어야 한다.

초기환경평가에서 제안된 활동이 단지 경미하거나 또는 일시적인 영향만을 미칠

85) 동 부록 제6조 제2항.

86) 동 제8조.

87) 동 제11조 제5항.

88) 동 부속서 제1조.

것으로 나타난다면, 감시를 포함한 적절한 절차가 동 활동의 환경영향을 평가하고 입증하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조건하에서 동 활동은 계속할 수 있다.

② 종합적 환경평가

종합적 환경평가는 계획된 활동이 경미하거나 또는 일시적인 것 이상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초기환경평가에 나타나거나 또는 달리 결정된다면 종합적 환경평가가 작성되며, 종합적 환경평가에는 동 부속서 제3조상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동 부속서 제3조는⁸⁹⁾ 첫째, 활동의 목적, 위치, 지속기간, 강도 및 실행되고 있지 않은 대안과 그 대안들의 영향을 포함하여 동 활동에 대한 가능한 대안을 포함하는 제안된 활동에 대한 기술,

둘째, 예측된 변화와 비교된 초기 환경평가 상태에 대한 기술과 제안된 활동이 없는 경우의 환경관련 상태에 대한 예측, 제안된 활동의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과 자료에 대한 기술, 제안된 활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직접적 영향의 성질, 범위, 지속기간과 강도에 대한 평가, 제안된 활동의 가능한 간접적 또는 2차적인 영향에 대한 고려, 현존 활동과 기타 알려진 계획된 활동의 견지에서 제안된 활동의 누적적 영향에 대한 고려, 제안된 활동의 영향을 감소 또는 완화시키고 예상되지 않은 영향을 탐지하여,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사고를 처리할 뿐만 아니라 동 활동의 부정적 영향을 조기에 경고할 수 있는 감시계획을 포함한 조치의 확인,

셋째, 제안된 활동의 불가피한 영향의 확인, 제안된 활동이 과학조사수행과 여타 현존하는 사용목적 및 가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고려, 이 항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수집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과 불확실성의 차이 확인, 이 항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비전문적 요약,

넷째, 종합적 환경평가를 준비한 사람 또는 기구의 성명과 주소 및 그에 대한 논평을 보낼 주소

다섯째, 종합적 환경평가안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해야 하고, 모든 당사국에게 논평을 위하여 배포되고 당사국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논평의 접수를 위하여 90일간의 기간이 부여되며, 종합적 환경평가안은 적절한 고려를

89) 동 부속서 제3조.

위하여 적어도 차기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120일전에 당사국에 배포됨과 동시에 위원회에도 송부되어야 한다.90)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가 위원회의 조언에 따라서 종합적 환경평가안을 고려할 기회가 없다면 남극조약지역에서 제안된 활동을 계속 수행하기 위한 어떠한 최종결정도 내리지 않는다. 다만, 제안된 활동을 계속 수행하려는 어떠한 결정도 이 항의 활동을 통하여 종합적 환경평가안의 배포일로부터 15개월 이상 지체하지 않는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최종적인 종합적 환경평가는 종합적 환경평가안에 대하여 접수된 논평을 언급, 포함 또는 요약하여야 한다. 최종적인 종합적 환경평가 및 이와 관련된 어떤 결정에 대한 토의, 그리고 제안된 활동의 이점과 관련하여 예견되는 영향의 중요성에 대한 모든 평가는 남극조약지역에서 제안된 활동이 시작되기 적어도 60일 이전에 모든 당사국에 배포되어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이를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91)

종합적 환경평가가 완결된 후 계속되는 모든 활동의 영향을 평가하고 입증하기 위하여 주요한 환경지표와 적절한 감시를 포함한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상기 1항과 제2조 2항에서 언급된 절차는 특히 다음 사항을 위하여 활동의 영향에 대한 규칙적이고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제공하도록 강구되어야 한다.92)

첫째, 그 영향이 이 의정서와 조화를 이루는 정도에 대한 평가

둘째, 영향을 최소화 또는 완화시키는데 유용한 정보와 적절한 경우 활동의 정지, 취소 또는 수정의 필요성에 대한 정보의 제공,

다음 정보는 당사국들에게 배포되고 위원회에 송부되며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제1조에 언급된 절차에 대한 기술, 제2조에 따라서 작성된 모든 초기 환경평가와 평가의 결과 취하여진 결정에 대한 연간목록, 제2조 2항 및 제5조에 따라서 작성된 절차를 통하여 획득한 중요 정보와 그 결과 취하여진 모든 조치, 제3조 6항에 언급된 정보. 이 부속서에 규정된 절차를 이행함이 없이 어떤 활동의 수행이 요청되는 인명, 선박, 항공기, 고가치장비와 설비의 안전,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긴급사태에는 이 부속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긴급사태에 수행된 활동에 이 부속서에

90) 동 부속서 제3조 3, 4항.

91) 동 부속서 제3조, 5,6항.

92) 동 부속서 제5조.

규정된 절차에 따랐다면 종합적 환경평가의 작성이 요구되는 경우, 즉시 당사국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활동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그 활동이 수행된 후 90일 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⁹³⁾

이 부속서는 남극조약 제9조 제1항에 따라서 채택된 조치에 의하여 개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동 조치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개정 또는 변경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이 채택된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종료 1년후 발효한다. 다만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수탁자에게 상기 기간내에 동 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거나 또는 동 조치를 승인할 수 없을때 통보하지 않아야 한다. 상기 1항에 따라서 발효하는 이 부속서의 모든 개정 또는 변경은 수탁자가 기타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승인통고를 접수하였을 때부터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⁹⁴⁾

종합적 평가안은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해야 하고 모든 당사국에게 논평을 위하여 배포되고 당사국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토록 하여야 한다.⁹⁵⁾ 동 평가안은 적어도 차기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120일전에 당사국에 배포됨과 동시에 위원회에도 송부되어야 한다.

최종적인 종합적 영향평가는 종합적 환경평가안에 대하여 접수된 논평을 언급, 포함 또는 요약하여야 하며, 최종적 평가는 제안된 활동이 시작되기 적어도 60일 이전에 모든 당사국이 이를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포되어야 한다.⁹⁶⁾

3) 정보의 배포

동 부속서 제6조상의 정보는 당사국들에게 배포되고 위원회에 송부되며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토록 하여야 한다.⁹⁷⁾

4) 긴급사태

환경보호와 관련된 긴급사태에는 이 부속서가 적용되지 않으나, 그 활동이 동 부속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랐다면 종합적 환경영향평가의 작성이 요구되는 경우, 즉시

93) 동 부속서 제7조.

94) 동 부속서 제8조.

95) 동 부속서 제3조 제3항.

96) 동 부속서 제3조 제6항.

97) 동 부속서 제6조.

당사국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하며, 그 활동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그 활동이 수행된 후 90일 이내에 행하여져야 한다.⁹⁸⁾

4. 남극 동식물군의 보존

1) 토착 동식물군의 보호

본 부속서의 허가서에 따라서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획득 또는 유해한 간섭은 금지되며,⁹⁹⁾ 허가서는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하여 수행될 것인지를 포함한 허가된 활동을 구체화해야 하고 동 부속서 제3조상의 경우에만 발급된다. 이 경우에도 특별보호종¹⁰⁰⁾은 동 부속서 제3조 제5항의 경우 이외에는 발급되지 않는다.

토착포유동물과 새에 대한 모든 포획은 실행가능한 최소한의 통증과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행한다.¹⁰¹⁾

2) 비토착종, 기생충 및 질병의 반입제한

남극조약지역에 토착이 아닌 동물 또는 식물의 모든 종도 허가서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극조약지역의 육지, 빙봉 또는 해양으로 반입되지 않는다.¹⁰²⁾

개는 육지 또는 빙봉으로 반입되지 않으며, 현재의 개는 1994년 4월 1일까지 제거시킨다.¹⁰³⁾

남극조약지역에 토착이 아닌 것으로서 동 지역에 반입된 기타 식물 또는 동물은 그 자손을 포함하여 그들이 토착동식물군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결정되지 않는 한 번식하지 못하도록 소각 또는 그와 동등한 효과를 갖는 방법으로 제거 또는 처리된다.¹⁰⁴⁾

98) 동 제7조.

99) 동 부속서 제3조 제1항.

100) 동 부속서의 부록A 참조.

101) 동 제3조 제6항.

102) 동 제4조 제1항.

103) 동 제4조 제2항.

104) 동 제4조 제4항.

각 당사국은 토착동식물군에는 존재하지 않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기생충, 효모, 균류 등과 같은 미생물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부속서의 부록C에 있는 것을 포함한 예방책을 취할 것을 요청한다.¹⁰⁵⁾

3) 정보의 배포 및 교환

각 당사국은 특히 금지된 활동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 및 남극조약지역에 있거나 동 지역으로 들어갈 예정의 모든 사람들이 이 부속서의 제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보호종과 관련 보호지역에 관한 목록을 규정하고 있는 정보를 준비하고 그들이 이용가능하도록 한다.¹⁰⁶⁾

당사국은 남극조약지역내에서 매년 포획된 토착포유동물, 새 또는 식물의 각 종의 수 또는 양에 관련되는 허가서를 포함한 기록과 통계의 수집 및 교환, 보호 정도에 관한 정보의 획득 및 교환, 공통된 제출양식의 작성 등을 준수한다.¹⁰⁷⁾

각 당사국은 매년 11월말 이전에 위원회, 기타 당사국들에게 지난 해 7월 1일부터 그 해 6월 30일까지 위에 따라 취해진 조치와 이 부속서하에서 발급된 허가서의 수와 성질에 관하여 통보한다.

5. 폐기물의 처리 및 관리

1) 일반적 의무

남극조약지역에서 생산 또는 처리되는 폐기물의 양은 남극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축소되어야 한다.¹⁰⁸⁾

폐기물 처리와 발생량 축소, 저장, 처리 및 제거는 남극조약지역에서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고려사항이다.¹⁰⁹⁾

폐기물은 실행가능한 최대한도로 폐기물을 발생시킨 국가 또는 처리의무국가로 회송된다.¹¹⁰⁾

105) 동 제4조 제6항.

106) 동 제5조.

107) 동 제6조 제1항.

108) 동 부속서 제1조 제2항.

109) 동 부속서 제1조 제3항.

육상에 있는 과거와 현재의 폐기물 처리장소와 폐기된 남극활동 작업장소는 동 폐기물의 생성자 및 장소의 사용자에 의하여 정화되어야 한다.¹¹¹⁾

2) 폐기물 처리방법

① 남극지역으로부터의 제거에 의한 폐기물 처리

방사물 물질, 전기 배터리, 액체 및 고체연료, 유해한 수준의 중금속 또는 맹독 또는 유해 지속성 화합물을 내포한 폐기물,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부가물을 함유한 화학처리된 목재 및 기타 제품, 플라스틱 폐기물 등은 그 폐기물의 생성자에 의하여 남극조약지역으로부터 제거된다.¹¹²⁾

수입동물 시체의 잔여물, 실험실에서 배양된 미생물과 식물병원균, 반입된 조류제품 등의 폐기물은 소각, 고압소독 또는 멸균되도록 처리되지 않는 한, 동 폐기물의 생성자에 의하여 남극조약지역으로부터 제거된다.¹¹³⁾

② 소각에 의한 폐기물 처리

동 부속서 제2항 이외의 가연폐기물은 실행가능한 최대한도로 유해한 배출물을 감소시키는 소각로에서 소각시키며, 그 소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체잔여물은 남극조약지역으로부터 제거한다.¹¹⁴⁾

폐기물의 모든 개방소각은 조속히 철폐되어야 하며 1998/1999 시기전에 철폐가 완료되어야 한다. 철폐전의 개방소각은 남극의 생물학적, 과학적, 역사적, 미학적 또는 환경보존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¹¹⁵⁾

③ 육상에서의 기타 폐기물 처리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제거 또는 처리되지 않은 폐기물은 부동지역 또는 담수계에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¹¹⁶⁾

110) 동 부속서 제1조 제4항.

111) 동 부속서 제1조 제5항.

112) 동 부속서 제2조 제1항.

113) 동 부속서 제2조 제3항.

114) 동 부속서 제3조 제1항.

115) 동 부속서 제3조 제2항.

116) 동 부속서 제4조 제1항.

제2조에 따라 남극조약지역으로부터 제거되지 않은 오물, 생활하수 및 기타 액체 폐기물은 실행가능한 해빙, 빙봉 또는 대륙빙에 처리되어서는 안된다.¹¹⁷⁾

야외캠프에서 생성된 폐기물은 이 부속서에 따라서 동 폐기물의 생성자에 의하여 실행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그 처리를 위하여 지원기지 또는 선박으로 옮긴다.

④ 해양에서의 기타 폐기물 처리

오물과 하수는 해양환경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동 부속서 제5조 제1항의 조건하에서 직접 해양으로 배출할 수 있다.¹¹⁸⁾

3) 폐기물의 관리 및 관리계획

남극에서 활동하는 각 당사국은 폐기물처리 분류체제를 오물 및 생활하수(부류1), 연료와 윤활유를 포함한 기타 액체폐기물과 화학제품(부류2), 가연성 고체(부류3), 기타 고체폐기물(부류 4), 방사능 물질(부류 5) 등으로 분류한다.¹¹⁹⁾

각 당사국은 폐기물 감축, 보관 및 처리가 포함되는 폐기물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매년 재검토하여 갱신하며,¹²⁰⁾ 동 계획은 남극 조약 제3조, 제7조 및 조약 제9조하의 관련 권고문에 따라서 정보의 연례교환에 포함된다.¹²¹⁾

각 당사국은 동 계획의 사본과 동 계획의 이행 및 재검토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송부한다.¹²²⁾

4) 기타 의무

모든 폐기물은 주변 환경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보관한다.¹²³⁾ 또한 모든 폴리염화 바이페닐, 유균토양, 폴리스티렌 알갱이, 무늬목 또는 유사한 형태의 포장 또는 과학적, 의학적 또는 위생상의 목적으로 요구되는 용도 이외의 살충제는 남극조약지역의 육상, 빙봉 또는 해양으로 유입되어서는 안된다.¹²⁴⁾

117) 동 부속서 제4조 제2항.

118) 동 부속서 제5조 제1항.

119) 동 부속서 제5조 제1항.

120) 동 부속서 제8조 제2항.

121) 동 부속서 제9조 제1항.

122) 동 부속서 제9조 제2항.

123) 동 부속서 제6조.

124) 동 부속서 제7조.

6. 남극의 해양오염방지

1) 처리방법

① 기름의 배출

해양으로의 기름 또는 기름혼합물의 배출은 MARPOL 73/78의 부속서 I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되며, 배출될 수 없는 슬러지, 오염된 벨러스트, 탱크 세척수 및 기타 기름잔류물과 혼합물은 선박내부에 저장하여야 한다.¹²⁵⁾

② 유해액체물질의 배출

해양환경에 유해한 만큼의 양 또는 농도를 지닌 모든 유해액체물질과 화학물 또는 기타 물질의 해양으로의 배출은 금지된다.¹²⁶⁾

③ 쓰레기의 처리

모든 플라스틱제품 및 모든 쓰레기의 해양으로의 처리는 금지된다.¹²⁷⁾ 음식폐기물의 해양으로의 처리는 그 폐기물이 25MM 이하 크기의 구멍을 가지는 필터를 통과하는 경우에 분쇄기 또는 연마기를 통한 배출은 허용된다. 다만, 그 처리가 MARPOL 73/78의 부속서 V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육지와 빙붕으로부터 떨어져 시행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가까운 육지 또는 빙붕으로부터 12해리 이상 떨어져야 한다.¹²⁸⁾ 또한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에 쓰레기기록부를 사용하여야 한다.¹²⁹⁾

④ 오물의 배출

각 당사국은 빙붕으로부터 12해리 이내에서 처리되지 않은 오물의 해양으로의 어떠한 배출도 배제하며, 배출시에도 오물을 동시에 배출하여서는 안되며, 가능한 선박

125) 동 부속서 제3조 제1항.

126) 동 부속서 제4조.

127) 동 부속서 제4조 제1항, 제2항.

128) 동 부속서 제5조 제3항.

129) 동 부속서 제5조 제6항.

이 4노트 이상의 속도로 항행중일 때 배출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국들은 적절한 경우 오물기록부를 사용하여야 한다.¹³⁰⁾

2) 선박의 저장능력 및 수용시설

각 당사국은 남극활동에 종사하거나 지원하는 선박들에 대하여 모든 슬러지, 오염된 밸러스트, 탱크 세척수 및 기타 기름잔류물과 혼합물, 유해액체물질의 저장을 위하여 선내에 탱크를 설치하고, 동 지역을 떠난 후에 동 기름잔여물과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하여야 하며,¹³¹⁾ 각 당사국은 위에서 저장된 물질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을 제공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¹³²⁾

다른 당사국의 항구에서 남극조약지역으로 출발하거나 또는 동 지역으로부터 도착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당사국은 항구수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남극조약지역에 인접한 당사국이 불공평한 부담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국들과 협의하여야 한다.¹³³⁾

3) 긴급조치 및 대응

각 당사국은 해양오염 긴급사태 및 해양기름누출에 대한 긴급계획을 포함한 해양오염대응을 위한 긴급계획을 수립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동 계획의 수립이나 이행시 협력하고 위원회, 국제해사기구 및 국제조직의 조언을 구한다.¹³⁴⁾

7. 보호 및 관리구역제도

1) 목적

본 의정서의 목적은 해양을 포함한 남극지역을 남극특별보호구역이나 남극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다. 그러한 구역에서의 활동은 동 부속서의 규정에 의해 채택된 관리계획에 의하여 금지, 제한 또는 관리된다.¹³⁵⁾

130) 동 부속서 제6조.

131) 동 부속서 제9조.

132) 동 부속서 제9조 제2항.

133) 동 부속서 제9조 제3항.

134) 동 부속서 제12조.

2) 남극특별보호구역

해양을 포함한 남극의 어떤 구역도 남극의 환경적, 과학적, 역사적, 미학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그러한 가치들이 천연 그대로의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이는 이미 진행중이거나 계획된 과학적 조사활동에도 적용된다. 당사국들은 체계적인 환경적, 지리적 구조에 의하여 어떤 지역을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할 것인가를 사정하여야 한다.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에서 이미 지정된 특별보호구역과 특별과학관심구역을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하며 추후에 명칭이 바뀌거나 달리 번호가 부여된다. 남극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제7조하에 발급된 허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지역에서의 출입이 금지된다.¹³⁶⁾

3) 남극특별관리구역

활동이 수행중이거나 장차 수행될 해양을 포함한 어떠한 지역도 남극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으며, 그 계획된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력하며, 일어날지도 모르는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당사국 사이의 협력을 증진하거나, 환경적 충격을 최소화한다. 남극특별관리구역의 출입은 허가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¹³⁷⁾

4) 관리계획

당사국들이나 남극연구과학위원회, 남극해양생물자원위원회 등은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에 관리계획을 제출함으로써 일정 지역을 남극특별보호구역이나 남극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¹³⁸⁾

5) 지정절차

제안된 관리계획은 남극과학위원회,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에 제출된다.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에 그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 동위원회는 남극연구과학위원회,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의견을 참작하여야 한다. 의정서의 제4조와 제5조 규

135) 동 부속서 제2조.

136) 동 부속서 제3조.

137) 동 부속서 제4조.

138) 동 부속서 제5조.

정을 고려하여,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의 사전승인없이 남극특별보호구역이나 남극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될 수 없다. 관리계획의 승인에 관하여는 수탁국은 모든 당사국들에게 즉시 회람시켜야 한다. 수탁국은 현재의 모든 관리계획에 관한 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¹³⁹⁾

6) 허가서

모든 당사국들은 남극특별보호구역에 관련된 관리계획상의 요구사항에 따라 남극특별보호구역내의 활동과 관련되거나 출입상의 허가를 발부할 정당한 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동 허가는 관리계획상의 모든 구역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하며, 동 구역의 위치와 활동의 정도를 지정하여야 하며, 권한을 부여받은 활동이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행해지는 것이며 관리계획에 의해 부여된 여타 조건들을 명기하여야 한다.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에서 과거에 관리계획을 갖지 않았던 구역의 특별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의 경우에 동 구역의 자연적 생태체계를 훼손하지 않고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는 것으로 과학적 목적으로만의 허가를 발부하여야 한다. 각 당사국은 관련 남극특별보호구역에서는 허가서의 사본을 소지한 허가소지인임을 요구한다.¹⁴⁰⁾

7) 역사적 장소 및 기념물

남극특별보호구역이나 남극특별관리구역내에 있거나 남극특별보호구역이나 남극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역사적 가치있는 것으로 인정된 장소나 기념물에 대하여는 당사국은 이를 역사적 장소 또는 기념물로 등재할 것을 제안할 수 있다. 이미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에 의해 지정된 현존의 역사적 장소 및 기념물은 동조에 의한 역사적 장소나 기념물로 간주된다. 등재된 역사적 장소 및 기념물을 훼손, 제거 및 파괴할 수 없다. 역사적 장소 및 기념물의 명부는 위 제2항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기탁국은 역사적 장소 및 기념물의 명부를 보관하여야 한다.¹⁴¹⁾

8) 정보 및 통보

139) 동 부속서 제6조.

140) 동 부속서 제7조.

141) 동 부속서 제8조.

남극에 방문하거나 방문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 부속서의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기 위하여 모든 당사국은 관련 정보를 설명하여야 하며, 특히, a) 남극특별보호구역이나 남극특별관리구역의 위치, b) 동 구역의 목록이나 지도, c) 각 구역에 관련되는 금지사항의 목록을 포함한 관리계획, d) 역사적 장소 및 기념물의 위치 및 관련 금지사항에 관한 제한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모든 당사국은 남극특별보호구역이나 남극특별관리구역, 역사적 장소 및 기념물의 위치나 구역을 지도나 수로지도 또는 다른 인쇄물에 나타낼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당사국들은 남극특별보호구역, 남극특별관리구역의 경계가 적당한 것인가, 역사적 장소 및 기념물이 그 장소에 정확히 명기되어 있는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¹⁴²⁾

9) 정보의 교환

당사국은 방문에 관한 보고와 허가에 관한 자료 등의 기록을 수집하거나 교환하는 것, 지정구역에 대한 변형을 가하거나 훼손하는 것에 대해 정보를 획득하거나 교환하는 것, 아래 제2항에 의하여 당사국에 의해 제출되는 기록 및 정보의 공통양식을 작성하는 것을 준비하여야 한다. 각 당사국은 매년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에 동 부속서에 의해 발급된 허가의 수와 성질을 매년 12월 말일까지 다른 당사국이나 위원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각 당사국은 조사연구나 다른 활동을 할 때에는 그러한 활동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동 조약에 의한 매년의 정보교환에 있어서 개요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각 당사국은 매년도 12월 말일까지 위반행위의 예 및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사찰지역을 포함한 동 부속서의 이행사항에 관한 조치를 다른 당사국이나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¹⁴³⁾

142) 동 부속서 제9조.

143) 동 부속서 제10조.

제 3 절 남극환경보호 현황

1. 남극에서의 환경영향평가현황

지금껏 시행된 남극에서의 환경영향평가는 주로 남극기지운영국들에 의하여 행하여져 왔으며, 그밖에 정부부서나 위원회, 비정부 환경단체, 대학의 연구단체, 여행사 및 학생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 지기도 하였다(표IV-1 참조).

<표 IV-1> 환경영향평가의 수행주체

(1988년 - 1995년 5월 현재)

평가주체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계
	IEE *	D. CEE **	F. CEE ***	
남극기지운영국	30	1	4	35
정부 부서나 위원회	1	3	1	5
협의회	4	0	0	4
비정부 환경기관	2	0	0	2
대학 연구그룹	1	0	0	1
여행사	1	0	0	1
학생 연구자	1	0	0	1
전 체	40	4	5	49

* 초기환경영향평가(Initial Environmental Evaluations : IEE)

**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초안(Draft Comprehensive Environmental Evaluations: D. CEE)

*** 최종 포괄적 환경영향평가(Final Comprehensive Environmental Evaluations: F. CEE)

자료 : Document in XIXth Consultative Meeting, XIX ATCM/INF 15, May 8, 1995.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기지운영국들중에서도 호주가 시행한 환경평가횟수가 가장 많으며, 미국, 뉴질랜드,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의 순서이다(표IV-2 참조).

<표 IV-2> 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당사국 현황(1988년-1995년 5월 현재)

당 사 국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계
	IEE *	D.CEE **	F. CEE ***	
호 주	13	0	0	13
미 국	10	0	1	11
뉴질랜드	3	1	1	5
영 국	3	1	1	5
독 일	3	0	0	3
네덜란드	2.5	0	0	2.5
프 랑 스	0	1	1	2
남 아 공	1	1	0	2
이 태 리	1	0	0	1
아르헨티나	1	0	0	1
노르웨이	1	0	0	1
일 본	1	0	0	1
칠 레	0.5	0	0	0.5
전 체	39	4	5	49

- * 초기환경영향평가(Initial Environmental Evaluations : IEE)
- **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초안(Draft Comprehensive Environmental Evaluations: D. CEE)
- *** 최종 포괄적 환경영향평가(Final Comprehensive Environmental Evaluations: F. CEE)

자 료 : Document in XIXth Consultative Meeting, XIX ATCM/INF 15, May 8, 1995.

환경영향평가대상은 남극에 설치된 기지의 설비, 구조 및 운영에 관한 것이 가장 많으며, 암석이나 얼음의 시추, 활주로, 쓰레기 처리시설 등에 관한 순서로 영향평가가 이루어졌다(표Ⅳ-3 참조).

<표 Ⅳ-3>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1988년 - 1995년 5월 현재)

환경평가대상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계
	IEE *	D. CEE **	F. CEE ***	
기지설비의 구조	19	0	0	19
기지 재건조사의 구조, 운영	4	2	1	7
과학적 암석, 얼음의 시추	3	1	2	6
기지의 밀집, 청결, 이동	5	0	0	5
임시활주로, 착륙지의 구조	2	1	1	4
쓰레기 처리	3	0	0	3
선박 운항	2	0	0	2
남극연구계획	0	0	1	1
항공기 운항	1	0	0	1
유류폐품 회수	1	0	0	1
전 체	40	4	5	49

* 초기환경영향평가(Initial Environmental Evaluations : IEE)

**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초안(Draft Comprehensive Environmental Evaluations: D. CEE)

*** 최종 포괄적 환경영향평가(Final Comprehensive Environmental Evaluations: F. CEE)

자료 : Document in XIXth Consultative Meeting, XIX ATCM/INF 15, May 8, 1995.

평가지역은 연안부빙, 내륙의 빙상지역 및 연안의 빙상지역의 순으로 많으며, 빙봉이나 해양, 해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도 행해졌다(표IV-4 참조). 또한 관광이 남극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각국의 관심이 높으나, 이에 대한 자료의 미비성으로 관광에 대한 환경영향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남극관광 자체에 대한 각국의 보고서의 통일, 관광시 훈련 및 교육을 강조하는 것으로 의견이 집약되고 있다.¹⁴⁴⁾

<표 IV-4> 환경영향평가지역 현황

(1988년 - 1995년 5월 현재)

환경평가지역	환경영향평가의 종류			계
	IEE *	D.CEE **	F.CEE ***	
연안 부빙	24	1	1	26
내륙빙상	4	1	2	7
내륙 부빙	3	1	0	4
연안 빙상	2	0	0	2
빙봉	2	0	0	2
해빙	0	1	1	2
해양	1	0	0	1
전 체	36	4	4	44

- * 초기환경영향평가(Initial Environmental Evaluations : IEE)
- **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초안(Draft Comprehensive Environmental Evaluations: D. CEE)
- *** 최종 포괄적 환경영향평가(Final Comprehensive Environmental Evaluations: F. CEE)

자 료 : Document in XIXth Consultative Meeting, XIX ATCM/INF 15, May 8, 1995.

144) 외무부, 제19차 남극조약협약의당사국회의 결과보고서, 1995년 5월, p.27.

<표 IV-5> 1957년-1994년간의 남극의 하계 관광객 현황

(1994년 현재)

년도	선박	항공	관광객	년도	선박	항공	관광객
1957/58	1	2	194	1979/80	2	6	855
1958/59	2	2	344	1980/81	2	8	839
1965/66	1	1	58	1981/82	3	10	1,430
1966/67	3	2	94	1982/83	2	7	707
1967/68	2	5	257	1983/84	2	8	822
1968/69	2	5	1,712	1984/85	1	6	506
1969/70	2	4	972	1985/86	4	11	884
1970/71	4	4	943	1986/87	3	16	1,754
1971/72	3	6	984	1987/88	6	27	2,751
1972/73	3	8	2,075	1988/89	6	31	3,110
1973/74	3	5	1,876	1989/90	5	21	2,347
1974/75	2	11	4,012	1990/91	9	32	4,491
1975/76	2	10	2,250	1991/92	12	54	6,254
1976/77	2	7	1,068	1992/93	16	68	6,983
1977/78	3	9	845	1993/94	12	69	7,790
1978/79	2	7	1,048				
계 : 선박이나 항공기의 이용(462), 관광객(60,255)							

자료 : Document in XIXth Consultative Meeting, XIX-ATCM/INF 13, May 8 1995, p.7.

2. 보호지역제도의 현황

남극조약협약당사국의 1964년의 AMACFF결정에 의거, 1966년에는 15곳의 특별 보호구역(Specially Protected Area: SPA)이 지정되었다. SPA의 출입허가기준의 하나가 “다른 곳에서는 수행할 수 없는” 과학적 목적에 기여케 함이었는데, 결과적으로 생물보다는 과학연구를 보호하게 되었으므로 생물의 절대적 보호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SCAR의 조언이 1975년 노르웨이의 Oslo에서 열린 제8차 남극조약체제협약당사국(ATCP)회의에서 권고사항 VIII-3과 VIII-4로 구체화되어 ‘과학적 특별관심지역’(Site of Special Scientific Interest : SSSI.)이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이의 목적은 과학적으로 특별한 관심이 있는 지역을 훼손으로부터 보호해서 과학연구를 가능케하고, 장기적으로 보존하려는 것이다.

SSSI는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다.

첫째는 SSSI는 생물학적인 연구뿐 아니라, 어떤 종류의 과학적 연구도 보호한다는 점이다(예, Arrival Heights).

둘째는 SSSI에서는 특별한 연구로, 필요하다면 교란되지 않은 참고지역을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Barwick Valley).

셋째는 SSSI에서는 “간섭의 위험이 뚜렷할 때”이거나 “유해한 간섭으로부터 장기간 보호”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지정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일정기간 동안만 지정된다는 것이다. 물론 이 기간은 연장이 가능하다. 마지막 두 조항은 과학연구의 자유를 인정하는 남극조약의 정신과 분규를 일으킬 수도 있는 과학연구의 장기적 유보를 예방하는데에 있다.

SPA와 SSSI의 큰 차이점의 하나는, SPA에서는 모든 방문객을 최대한으로 막는 대신에, SSSI 에서는 설립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다른 과학연구를 명시했다는 점이다. 과학적 특별관심지역에는 서면허락하에 안내자의 안내에 의해서만 출입이 허용되며, 10월-2월말에 걸친 새들의 부화기간 동안에는 새들의 군서지를 걸어 다니지도 못하며, 새들을 놀라게 해서도 안된다. 차량의 운행이 금지되며, 비행기나 헬리콥터는 고도 500미터 이하로는 비행이 금지되며, 경계선 200m이내에는 착륙이 금지된다. 폭발물 사용이 금지되며, 경계선 300m 이내에서는 화기사용이 금지된다. 윤활유나 휘발유 등을 물가에 버려서는 안된다.

대개의 SSSI가 동, 식물의 서식과 관련된 생태계 연구가 보호의 주된 이유이다. NO.9와 17은 인간의 활동에 따르는 생태계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지역이며, NO.11은 남극의 최고화산인 Mt,Erebus의 Tramway능선으로, 남극에서 알려진 단 2군데 높은 곳에서의 분기공활동과 식물의 서식과의 관계를 연구하기 위함이며, 연구지역은 참고지역과 시료채집가능지역 등 두 군데로 되어있다.

NO.20은 유관속식물의 비교적 큰 서식지이며, NO.21은 1967, 1969년 화산폭발에 따르는 새로운 서식지형성과 여기에서의 식물군집의 형성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Deception섬 내에 5지역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NO.2는 극광과 지자기에 관련된 고층대기 연구에 이상적인 전자기학적으로 조용한 장소로서 인간의 교란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며, NO.5와 6은 각각 대표적 신생대지층과 생흔화석과 중생대 쥬라기-백악기의 퇴적층과 함화층으로서 보호되고 있다.

3. 감시 및 사찰현황

남극에 대한 기지사찰은 <표 IV-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로, 미국, 영국, 칠레, 아르헨티나, 칠레, 호주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지사찰결과 남극에 대한 군사적 성격의 행위나 남극조약위반행위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기지가 보유한 연료저장장치와 운송, 버려진 기지의 처리문제, 폐기물의 처리 등이 남극의 환경에 잠재적으로 유해한 것임이 밝혀졌다.

사찰은 사찰목록표에 의하여 행해지는데, 제1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는 상설기지목록표(A), 선박사찰 목록표(B), 버려진 기지에 대한 목록표(C), 폐기물 처리 장소사찰목록표(D)를 각각 채택하여 이를 시행하기로 하였다.¹⁴⁵⁾

145) 외무부, 제1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결과보고서(1995년 5월), p.28.

< 표 IV-7 > 기지사찰 현황

(1996년 -1975년)

년도	사찰주체	사찰횟수	사찰대상
1963	뉴질랜드	3	미국기지
1964	미국	10	아르헨티나(Decepcion, Esperanza) 칠레(Pres. Videla, Perdo Cerda) 프랑스(D. d'Urville) 뉴질랜드(Scott) 영국(Base B, F) 러시아(Mirny, Vostok)
1964	호주	4	뉴질랜드(Scott) 미국(MuMurdo, Byrd, South Pole Station)
1964	영국	1	미국(MuMurdo)
1966	아르헨티나	1	미국
1967	미국	9	아르헨티나(Orcadas) 호주(Wilkes, Mawson) 덴마크(M/S Dan) 프랑스(D. D'Urville) 일본(Syowa) 남아공(SANAE) 영국(Signy) 러시아(Molodezhnaya)
1971	미국	4	호주(Casey, Mawson) 프랑스(D. D'Urville) 러시아(Mirny)
1975	미국	4	아르헨티나(Alm. Brown) 칠레(Eduardo Frei) 영국(Argentine Islands) 러시아(Bellingshausen)
1977	아르헨티나	1	미국
	미국	5	아르헨티나(Marambio) 칠레(Eduardo Frei) 뉴질랜드(Scott) 러시아(Bellingshausen, Druzhnaya IV)

자료 : Document in XIXth Consultative Meeting, XIX ATCM/WP 34, May 9, 1995, pp.20-24.

년도	사찰주체	사찰횟수	사찰대상
1980	미국	6	아르헨틴(Alm Brown, Esperanza) 칠레(Gen. B. O'Higgins) 폴란드(Arctowski) 영국(Rothera) 러시아(Bellingshausen)
1983	미국	14	아르헨틴(Marambio, Belgrano II) 호주(Casey, Mawson, Davis) 프랑스(D. d'Urville) 독일(G. Von Neumayer) 일본(Syowa) 남아공(SANAE) 영국(Halley) 러시아(Novolazarevskaya Molodezhnaya, Mirny, Leningradskaya)
1985	미국	7	아르헨티나(Jubany) 칠레(Rod. Marsh, E. Frei) 중국(Great Wall) 폴란드(Arctowski) 영국(Faraday) 러시아(Bellingshausen)

자 료 : Document in XIXth Consultative Meeting, XIX ATCM/WP 34, May 9, 1995, pp. 20-24.

년 도	사찰주체	사찰횟수	사찰대상(국명 / 기지명)
1986	호주	1	프랑스(D d'Urville)
1987	칠레	10	아르헨티나(Decepcion, Alm.Brown) 브라질(Cdte. Ferraz/Buque Prof Besnard) 중국(Great Wall) 폴란드(Arctowski) 스페인(Buque Alcocero) 영국(Faraday) 러시아(Bellingsahusen) 우루과이(Artigas)
1987	호주	1	러시아(Mirny)
1988	미국	6	프랑스(D. d'Urvulle) 독일(Gondwana) 이태리(Terra Nova Bay) 뉴질랜드(Scott/cap Bird) 러시아(Leningradskaya)
1989	러시아	15	아르헨티나, 호주(Mawson), 브라질(Cdte. Ferraz), 중국, 독일, 인도, 일본, 뉴질랜드 폴란드, 영국, 미국 (기지명은 알려져 있지 않음)
1989	뉴질랜드	3	영국(Faraday, Rothera, Signy)

자 료 : Document in XIXth Consultative Meeting, XIX ATCM/WP 34, May 9, 1995, pp.20-24.

<IV-10> 기지사찰 현황

(1989년 -1990년)

년 도	사찰주체	사찰횟수	사찰대상(국명 / 기지명)
1989	뉴질랜드/ 영국	11	아르헨티나 // 브라질 칠레 // 중국 폴란드 대한민국 우루과이 미국 러시아
1989	프랑스/ 독일	8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대한민국 스페인 우루과이 영국 미국
1990	칠레	9	아르헨티나 // 브라질 중국 에콰아도르 폴란드 스페인 우루과이 러시아

자 료 : Document in XIXth Consultative Meeting, XIX ATCM/WP 34, May 9, 1995, pp.20-24.

년 도	사찰주체	사찰횟수	사찰대상(국명 / 기지명)
1990	노르웨이	3	독일(G. Von Neumayer) 남아공(SANAE), 영국(Halley)
1990	브라질	4	아르헨티나(Jubani), 중국(Great Wall), 대한민국(세종과학기지), 우루과이(Artiquas)
1990	칠레	9	아르헨티나(Decepcion, Jubany) 브라질(Cdte. Ferraz), 중국(Great Wall), 에콰아도르(M/S Orion) 폴란드(Arctowski), 스페인(Juan Carlos I), 우루과이(Artigas) 러시아(Bellingshausen)
1990	중국	7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폴란드, 대한민국, 우루과이, 러시아
1991	칠레	3	에콰아도르(V. Maldonado) 폴란드(Deception Hut) 미국(Seal Island Hut)
1991	호주	1	중국(Zhong Shan)
1993	영국/이태리/ 대한민국	19	아르헨티나(San Martin, Decepcion, Esperanza) 브라질(Cdte. Ferraz) 독일(M/S Europa) 리베리아(M/S Explorer) 폴란드(Arctowski) 러시아(M/S Vavilov) 대한민국(세종과학기지) 영국(Faraday/Rothera, Stonington Island, Deception, Fossil Bluff) 미국(Palmer, East Base) 스페인(Juan Carlos I, Gabriel de Castilla)

자 료 : Document in XIXth Consultative Meeting, XIX ATCM/WP 34, May 9, 1995, pp.20-24.

년 도	사 찰 주 체	사찰횟수	사 찰 대 상(국명/기지명)
1994	스웨덴	9	독일(Neumayer) 영국(Halley) 러시아(Novolazarevskaya) 인도(Maitri), 독일(George Forster) 남아공(Sarai Marais, SANAE IV) 핀란드(Aboa)
1994	아르헨티나	1	대한민국(세종과학기지)
1995	아르헨티나	2	영국(Rothera, Signy))
1995	미국	8	아르헨티나(Orcadas), 호주(Davis) 중국(Zhong Shan), 프랑스(D. D'Urville) 독일(Neumayer), 일본(Syowa) 러시아(Mirny), 영국(Signy)

자 료 : Document in XIXth Consultative Meeting, XIX ATCM/WP 34, May 9, 1995, pp.20-24.

제 4 장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체제의 동향

제 1 절 제20차 남극조약협약의 당사국회의

1. 회의의 개요

제20차 남극조약협약의 당사국회의는 1996년 4월 29일부터 5월 10일까지 네델란드의 Utrecht에서 개최되었다. 동 회의의 참가국으로서는 협의당사국 26개국¹⁴⁶⁾과 비협의당사국 13개국¹⁴⁷⁾을 비롯하여 남극조약체제 구성요소인 3개의 국제기구¹⁴⁸⁾와 기타 관련 7개의 국제기구¹⁴⁹⁾가 참가하였다.

동 회의의 주요 의제로서는 남극조약체제의 운영보고(Operation of the Antarctic Treaty System: Reports)와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남극조약체제의 운영, 남극의 관할권행사 관련 문제, 남극조약지역에서의 관광 및 비정부기관의 활동, 남극조약하의 사찰, 자료관리, 남극 기간시설·기술 및 운영, 남극과학으로서의 새로운 주요 시도, 남극의 문화적·미학적 가치, 교육 및 훈련, 안전문제, 환경보호조치와 그 효율성, 환경영향평가 절차의 적용 및 이행, 특별 환경보호조치, 남극환경보호구역체제, 환경정보의 수집·보관·교환 및 평가, 환경감시 및 남극환경상태 등이다.

이하에서는 상기한 주요 의제중 중요한 몇 가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2. 권고 XIII-(2)에 따른 보고(의제 5a: 남극조약체제의 운영)

R. T. Scully 미국(남극조약 수탁국) 수석대표는 서울회의 이주 1996년 1월 24일

146) 아르헨티나, 호주, 벨지움, 브라질, 칠레, 중국, 에쿠아도르, 핀란드, 프랑스, 독일, 인도, 이태리, 일본, 한국, 네델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페루, 폴란드, 남아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러시아, 영국, 미국, 우루과이.

147)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캐나다, 콜롬비아, 체코, 덴마크, 그리스, 과테말라,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스위스, 터키(1996년 1월 조약가입), 우크라이나. 비협의당사국 17개국중 북한, 쿠바, 헝가리, 파푸아뉴기니 4개국은 불참.

148)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남극연구화학위원회(SCAR), 남극국별사업자운영위원회(COMNAP).

149) 남극·남빙양연합(ASOC), 국제연합환경계획(UNEP), 국제자연보존연맹(IUCN), 국제남극관광협회(IAATO), 세계기상기구(WMO), 국제수로기구(IHO), 정부간해양위원회(IHO).

터키가 남극조약에 신규가입한 사실을 소개하면서 남극조약당사국 현황을 보고하였다. 또한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에 서울회의 이후 남아공화국, 브라질, 폴란드, 한국, 벨지움 및 인도를 포함하는 6개 ATCP와 1개의 non-ATCP(그리스)가 비준하였음을 보고하면서 동 의정서의 발효를 위해서는 4개의 ATCP(핀란드, 일본, 러시아 및 미국)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덧붙여 의정서 제5부속서를 승인한 국가는 10개 ATCP라고 하였다.

3. 의제 6 :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동 회의의 제1실무작업반(WG I)에서는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의 이행에 관해서 26개 협의당사국중 22개 국가가 의정서를 비준한 사실에 만족하고, 나머지 4개 미비준국은 의정서의 발효를 위해 조속한 비준이 바람직하나 정확한 비준일정을 제시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의정서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이 바람직함을 고려하여 칠레와 영국은 XX ATCM/WP 19, XX ATCM/INF 6과 XX ATCM/INF 7의 정보에 대하여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의정서관련 국내입법에 대해 국가별 구두보고가 있었다.

동 회의에서 주목하여야 할 부분은 배상책임부속서에 관한 것이다. R. Wolfrum교수가 제1주 개최된 배상책임에 관한 법률전문가그룹회의 결과를 보고하면서 제시한 '제5차 초안(Fifth Offering)'과 미국이 제출한 초안¹⁵⁰⁾을 중심으로 회의를 진행하였는데 R. Wolfrum교수는 1995년 11월 27일-30일 브뤼셀에서의 회의와 금번회의에서 실질적인 진전이 있었음을 강조하고 앞으로 직접 남극에서의 과학적·기술적 및 보급지원 경험을 가진 전문가의 참여가 요망된다고 했다.

독일은 배상책임부속서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기 위해 작업문서¹⁵¹⁾를 제출하였다. 전문가회의의 활동에 유념하면서 권고 IV-24에 따라 법률전문가회의의 임무를 연장하였다. 전문가회의를 회기간 회의(21차회의 전)와 21차회의기간중 두차례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들 회의에서 전문가그룹의장의 초안과 미국초안이 토의될 것이고 다른 나라의 초안이 제출되면 이것도 함께 토의될 것이다. 동 작업문서는 또한 동 회의에 남

150) XX ATCM/INF 43.

151) XX ATCM/WP 31.

극에서의 과학적·기술적 및 보급지원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을 참석시켜 줄 것을 촉구하였다.

다른 환경협약과의 관계에서 영국과 칠레가 각각 제출한 작업문서들¹⁵²⁾은 환경보호의정서와 남극조약체제내의 다른 조약과의 관계 그리고 범세계적·지역적 차원의 기타 국제협약과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다루었다. 즉, 환경보호에 관한 일반 협약의 남극적용 문제에 대한 고려는 남극조약 제4조와 관련하여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영국 작업문서의 제49항과 제50항에 대해 전문가회의의 주의를 환기하고 일정한 경우에는 기존 배상책임에 관련된 국제문서가 남극환경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4. 의제 9 : 남극조약지역에서의 관광 및 비정부기관의 활동

남극지역에서의 관광방문객 수의 증가로 인해 과학연구 방해 및 사소위험성의 증대에 대한 우려를 브라질은 자국의 참고문서¹⁵³⁾에서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관광사업자간의 협의하에 Ferraz 기지 방문객을 축소하여 이러한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제시되는 한편 관광은 긍정적인 영향도 있으므로 관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뉴질랜드는 제19차 회의 토의의 후속조치로서 그리고 Resolution 3(1995)에 의해 제출한 '사전통고 및 절기후(post-season)보고'를 위한 서식(안)에 주의를 환기하였으며 일부 국가와 IAATO도 이 시도를 지지하였다. 1년의 시험기간중 이 서식을 채택하기로 합의하는 한편 IAATO는 차기회의에 이 서식이용에 관한 평가결과를 제출하기로 하였다.

뉴질랜드와 아르헨티나 제출한 참고문서¹⁵⁴⁾를 보면 관광사업자들이 새로운 지역을 여행일정이 포함시키는 추세에 있는데 남극·남빙양연합(ASOC)은 이러한 방문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때까지는 사업자들이 신중히 접근하여 새로운 지역을 추가하지 않도록 촉구하였다. 미국과 영국은 참고문서¹⁵⁵⁾를 통해 관광

152) XX ATCM/WP 10 rev.1과 XX ATCM/WP 30.

153) XX ATCM/INF 61.

154) XX ATCM/INF 14와 29.

155) XX ATCM/INF 102와 100.

선 및 기타 선박의 소규모 조사반이 관광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잠재적 악영향을 가장 잘 회피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경제적인 방법이 될 수 있는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은 참고문서156)에서 자국 탐사구조반이 노르웨이 민간 탐험대 구조시 커다란 위험에 처하였다는 사실과 노르웨이가 동 구조비용을 충분히 보상하였다고 밝혔는데 이 사례를 두고볼 때 노르웨이가 밝힌바와 같이 남극활동과 관련하여 소요될 탐사구조 비용을 위한 충분한 보험 및 보증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있다.

뉴질랜드가 소개한 작업문서157)는 뉴질랜드에서 출발하는 관광 또는 자국의 관광과 Ross Sea 지역 관광에만 한정된 내부적 문서로서 관광과 관련된 책임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자 하는가를 밝히고 있으며, 특히 Ross Sea지역의 국내 관광법체계를 서술하면서 남극지역과 자국 아남극 섬(sub-Antarctic Islands)에 대한 통합 접근합식을 택하고 있다. 이 문서는 뉴질랜드의 국내 환경영향평가절차를 기술하고 있으므로 자국이 제출한 참고문서158)와 직접 관계가 있다.

남극관광의 최근 추세를 도표로 제시한 영국의 참고문서159)에 제시된 선박에 의한 남극관광객 수의 증가와 관광객의 방문지 수의 증가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는데 IAATO는 참고문서160)에서 1995/96 기간의 관광에 관한 잠정데이터와 1996/1/96기간의 평가치를 비교하여 잠정수치에 의할 경우 차년도의 관광객 수가 다소 감소할 것을 예측했다.

관광의 관리 및 규제에 대해서 의정서와 동 부속서의 효과적인 이행과 국내입법을 통해 성취될 수 있다고 보았으나 반면에 당사국의 실효적 집행에 의하지 않고서는 남극관광의 규제가 완전히 달성될 수 없다는점이 인정되었다. 남극관광에서 문제되는 것은 남극에서 활동하는 많은 관광선박이 비당사국 국기를 게양하고 있으며 관광사업자들이 의정서 당사국 영역에 소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관광산업의 실효적인 자율규제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이를 위해 IAATO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하였다. (a) 회원들이 의정서 규정을 충분히 준수하도록 할것과, (b) ATCM

156) XX ATCM/INF 37.

157) XX ATCM/WP 1.

158) XX ATCM/INF 2.

159) XX ATCM/INF 15와 수정.

160) XX ATCM/INF 96.

권고문과 기타 관광 관련 지침을 보급하고, (c) 필요시 추가 지침과 행동강령을 작성하고, (d) 남극에서 활동하는 모든 관광회사들이 동 기구회원이 되도록 권장할 것 등이다.

또한 동 회의에서는 남극에서 활동하는 관광회사들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거나 책임을 지는 비협의당사국들에게 가능한 한 조속한 시기에 의정서와 동 부속서를 비준하고 종 준수 확보를 위해 필요한 국내입법을 시행하도록 요구하였다.

5. 의제 10 : 남극조약하의 사찰

우선 정치적·법률적 사항으로서 남극조약하의 사찰에 관한 것으로 칠레는 (a) 국제해양관련 협약의 집행과 (b) 자국 항구를 이용하여 남극을 운항하는 선박의 사찰에 관한 국내적 기준의 집행에 관한 문서¹⁶¹⁾를 제출하였으며, 브라질은 자국의 남극프로그램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용한 사찰 점검목록에 관한 문서¹⁶²⁾를 제출하였다.

해양오염방지와 관련하여 MARPOL 73/78과 의정서 제4부속서의 규정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항구국가에 의한 선박사찰에 관한 네델란드의 작업문서¹⁶³⁾를 검토하였다. 원칙적으로 항구국가에 의한 조화로운 사찰방식은 유용한 역할을 다할 것이라는 점을 배제하여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있었으나, 이 문제는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가 결부되어 있으므로 추가 논의는 모든 당사국이 심도있는 연구를 거친 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점에 합의하였다.

항구국가에 의한 사찰은 남극조약 제7조하의 사찰과 성격이 상이함으로 이 문제는 별도 의제로 토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제21차회의에서 다시 토의하기로 결정되었다.

남극조약하의 사찰문제에 있어 제2실무작업반에서 토의한 과학적·기술적 사항으로서 미국은 남극조약 제7조에 따라 1995년 2월 9일-3월 11일간 수행한 사찰에 관해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밝혔으며,¹⁶⁴⁾ 이 문서의 초안은 서울회의시 배포되었다.¹⁶⁵⁾ 제19차회의 이후 남극조약 제7조에 따른 사찰은 보고된 바 없으나, 노르웨이는

161) XX ATCM/WP 17.

162) XX ATCM/INF 87.

163) XX ATCM/WP 9.

164) XX ATCM/INF 129.

1996/97기간중(austral season) M/V Polar Queen의 사찰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태리는 19차 회의시의 제의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원격지 캠프에 대한 사찰 점검 목록에 관한 작업문서¹⁶⁶⁾를 제출하였다. Resolution 5(1995)는 상주기지, 폐기된 기지, 선박 및 폐기물 처리장 등 4개의 점검목록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또 원격지 캠프에 대하여는 그 정의를 내리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인식하여, 원격지 캠프에 대한 별도의 점검목록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그 문안은 Resolution 5(1995)에 따라 합의한 Checklist A에 첨부하여 원격지 캠프 및 관련 시설 사찰시 감시인에게 일반적 지침을 제공하도록 하자는 제안을 Resolution으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6. 의제 14 : 남극의 문화적·미학적 가치

칠레는 남극대륙의 상징적 가치를 강조하는 작업문서¹⁶⁷⁾를 제출한 바, 그 목적은 남극의 문화적·미학적 가치에 관한 관심을 결집하는 방법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한 결의안 초안을 포함하고 있다.

남극대륙의 특별한 가치는 청소년 교육과 예술가들의 활동을 통해 증진될 수 있다는 점이 일반적으로 인정되었으며, 당사국의 가능한 역할과 관련하여 일부 국가는 작가 및 예술가들의 남극방문을 적극 권장하기 위한 조치에 대한 지지를 나타내었다. 한편 문화적·미학적 가치에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 작가와 예술가들을 정부 탐험대에 포함시킬 것이 제안 되었으며 당사국들은 남극을 방문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남극의 미를 전달할 수 있는 예술적·문화적 표현형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ASOC은 감시, 배상책임과 환경영향평가와 같은 실제적인 문제 토의시 본질적, 미학적, 자연적 가치와 같은 요소가 지나치게 복잡하게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추후 이 의제 토의가 의정서(제3조1항과 제1부속서 제3조)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가치들을 다루는 방법에 대한 이해제고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였다.

165) XIX ATCM/INF 96.

166) XX ATCM/WP 6.

167) XX ATCM/WP 23.

제 2 절 주요국의 동향

1. 미국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의 이행에 대한 미국의 법률안이 1996년 6월 10에 하원을 통과하였다. 이 법률안은 1996년 남극환경보호법안(Antarctic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of 1996)으로서 크게 크게 3개의 표제로 분류되어 있는데, 첫째는 1978년 남극보존법의 개정¹⁶⁸⁾, 둘째는 1990년 남극보호법의 개정¹⁶⁹⁾과 셋째로 선박기인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법률의 개정¹⁷⁰⁾으로 나누어진다.

(1) 1996년 개정 남극보존법(1978년)

1978년 남극보존법의 개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제101조의 입법취지와 목적, 제102의 용어의 정의, 제103의 금지행위, 제104의 환경영향평가, 제105조의 허가, 제106조의 규제, 제107조의 유보규정이 있다.

1978년 남극보존법 제2조의¹⁷¹⁾ 입법취지는 '남극조약과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 의정서는 남극환경의 포괄적인 보호와 국제협력의 지속, 남극에서의 과학적 조사의 자유를 위해 설립되었음'을 밝히고, 이 법률의 목적은 '미국에 대해 환경보호를 위한 남극조약 의정서를 이행하기 위한 입법 권한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개정하였다. 그리고 1978년 남극보존법 제3조¹⁷²⁾의 용어의 정의에서는 관리자(Administrator), 남극(Antarctica), 남극특별보호구역(Antarctic Specially Protected Area) 등의 개념을 재정의하였다.

동 법에서의 금지행위는, 남극육지, 빙붕 또는 해양에서의 금지된 행위, 금지된 쓰레기의 처리, 임의적인 쓰레기의 소각, 해양오염방지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선박으로 승객을 운송하는 행위, 남극환경보호와 관련하여 남극탐사의 인원 및 그 행동요령을 고지하지 않는 경우, 역사적 유물 및 기념물의 훼손·제거 및 파괴행위, 남극활동시에

168) Amendments to the Antarctic Conservation Act of 1978.

169) Amendments to Antarctic Protection Act of 1990.

170) Amendments to the Act to Prevent Pollution from Ships.

171) 16 U. S. C. 2401.

172) 16 U. S. C. 2402.

권한있는 기관의 허가를 거부하는 행위, 남극활동시에 권한있는 기관에 대해 고의로 방해·거부·저항하는 등의 행위, 적법한 체포·구금에 대하여 저항하는 행위, 위법행위자에 대한 적법한 체포·구금을 방해·저지하는 행위, 동법상의 허가기간, 제한사유 및 규제사항을 어기는 행위, 허가없이 금지된 활동을 하는 것 등이다.¹⁷³⁾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것은 1969년의 국가환경정책법을 적용하며, 동법은 남극에서의 연방정부기관의 활동에 적용된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상세한 것은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상의 제규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¹⁷⁴⁾

남극특별보호구역에 대한 출입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허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허가받지 않은 경우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된다.¹⁷⁵⁾

감독관은 특정 조류, 포유류 및 식물을 토착종으로 지정하여 그 보호에 관한 규제를 할 수 있다. 그외에도 감독관은 환경보호에 관한 규제를 할 수 있다.¹⁷⁶⁾

동법 이전에 제정, 공포된 것으로 동법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은 본법 제6조상에 의하여 폐지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¹⁷⁷⁾

(2) 1996년 개정 남극보호법(1990년)

남극광물자원활동은 남극조약당사국들사이에서 합의되고, 그것이 입법화되는 경우에 남극광물자원활동은 무기한 금지된다.¹⁷⁸⁾

남극지역은 남위 60도 이남의 지역을 말하며, 의정서 부속서 IV는 남극에 있는 미국의 관할권내에 있는 남극상의 모든 선박에 적용된다. 또한, 1990년법상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규정에서 'MARPOL협약'이라는 용어는 '의정서 부속서 IV'로 수정하였다.¹⁷⁹⁾

(3) 1993년 남극환경보호의정서의 이행에 관한 법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는 남극을 자연상태로, 평화 및 과학활동을 하는

173) § 103.

174) § 104.

175) § 105.

176) § 106.

177) § 107.

178) § 202.

179) § 301.

체제의 수립에 필요한 법적 의무와 국제적 체제를 창설하는 것이다.

동 의정서는 미국의 환경적 및 자원적 관리의 이익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며, 동시에 남극에서의 과학적 탐사의 자유를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이 오랜동안 주장하여 온 평화적인 국제협력지역으로서의 남극에 대한 법적 및 정치적 체제를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전 지구적 차원의 환경문제에 필수적인 남극의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을 내용으로 하는 동 의정서하의 의무사항을 충족하는 포괄적인 조치를 가진 새로운 법적 조치들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동법의 목적은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상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¹⁸⁰⁾

환경보호위원회의 대표는 국무성이 임명하고, 국무성은 3인의 중재재판관을 임명하며, 국무성이 동 의정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해 감시관을 임명한다.¹⁸¹⁾

남극에서 금지되는 불법활동으로는, 의정서에 합치하지 않는 방법으로 남극에서 행하는 과학조사활동, 탐사활동, 보급활동, 남극광물자원활동에 보급을 포함한 자금 또는 여타의 지원행위, 기타 금지행위,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허가없는 활동, 동법의 위반행위, 허가기간이나 규제사항의 위반행위 및 기타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허가를 부인하는 행위 등이다.¹⁸²⁾

2. 노르웨이

노르웨이는 1995년 5월 5일에 ‘남극에서의 환경보호에 관련한 규칙(Regulations Relating to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 Antarctica)’을 제정하였는데, 동규칙은 모두 8개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장에서는 목적과 범위를 규정한 것으로, 동법이 남위 60도 지역과, 노르웨이의 영유권지역, 국민, 선박, 항공기 및 노르웨이 탐험대에 소속된 외국인에게 적용되며,¹⁸³⁾ 노르웨이 국적을 가지지 않은 경우나, Queen Maud Land나 Peter I's

180) § 2.

181) § 4.

182) § 5.

183) § 2.

Island 밖에서 행해진 행위의 경우에는 외무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동규칙의 적용을 받는다.¹⁸⁴⁾

제2장은 일반규정으로서, 남극에서의 활동은 생태계, 기후, 대기, 수질, 빙하나 해양환경 및 동식물중, 생물학적, 과학적, 역사적 가치 등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수행되어야 하며,¹⁸⁵⁾ 과학적 연구활동외의 광물자원활동은 금지되며, 무엇이 과학적 연구활동인지는 노르웨이 극지연구소가 이를 판단하도록 하였다.¹⁸⁶⁾ ATCP나 ATCM에서 임명된 사찰관은 남극조약하에 사찰이 허용된 기지, 설비나 장비,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사찰을 행한다.¹⁸⁷⁾ 남극활동수행에 관한 책임자는 그러한 남극활동, 동법하의 허가활동에 대하여 보고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노르웨이 극지연구소가 보다 상세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¹⁸⁸⁾

제3장은 활동의 통지와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것인데, 남극에서의 과학연구계획, 관광 및 기타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계획에 관하여 노르웨이 극지연구소에 통지하여야 하고,¹⁸⁹⁾ 포괄적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극에서 계획 활동을 수행할 때에 초기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¹⁹⁰⁾ 초기환경영향평거나 노르웨이 극지연구소가 남극활동이 환경에 대하여 사소하거나 일시적 영향의 것 이상으로 나타난 때에는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하여야 한다.¹⁹¹⁾ 남극활동이 동규칙에 반하여 남극환경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것인 때에는 노르웨이 극지연구소가 동 활동의 변경, 연기 및 금지를 명할 수 있다.¹⁹²⁾ 남극활동에 대한 책임자는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정기적이고 효과적인 환경감시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노르웨이 극지연구소에 통지하여야 한다.¹⁹³⁾

제4장에서는 토착 동식물군에 대한 해로운 활동은 금지되며, 노르웨이 극지연구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¹⁹⁴⁾ 동식물 및 미생물의 남극에로의 반입에 대하여는 노르웨

184) § 3.

185) § 4.

186) § 5.

187) § 6.

188) § 8.

189) § 9.

190) § 10.

191) § 11.

192) § 12.

193) § 13.

이 극지연구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95)

제5장은 오염물과 폐기물 관리에 관한 것인 바, 남극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은 금지되나, 그것이 환경적으로 유해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각처리가 가능하다. 동 소각에 대하여는 노르웨이 극지연구소가 보다 상세한 규칙을 제정한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르웨이 극지연구소가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196) 환경적으로 유해한 물질 및 생성물의 방출은 금지되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노르웨이 극지연구소가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197) 소각쓰레기나 다른 쓰레기들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나중에 남극에서 제거되어야 한다.198) 현재나 과거의 쓰레기 처분시설 및 작업 시설은 청소되어야 하며, 노르웨이 극지연구소가 활동책임자에게 일정한 기간내에 동 청소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활동책임자가 청소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르웨이 극지연구소가 청소를 하고 그 비용을 활동책임자에게 청구한다.199) 쓰레기의 관리 및 제한에 대하여 노르웨이 극지연구소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기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200)

제6장은 선박에 의한 오염에 관한 것인 바, 10인용 이상의 선박은 연안이나 빙봉에서 12해리 이내에서의 하수배출이 금지된다. 동 거리밖에서 배출할 때에도 적어도 4노트 이상의 속도로 서서히 배출하여야 한다. 노르웨이 극지연구소는 하수처리 기록부를 비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201) 노르웨이 극지연구소는 선박에 대한 긴급계획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며, 선박에 대해 이를 강제할 수 있다.202)

제7장에서는 특별보호구역과 특별관리구역을 규정하고 있는 바, 환경적, 과학적, 역사적, 미학적, 야생적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며, 동 구역에 대한 출입에 대하여 노르웨이 극지연구소의 허가를 요한다. 허가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동 허가서의 부분을 소지하여야 한다.203)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

194) § 14.

195) § 15.

196) § 17.

197) § 18.

198) § 19.

199) § 20.

200) § 21.

201) § 23.

202) § 24.

203) § 25.

여또는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동 구역의 출입에 관한 사항은 노르웨이 극지연구소가 국제규범에 좇아 설정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²⁰⁴⁾ 국제규범에 좇아 설정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역사적 장소 및 기념물은 훼손, 제거 및 파괴되어서는 안된다.²⁰⁵⁾

제8장은 특별규정으로,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것이 동규칙의 목적과 양립할 수 있는 것인 때에는 노르웨이 극지연구소가 면제를 부여할 수 있다.²⁰⁶⁾ 노르웨이 극지연구소나 권한있는 당국은 동법의 이행을 감독한다. 감독권자는 동규칙의 적용지역에 대한 출입, 여행 및 모든 설비에 대한 접근권이 보장된다.²⁰⁷⁾ 노르웨이 극지연구소가 행한 결정에 대하여는 환경부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²⁰⁸⁾ 남극활동 책임자는 그러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구조활동이나 환자이송과 관련하여 지출되는 금액에 대한 보험이나 행정당국에 대한 공탁을 하여야 한다.²⁰⁹⁾ 동법의 금지규정 위반이나 허가위반에 대하여는 재산형이나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²¹⁰⁾ 동법은 즉시 효력을 발하며, 환경부는 동법을 개정할 수 있다.²¹¹⁾

3. 호주

(1) 1993년 남극환경보호에 있어서 쓰레기 관리에 관한 법

본 법의 목적은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의 부속서Ⅲ상의 의무이행을 위해, 동 부속서가 규정하지 않는 남극활동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의 관리를 규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²¹²⁾

쓰레기의 최소화 및 관리계획의 실행을 위하여, 남극에서의 활동은 쓰레기 양의 최소화, 재활용, 안전저장, 제거 및 폐기 등에 관한 계획을 수행하고 협력하는 것이어야 한다. 특히 폴리비닐제품의 사용은 회피하여야 한다.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그 각

204) § 26.

205) § 27.

206) § 28.

207) § 29.

208) § 30.

209) § 31.

210) § 32.

211) § 33.

212) § 2.

단계에 있어서 쓰레기의 양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213)

제2절은 쓰레기의 저장에 관한 것으로, 남극에서 쓰레기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각 단계마다 쓰레기의 제거 또는 처리전에 환경적 처리를 고려하여야 한다.214)

제3절은 쓰레기의 제거에 관한 것으로, 실행가능한 다음과 같은 쓰레기는 남극으로부터 제거되어야 한다. 방사성 물질, 전기배터리, 고체 및 액체 연료, 해로운 수준의 중금속물질, 특히 독성이 강한 혼합물, 해로운 지속 혼합물 등이 포함된 쓰레기, 소각시에 해로운 물질을 방출하는 폴리비닐 등, 저준위 폴리에틸렌을 제외한 플라스틱 쓰레기, 소각시에 발생하는 고체 찌꺼기 등.215) 그리고 반입된 동물의 시체 쓰레기, 미생물 또는 식물의 병원체, 반입된 조류의 생산품 등은 실행가능한 제거, 철거, 소각되어야 한다.216) 제거된 쓰레기는 남극활동이 계획된 국가, 쓰레기의 형태에 따라 국제규범에 합당하도록 그 처리설비가 된 국가에서 처리되어야 한다.217) 야외캠프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그 활동상의 기지나 선박으로 제거되어야 하며, 기타 쓰레기는 환경보호의정서의 부속서Ⅲ상의 처리규정에 따라야 한다.218)

제4절은 소각처리에 관한 것으로, 남극활동이 본법에 반하여 남극환경이나 생태계에 영향을 주는 것인 때에는 호주 극지연구소가 동 활동의 변경, 연기 및 금지를 명할 수 있다.219) 제거, 재활용되지 않는 쓰레기의 처리는 해로운 방출물을 최소화하도록, 소각기준, 설비, 방법 등은 SCAR의 권고기준 등에 합당하여야 한다.

제5절은 육상에서의 쓰레기처리의 제한에 관한 것으로, 유빙지역이나 청정해역으로의 쓰레기 처리는 금지된다.220) 빙하에서의 처리가 허용되는 경우는 내륙에 위치한 기지나 야외캠프에서 발생하거나, 제3절하에 제거, 살균 및 소각될 것이 요구되지 않는 경우, 연소되지 않는 경우의 쓰레기인 경우에는 얼음구덩이에 묻어서 처리할 수 있다.221)

제6절은 해양으로의 오물하수 및 생활액체하수의 처리에 관한 것으로, 해양으로의

213) § 4.

214) § 5.

215) § 6.

216) § 9.

217) § 10.

218) § 11.

219) § 12.

220) § 14.

221) § 16.

오물하수 및 생활액체하수의 처리가 가능한 경우는 평균 30인 이하의 인원이 상주하는 기지에서 발생하는 오물하수나 액체하수는 그 찌꺼기를 잘게 부수어서 처리한다.²²²⁾ 생물학적 재활용과정을 거친 오물하수 부산물은 그것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동법에서 허용되는 기준인 경우에는 처리가 가능하다.²²³⁾

제7절은 청소에 관한 것으로, 쓰레기 처리장소 및 폐작업장소의 사용자는 이를 청소하여야 한다.²²⁴⁾

제3장이하는 쓰레기관리상의 예외에 관한 것으로, 긴급사태의 경우, 생명이나 심각한 위험으로부터의 구조, 선박, 항공기 및 고가의 장비나 설비의 구조 등의 긴급한 경우에는 제2장상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²²⁵⁾ 동 긴급사태에 의한 위반의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환경부나 권한있는 당국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²²⁶⁾

(2) 1993년 남극환경보호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법

동법 제3장은 초기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것으로, 초기환경영향평가는, 활동의 목적, 장소, 기간, 강도, 선택가능한 활동에 대한 기술, 활동에 의한 가능한 결과에 대한 기술, 가능한 환경적 위험에 대한 기술, 활동이 없는 경우의 환경변화에 대한 예측,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²²⁷⁾ 환경부장관이 초기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²²⁸⁾

제4장은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것으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초안은, 활동의 목적, 장소, 기간, 강도, 선택가능한 활동에 대한 기술, 활동에 의한 가능한 결과에 대한 기술, 가능한 환경적 위험에 대한 기술, 활동이 없는 경우의 환경변화에 대한 예측,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간접적인 영향에 대한 평가, 모니터링계획 및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²²⁹⁾ 환경부

222) § 17.

223) § 18.

224) § 19.

225) § 20.

226) § 21.

227) § 6

228) § 7.

229) § 8.

장관은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실행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마드리드 의정서 당사국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²³⁰⁾ 환경부장관은 활동책임자 또는 마드리드 의정서 당사국들에게서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²³¹⁾

한편, 최종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에는 제8조상의 포괄적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기술된 정보나 환경부장관이 최종 포괄적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회답을 한 경우에는 그 사본이나 요약문을 포함하여야 한다. ²³²⁾ 환경부장관은 최종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통지받은 경우에 그러한 활동을 허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실행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환경보호의정서상의 당사국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²³³⁾ 환경부장관은 환경보호의정서상의 당사국들에게서 최종의 포괄적 환경영향평가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²³⁴⁾

허가활동의 개시는 동 허가가 관보에 게재된지 60일 이후에 개시되어야 한다.²³⁵⁾ 허가사항의 변경에 대한 통지는 관련 당사자에게 직접, 또는 라디오, 전화 및 다른 통신수단으로, 또는 관보에 공고함으로써 허가사항의 변경을 통지한다.²³⁶⁾

4. 영국

1994년 남극법(Antarctic Act 1994)은 남극지역의 출입의 제한 및 금지, 광물자원활동의 금지, 토착 동식물의 보호 등을 규정하고 있는 바, 상업적 어로나 남극해양상의 여행 이외에는 남극의 탐사는 허가없이 행할 수 없으며,²³⁷⁾ 또한 허가없이 남극기지에서 활동할 수 없다.²³⁸⁾ 본국이나 다른 체약당사국의 허가없이 항공기나 선박은 남극지역에 출입할 수 없다.²³⁹⁾허가된 이외의 광물자원의 시추, 준설 및 발굴이나 광

230) § 9.

231) § 10.

232) § 12.

233) § 13.

234) § 14.

235) § 15.

236) § 16.

237) § 3.

238) § 4.

239) § 5.

물자원의 표품수집 등은 금지된다.²⁴⁰⁾

토착 포유류나 조류를 고의적으로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포획하거나, 그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토착조류나 토착포유류의 집단서식지를 임의로 오가는 것,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로 토착조류나 토착포유류의 집단서식지를 오가는 것, 폭발성 무기류의 사용, 토착식물류의 제거 및 손상 등은 금지되며,²⁴¹⁾ 허가없이 비토착 동식물의 남극반입은 금지된다.²⁴²⁾

영국이나 다른 체약당사국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극 제한구역의 출입은 금지되며,²⁴³⁾ 어떠한 남극의 역사적 장소 및 기념물의 훼손, 파괴 및 제거도 금지된다.²⁴⁴⁾ 영국이나 다른 체약당사국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극 보호구역의 출입은 금지되며,²⁴⁵⁾ 남극활동에 대한 허가는 국무성에서 행한다.²⁴⁶⁾

240) § 6.

241) § 7.

242) § 8.

243) § 9.

244) § 10.

245) § 11.

246) § 12.

제 5 장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체제에 대한 대응전략

제 1 절 남극과학연구진흥의 필요성

남극과학연구라 함은 남극대륙 및 해양의 자원 및 생태계, 자연환경에 대한 정보 및 자료수집과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방안연구와 이들을 지원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남극에 대한 적극적인 진출이 필요한 이유는, 남극의 잠재적인 자원의 가치, 남극의 과학적 중요성 및 남극환경의 지구적 민감성 때문이며, 그밖에도 남극과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여 남극과학연구를 보다 효율적으로 육성, 발전시킴으로써 국가과학기술수준의 향상과 남극연구에 대한 국제협력의 증진을 도모하여 인류공영에 이바지하는데에 있다.

그러므로 남극과학연구진흥의 필요성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는 남극의 자원적 가치 때문이다.

자원에 관하여 볼 때, 남극은 대륙 그 자체 뿐만 아니라 그 주변해역 및 대륙붕에 풍부한 생물 및 광물자원이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제까지 알려진 남극의 부존자원은 대체로 크릴로 대표되는 남빙양 수산자원, 석유 및 천연가스, 금속광물, 수자원으로 이용가능한 빙산, 관광 그리고 비상식물 저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것 등 다양한 용도를 포함한다.

광물자원은 곤드와나랜드이론에 의한 정황적 증거와 각국의 부분적 관측탐사에 따라 9백여종의 광물이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중 구리, 철광석, 코발트 등 20여종이 상업적으로 개발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중 특히 석유는 450억 배럴, 천연가스는 1백조 입방피트 이상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둘째는 남극의 과학적 중요성이다.

과학적인 측면에서 볼 때, 남극은 지리적 원거리성과 특이한 자연환경으로 인하여 대기과학, 지구물리, 지질, 해양학 등 모든 관측과학분야의 신선한 연구대상이자 과학실험장 구실을 하고 있다.

남극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태양과 지구의 상호작용을 뚜렷이 관찰할 수 있으며 만년빙으로 축적된 남극의 빙상은 지구의 생성 및 변화와 관련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있다. 따라서 많은 과학자들에 의해 남극은 지구변화의 신비를 알려줄 수 있는 ‘냉동된 타임 캡슐’로 지칭되며 대륙 그 자체가 거대한 과학실험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남극의 환경적 민감성이다.

지구상의 자연환경은 생태계라는 한 기본단위로 구성되어 있다. 즉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상호간의 연계성을 이루고 있으며, 하나의 생물학적 일체성을 이루고 있으며, 그 생물이 생존하는 환경과의 불가분의 연계성 속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자연은 인간이 생존하는 기초이며, 자연환경이 적절하게 보존되고 이것을 조화있게 이용하면 사람은 건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면에서, 남극은 크릴새우 어획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거의 손상되지 않은 채 유지되어 왔다. 남극의 생태계는 다른 지역의 생태계보다도 환경파괴에 대한 적응이나 저항의 가능성이 극히 적은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대륙의 지리적 격리는 자연적 및 인위적 주요 공해원으로부터 중대한 영향을 받지 않게 하였으며, 이 때문에 남극환경은 가장 공해를 받기 쉬운 곳으로 간주되고 있다. 그러므로, 남극자원에 대한 탐사, 개발 및 인간의 활동에 의한 환경파괴가 남극지역의 환경에 심각한 위협을 야기하고 나아가 전체 지구의 환경 내지 생태계에 파급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다. 왜냐하면, 핵전쟁에 의한 지구파괴라는 “급성의 위기”와 환경파괴 및 자원의 고갈에 의하여 서서히 지구의 생명들이 위협받는 “만성의 위기”에 직면한 오늘의 지구에 있어서 남극대륙 또한 그 위기의식의 대상으로부터 제외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제 2 절 남극과학연구기본계획의 수립

위와 같은 남극의 자원적, 과학적, 환경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남극연구의 진흥은 남극지역이 미개척자원의 보고인 동시에 극한기후를 이용한 첨단과학의 실험장이며, 지구환경연구에 필요한 최적의 장소이며, 최소한의 재원으로 최대한의 연구성과를 올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임을 인식하여, 국가적 차원에서 계획되고 지원, 육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남극과학연구기본계획에 포함될 내용으로는, 종합적인 남극연구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연차별 연구계획 및 그러한 계획들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주체에 관한 사항들이다. 또한, 남극연구를 위한 연구기관의 육성, 남극으로부터 반출, 반입되는 표품에 대한 조세감면, 남극연구에 대한 지원 및 육성, 남극활동의 국가적 관리, 남극활동에 대한 규제, 권한있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등에 대한 내용이 필요하다.

그리고, 남극조약체제가 해양, 환경보호, 생물자원보존 및 손해배상책임문제 등의 분야에서도 국제법의 주요 현안이 폭넓게 논의되고 있으며, 남극문제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남극문제를 담당할 국내 전문인력의 양성방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 3 절 남극과학연구지원체제 강화

우리의 남극활동은 1986년 11월 28일 남극조약에 33번째 서명국으로서 가입한 것을 계기로 시작되었으며, 1988년 2월 남극반도 북단에 위치한 킹 조오지 섬에 상주과학기지인 세종과학기지를 완공함으로써 본격적 궤도에 진입하였다.

특히 1989년 10월 남극조약체제에서 각국의 남극활동 관련사항을 배타적으로 심의, 결정하는 권한을 가진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의 지위를 획득하고, 1990년 7월에는 국제남극과학위원회 정회원 자격을 취득함으로써 남극과학연구 및 남극자원 및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발언권을 인정받았다.

이 같은 국제적 지위의 향상을 바탕으로 향후 남극연구를 주도하고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의 일원으로서의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내적인 입법을 통하여 남극연구를 진흥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우리나라의 남극활동체제를 체계화하여야 하며, 이미 설치된 남극의 세종과학기지 및 향후 설치가 예상되는 남극대륙에서의 과학기지에 대한 법적, 제도적 조치가 필요하다.

추후 남극조약체제에 있어서 환경문제의 중요성은 급격히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지구적 환경변화연구에 남극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여겨지는 바, 우리의 남극연구도 이러한 국제적인 연구계획에 적극 참여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환경문제와 결부되어 SCAR의 역할이 증대될 것인 바, 실무그룹에 대한 참여 확대 등을 통한 적극적인 남극연구활동이 요망된다.

제 4 절 남극조약체제상 국가의무의 이행

남극조약체제는 관련조약 및 의정서를 사안별로 채택하여 각국의 남극활동을 규제하고 있으며, 동 조약 또는 의정서는 당사국들에게 사전통고의무, 연차보고서 제출의무, 사찰수용의무, 환경감시 및 평가의무 등을 부과하고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바, 우리나라는 이와 같은 국가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남극활동을 조정하고, 지도, 감독하기 위한 국내적인 제도적 조치의 수립이 절실히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남극과학연구활동이나 그 밖의 부수적인 활동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제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확보하여야 한다.

남극의 환경문제를 보더라도, 남극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과제는 남극조약체제내의 모든 법적 제도 및 기구를 통합·조정하고 그 제도·기구에 의하여 제정된 기준들을 지속적으로 적용시켜 나가는 것이다.

남극조약협약당사국이 지향하는 남극환경보존은 1991년 마드리드에서 채택된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에 의해 실천되고 있으며, 동 의정서에는 환경영향평가, 특별보호구역 설정, 남극환경훼손에 대한 배상책임 도입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동 의정서가 채택됨으로써 남극에서의 광물자원 개발은 일단 50년간 전면 동결되었다.

동 의정서상에서는 당사국은 의정서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그 권한 내에서 법률, 규칙, 행정행위, 이행조치들을 채택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각 당사국은 의정서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국내적으로 법률, 규칙, 행정조치, 집행조치 등을 채택하고 이를 모든 당사국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당사국은 의정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유엔헌장과 일치하는 적절한 노력을 행할 것, 당사국은 위의 조치들을 다른 모든 당사국에게 통보할 것, 당사국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이 의정서의 목적 및 원칙의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모든 행위에 다른 모든 당사국이 관심을 갖도록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²⁴⁷⁾

또한, 각 당사국은 남극조약협약당사국 및 남극조약협회의회가 지명한 감시인이 남극조약 제7조 3항에 따라 사찰에 개방되는 기지, 시설, 장비, 선박, 항공기의 모든

247) 동 의정서 제13조.

부분에 대하여 사찰함에 협력하여야 하고, 이 의정서에 따라 작성하여 보존되어야 하는 모든 기록도 사찰의 대상이 된다.²⁴⁸⁾

남극환경보호체제는 남극에서의 과도한 인간활동으로 남극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고 남극의 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하여 국제적인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바, 이와 같은 국제적 움직임을 국내법적으로 수용하여 남극환경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 우리나라의 남극환경보호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고 국제적 관심사인 남극환경보호를 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된다.

248) 각 당사국은 남극조약협약당사국 및 남극조약협약회의에서 지명한 옵서버가 수행하는 사찰에 협력하여야 하며, 이 의정서에 따라 작성, 유지되어야 하는 모든 기록 뿐만 아니라 남극조약 제7조 3항에 따라 검사에 개방되는 기지, 시설, 장비, 선박, 항공기의 모든 부분에 대한 사찰에 응해야 한다.

제 5 절 남극활동에 대한 국제협력 증진

남극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으며, 이들은 먹고 먹히는 연쇄적인 먹이사슬에 의하여 복잡하게 얽혀 있다. 또 남극생태계는 여러가지 물리적, 화학적 환경요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며, 생물간 혹은 주변환경과 생물간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더구나 자연상태에서는 수많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들 조건이 시공간적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자연생태계를 파악하고 이를 완벽하게 이해한다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알고있는 사실을 토대로 생태계의 구성원들의 동태를 수식을 이용하여 기술하게 되는데 이를 모델링이라고 한다. 일단 생태계 전체에 대한 수식화가 이루어지면, 이를 토대로 생태계의 동태에 관한 가설들을 검증한 뒤 여러 가지 조건들을 변화시켜 이에 대해 생태계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남극환경보전을 위해서는 ①실태파악을 위한 관측기술, ②상시적인 모니터링기술, ③오염의 해명을 위한 조사기술, ④ 환경영향평가기술, ⑤육상기인오염의 소멸기술, ⑥해양투기방지에 관한 기술, ⑦해안오염의 처리기술, ⑧수질정화를 위한 배출, 순환기술의 개발과 환경회복을 위한 기술 등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남극환경보전에 관한 과학적인 기초조사 및 연구에 있어서 환경오염은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연속적인 조사연구와 이용실태에 대한 조사가 정례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와 아울러 다음과 같은 연구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 i) 남극생태계의 상호영향연구
- ii) 해저의 이동, 형성을 구명하기 위한 지구과학적 조사, 해저지형, 해저지질 및 해저지진에 관한 조사연구
- iii) 해수자원의 이용을 위한 해수의 화학적 성분, 분포조사 및 해수활용기술의 연구
- iv) 생태계 상호간 기초생산력의 조사
- v) 남극과학조사활동에 필요한 구조물의 설치, 유지 및 관리를 위한 조사

이러한 의미에서 남극광물자원 활동제협약이 종래의 남극조약체제의 구조적 모순인 폐쇄성과 배타성을 어느 정도 지양하고 개방체제를 지향하면서 개발보다 환경보호

에 우선적인 배려를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남극조약체제의 틀을 탈피하지 못함으로써 남극국제화의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여 국제공역화를 토대로 하는 국제체도로 발전하지 못한 것은 심히 아쉬운 국제정치상의 역학관계의 반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국제법 질서에 입각한 보다 보편적인 개방체제로의 발전이 미래의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CCAMLR)이나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 정서의 이행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가 필요한데, CCAMLR에 의한 남극해양체계와 생물자원의 생물학적 조사계획(BIOMASS)이나 CCAMLR 과학위원회의 협력 등은 모두가 문제를 위한 조치였지만, 추가적인 자료 수집·분석을 위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 정서에서도 자료의 수집, 배포, 정보의 교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²⁴⁹⁾ 특히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각종 권고들에도 정보의 수집, 교환에 관한 국제적 협력을 역설하고 있다.

환경보존은 어느 한 국가의 노력만으로는 성과를 거둘 수 없고 지역전체, 세계전체가 공동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남극환경을 보존하려면 법규제정에 있어서나 제정된 법규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국제협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국제협력을 통일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하여, 상설사무국의 설치까지는 도달하지 못하였으나,²⁵⁰⁾ 권고문의 내용 및 의무사항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 기존의 권고문을 재검토하여, 내용이 중복되거나 다른 협약이나 새로이 채택된 환경보호의 정서에 따른 효력을 상실하는 권고문의 내용을 정리, 재분류하여, 권고문의 체계를 통일하기로 하였다.²⁵¹⁾

이러한 과학조사나 정보의 교환에 관한 국제적 협력은 각종의 남극조약체제내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데, 남극조약에서는 지구관측년 동안에 적용된 바와 같이 과학조사의 자유 및 이러한 목적으로의 협력이 본 조약의 규정에 따라 계속되어야 하며,²⁵²⁾ 남극에서의 과학조사의 국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남극의 과학조사에 관한 정보의

249) 동 의정서 제6, 15조.

250) 미국, 영국 등은 조약당사국수의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회의준비 및 체계적인 문서 및 자료의 관리, 배포 등의 수행을 위한 독립적인 상설사무국의 설치를 주장하였으나, 아르헨티나 등은 이러한 사무국은 영토적 권리에 배치되는 것이라 하여 반대하였다. 외무부, 제14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 참가보고서, 1987년 11월, p.7 참조.

251) 외무부, 제16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 참가보고서, 1991년 11월, pp.13-14.

252) 동 조약 제2조.

교환, 과학자의 교류, 남극과학조사결과의 교환 및 자유로운 이동이 되어야 하고²⁵³⁾, 유엔의 전문기구와 기타 남극에 과학적, 기술적 관심을 갖고 있는 국제기구와의 협조적인 업무관계를 수립하는데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⁵⁴⁾

또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에서는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하여는 남극 조약의 제규정에 대한 적절한 고려와 남극수역에서 조사 및 어획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제협력이 요청됨을 인식하고,²⁵⁵⁾ 위원회의 회원국은 위원회와 과학위원회가 각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계적, 생물학적 기타 자료와 정보를 가능한 매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⁵⁶⁾ 또한, 당사국은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유엔의 전문기구 및 정부간 국제기구와 협조적인 업무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²⁵⁷⁾

한편, 남극과학위원회는 남극 해양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나아가 잠재 생물자원의 관리를 올바르게 하기 위해 범국가적인 조사기구를 설립하여, BIOMASS라는 계획을 1976년에 시작하여 총 11개국이 참가하여 3차에 걸친 국제 공동연구를 남극에서 수행하게 하였다.

국제협력에 대한 다른 이유는 환경을 보장하고 개선하기 위한 기법에 관한 연구를 용이하게 하고 강화하려는 것이다. 국제적 연구는 관찰될 수 있으며, 비교를 용이하게 해주는 수많은 사례를 증가시킨다. 이러한 연구노력은 총비용을 감축시키고 분석을 위한 보다 광범한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는 일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과학기술 전문인력과 경제적 부의 불공평한 세계적 분포를 전제로 할 때, 일부의 국가들은 단순히 외부의 원조없이 그들의 환경문제를 다룰 수 없는 것이다.²⁵⁸⁾ 즉, 어느 한 국가가 자국관할수역에 대해 적절한 관리조치를 취한다 해도 다른 국가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무계획적인 어획을 감행하거나, 의도적으로 자국에 유리한 조치만을 취한다면 자원관리는 무의미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종국에 가서는 분쟁으로까지도 발전할 소지가 있게 된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유엔해

253) 동 조약 제3조 1항.

254) 동 조약 제3조 2항.

255) 동 협약 전문.

256) 동 협약 제20조.

257) 동 협약 제23조.

258) 신현덕,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국제법학회논총, 제34권 제1호, 1989년 6월, p.181.

양법 협약 제123조에는 폐쇄해나 반폐쇄해에 접해 있는 국가들은 협약에 따른 권리행사와 의무수행에 있어 상호협력해야 할 것과, 구체적으로는 해양생물자원의 관리, 보존, 탐사 및 개발에 대한 공동수행을 위하여 국가간에 직접으로나, 혹은 해당 지역기구를 통하여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남극환경은 인위적인 국경으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통일된 생태학적 단일체이므로 그 훼손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노력도 전체적으로 통합된 것이어야 하겠으나 분권적인 구조를 갖는 국제법의 본질적 속성에서 오는 제한 때문에 국가단위 및 지역단위의 제한된 형태의 공동노력만이 시도되고 있을 뿐이다.²⁵⁹⁾

다른 한편, 환경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여러 측면, 즉 생태학, 공학, 환경과학, 의학, 물리학, 지리학, 사회학, 경제학, 법학 등 제학문분야로부터의 접근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적잖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환경문제는 워낙 복잡·다양하게 뒤얽혀져 그 성격은 사회적·과학적·기술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동시에 경제적·정치적·법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그 해결을 위하여는 제학문분야로부터의 접근은 물론, 이들간의 학제적인 접근이 필연적으로 요청되고 있다.

그러므로, 연구분야가 남극연구의 국제적 동향에 부합되도록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다른 국제 과학기구들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여러 세부의 연구분야를 우리가 모두 수행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비효율적이며, 우리의 상황에서 수행가능한 분야를 국제적인 동향에 맞도록 집중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남극의 특성상 많은 자금, 인력, 장비 등이 필요한 바, 특히 공동연구가 강조되는 특별보호구역의 관리, 환경평가와 감시, 환경교육 및 훈련 등의 환경과 관련된 프로그램의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남극은 특히 자기 탐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역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자료들의 질도 차이가 많이 난다는 사실과 이에 대한 자료의 기반 구축과 지질에 대한 지도 작성들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들은 남극대륙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공동연구를 위한 자료이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현재와 장래의 탐사자료에 대한 국제간 협력이 필요하다. 특히 남극주변 해역의 퇴적층, 빙상하부의 암석을 채취하는데에 기술적, 재정적 어려움이 많으므로 이에 대한 공동연구가 필요하다.

259) 김영구,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현대해양국제법규범의 기본적 구조에 관한 고찰", 전환기의 국제관계법, 동석김찬규박사화갑기념논문집(서울 : 법문사, 1992), p.283.

제 6 장

결 론

남극은 전략적·과학적 가치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원의 보고로서 그 잠재적인 경제적 가치가 크게 중시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1986년 남극조약에 가입한 이후, 1988년 남극 킹 조오지섬에 420평 규모의 세종과학기지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과학조사·관측 활동을 개시함으로써 1989년 남극협의당사국의 지위를 정식 취득하였다. 또한, 1995년 5월에는 서울에서 제19차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를 개최할 정도로 남극조약체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

1959년에 채택된 남극조약을 중심으로 하는 기존의 남극조약체제는 1991년의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에 의하여 새로운 국제질서형성의 전기를 맞이 하고 있는 바, 신남극조약체제는 남극의 환경보전과 지구환경의 연계성을 기초로 환경문제에 대한 인류의 인식을 새롭게 일깨우며, 남극의 환경보전을 위한 당사국의 직접적인 국내적 조치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한편, 1994년 11월에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됨으로써 해양법협약상의 해양관할권 문제, 해양환경보호의 문제 등 기존의 남극체제와의 충돌 내지 모순의 문제가 발생하는 바, 이는 장래의 남극체제에 대한 불안요소로서, 양자를 어떻게 조화롭게 적용하는가가 문제인 것이다. 해양법협약상의 해양관할권에 관한 문제들(기선의 설정,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제도 등)은 남극지역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남극은 그 환경적 민감성, 지구환경에 미치는 중요성과 자연조건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동 지역은 독특한(*sui generis*) 지역으로 간주하여야 하며, 전통적인 국제법규범들이 동 지역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남극지역에 맞는 법체제가 정립되어야 하며, 해양법협약은 아직 포괄적인 법체제를 마련하고 있지 못한 남극체제에 대하여 새로운 규범형성에 대한 촉진제가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새로운 남극체제의 정립은 해양법협약에서의 다른 법제도(해양환경보호, 배타적 경제수역제도, 대륙붕제도, 심해저제도 등)와 더불어 포괄적인 해양법체제의 새로운 정립에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남극지역은 서서히 남극조약당사국들에 의한 운영의 폐쇄성에 벗어나 남극체제를 국제사회에 개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새로운 국제법질서는 개별국가의 이기적 공존을 추구하는 이른바 '공존의 국제법'을 극복하고 개별국가의 협력적 공존 내지 국제사회의 공동체이익을 추구하는 '협력의 국제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지구상의 나머지 새로운 영역은 국제공동체의 협동적 지배체제내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안된

다. 이는 남극의 국제화가 새로운 국제법질서에 부합된다고 할 수 있으며, 새로운 남극문제의 해결방안은 인류공동유산개념의 적용 또는 국제공역화를 토대로 하는 제도가 아니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이 창설된 남극환경보전체제도 남극대륙의 과학적 이용 내지 천연과학실험실로서의 가치에 상응한 응분의 고려 등 모든 면에서의 협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제반방안을 총망라해야만 한다. 그러므로, 각종 법적 문서를 각사무국이나 관련 국제기구에 비치하는 것은 상호협력과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의 장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앞으로 더욱 연구하여야 할 문제이다.

또한, 남극조약체제에서는 해양, 환경보호, 생물자원보존 및 손해배상책임문제 등 국제법의 주요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되고 있으며, 이러한 논의과정에는 각국의 외교관 뿐만 아니라 법학자, 과학자들이 적극 참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남극조약체제 내 각종 회의에 계속 참가하는 전문가들이다. 남극문제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남극문제를 담당하는 국내 전문인력의 양성방안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I. 국내 문헌

1. 단행본

- 해양연구소, 남극 과학기지 건설에 관한 조사연구, 1987년 5월.
해양연구소, 남극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정책방향연구, 1989년 7월.
해양연구소, 국제연합해양법협약, 1992년.
외무부, 제20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 결과보고서, 1996년 6월.
외무부, 제19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 결과보고서, 1995년 5월.
외무부, 제16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 참가보고서, 1991년 11월.
외무부, 제15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 참가보고서, 1989년 12월.
외무부, 제14차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 참가보고서, 1987년 11월.
외무부,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협약가입안, 1985년.
한충록, 남극연구-조약체제 및 자원개발 현황-(서울 : 아세아출판사).

2. 논문

- 김찬규, 해양의 유류오염에 대한 조약적 규제, 경희법학, 제12권 1호, 1974년 12월.
김찬규, 해양오염에 대한 국제법적 규제, 사법행정, 제15권 12호, 1974년, 12월.
김찬규, 해양오염과 국제조약, 국제법학회논총, 제23권 1호-2호, 1978년 12월.
김찬규, 국제적으로 본 해양오염방지의 실태, 경희법학, 제16권 제1호, 1979년.
신현덕, 지구환경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국제법학회논총, 제34권 제1호, 1989년 6월.
한충록, 남극환경의 국제법적 보호, 해양정책연구, 제3권 3호, 1988년 가을호.
한충록, 남극의 국제화, 해양정책연구, 제5권 2호, 1990년, 여름호.

II. 외국문헌

1. 단행본

Antarctica -Key environments-(Oxford : Pergamon Press, 1985)

British Antarctic Survey, *A visitor's introduction to the Antarctic and its environment*(The British Antarctic Survey Natural Environment Research Council, 1984)

Francisco Orrego Vicuna, *Antarctic mineral exploitation- the emerging legal framework*(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

Gillian D. Triggs, *The Antarctic Treaty regime -Law, Environment and Resources-*(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I.B. Campbell and G.G.C. Claridge, *Antarctics : soils, weathering processes, and environmental*(Amsterdam : Elsevier Science Publishers B.V., 1987)

I.M. Dolgin, *Climate of Antarctica*(Faridabad : Printsman Press, 1986)

Lee A. Kimball, *Special report on : The Antarctic minerals convention*(Special Report of the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and Development, July, 1988)

Marrten J. De Wit, *Minerals and mining in Antarctica -science and technology, economics and politics*(Oxford : Clarendon Press, 1985)

2. 논문

Alexander, Frank C., Jr., "A Recommended Approach to the Antarctic Resource Problem", 33 *University of Miami Law Review*, 1978).

Anthony D'Amato and Sudhir K.Chopra, "Whales : Their emerging right to life", *A.J.I.L.*, Vol.85, No.1, January 1991.

Auburn, F.M., Consultative Status under the Antarctic Treaty',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28, 1979.

- Balch, Thomas Willing, "The Arctic and Antarctic regions and the Law of Nations", *A.J.I.L.*, Vol.4, 1910.
- Barbara Mitchell, "Resources in Antarctica", *Marine Policy*, Vol.1, No.2, 1977.
- Boleslaw Adam Boczek, "The protection of the Antarctic Ecosystem: A Study in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 *O.D.I.L.*, Vol.13, No.3, 1983.
- Boyd, Suans B., "The Legal Status of the Arctic Sea Ice: A Comparative Study and a Proposal", *The Canadi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 1984.
- Burton, Steven J., "New Stresses on the Antarctic Treaty: Toward International Legal Institutions Governing Antarctic Treaty", 65 *Virginia Law Review*, 1979.
- C., Pin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Antarctica", 33 *University of Miami Law Review*, 1978.
- C. C. Jonyer, "The Exclusive Economic Zone and Antarctica",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Vol.21, 1981.
- C. C. Joyner,, 'Antarctica and the Law of the Sea : Rethinking the Current Legal Dilemmas', *San Diego Law Review*, Vol.18, 1980-1981.
- C. C. Joyner and Peter and J. Lipperman, "Conflicting Jurisdictions in the Southern Ocean : The Case of an Antarctic Minerals Regime", 27 *Virgi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1986.
- C C. Joyner, "Antarctica and the Law of the Sea : An Intro- ductory Overview", *Ocean Development and International Law*, Vol.13, No.3, 1983.
- D., Anderson, "The Conversion of wild life under the Antarctic Treaty", 14 *Polar Record*, 1988.
- Dayton. L. Alverson, "Tug-of War for the Antarctic Krill", *O.D.I.L.*, Vol.8, No.2, 1980.
- Dugger, John A., "Exploiting Antarctic Mineral Resources -Technology, Economics, and the Environment", 33 *University of Miami Law*

Review, 1978.

- E., Hambro, "Some notes on the future of the Antarctic Treaty collaboration", 68 *A.J.I.L.*, 1974.
- E. Honold, "Thaw in International Law ? Right's in Antarctica under the Law of common Snacer", *The Yale Law Journal*', Vol.87, 1977-78.
- Edwards, David M. and John A. Heap,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 A Commentary", 20 *Polar Record*, 1981.
- F.M. Auburn, "Consultative Status under the Antarctic Treaty",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28, 1979.
- Hambro, Edward, 'Some Notes on the Future of the Antarctic Treaty Collaboration', *A.J.I.L.*, Vol.68, No.1, 1974.
- Hanessian, J., "The Antarctic Treaty 1959",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9, 1960.
- Hayton, Robert D., 'Polar Problems and International Law', *A.J.I.L.*, Vol.52, 1958.
- Howard, Matthew, "Teh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A Five-Year Review", 38 *I.C.L.Q.*, 1989.
- James K. McElroy, "Antarctic fisheries. History and prospects", *Marine Policy*, Vol.8, 1984.
- James K. McElroy, "Krill : still an enigma", *Marine Policy*, Vol.6, No.3, 1982.
- James Simsarian, "Inspection experience under the Antartic Treaty and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A.J.I.L.*, Vol.60, 1966.
- Jeffrey E. Stone, "International Agreements: Antarctic resources", *Harvard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22, 1981.
- Luard, Evan, "Who Owns the Antarctic?", *Foreign Affairs*, Vol.62, No.5, 1984.
- M.J., Peterson, "Antarctic Implications fo the New Law of the Sea", *O.D.I.L.*, Vol.16, No.2, 1986.
- M.W., Holdgate, "The Use and Abuse of Polar Environmental Resources", 22

Polar Record, 1984.

Oxman, Bernard H., "Antarctica and the New Law of the Sea", *Cornell International Law Journal*, Vol.19, No.2, 1986.

Scully, R., Tucker and Lee A. Kimball, "Teh Antarctic : Is there life after minerals?", *Marine Policy*, Vol.13, No.2, 1989.

Watts, A.D., "The Convention on the Regulation of Antarctic Mineral Resource Activities 1988(CMAMRA)",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Quarterly*, Vol.39, 1990.

William Westermeyer, "Resource allocation in Antarctica", *Marine Policy*, Vol.6, No.4, October 1982.

Zegers, Fernando, "The Antarctic System and the Utilization of Resources", 33 *University of Miami Law Review*, 1978.

3. 자 료

Antarctica Cases(United Kingdom v. Argentina ; United Kingdom v. Chile), *I.C.J. Repoet*, Orders of 16 March 1956.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Seals, 11 *I.L.M.*, 1972.

Annex I to the 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 :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Madrid, *X I ATSCM/2*, June 21, 1991.

Annex II to the 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 : Conservation of Antarctic Fauna and Flora, *X I ATSCM/2*, June 21, 1991.

Annex III to the Protocol on Environmental Protection to The Antarctic Treaty : Waste disposal and waste management, Madrid, *X I ATSCM/2*, June 21, 1991.

C. C. Joyner, "Legal and political issues and the Antarctic legal

regime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ritime Issues in the 1990s : Antarctica, law of the sea, and marine environment*(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Yonsei Univ. and The SLOC Study Group-Korea, July 9-10, 1991)

Encyclopedia Britannica, 1974 ed. S.v. "Antarctica."

Encyclopedia International I, 1966 ed. S.v. "Antarctica"

Hohn A. Heap, Environmental issues and future prospects of the Antarctic regim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aritime Issues in the 1990s : Antarctica, law of the sea, and marine environment*(Institute of East and West Studies, Yonsei Univ. and The SLOC Study Group-Korea, July 9-10, 1991)

부 록

1. 남극조약
2. 남극물개 보존협약
3.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협약
4.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附錄 1〉

南 極 條 約

(Antarctic Treaty)

서 명 1959년 12월 1일

발 효 1961년 6월 23일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벨기에, 칠레, 프랑스, 일본, 뉴우지일랜드,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연방, 소비에트 연방, 영국 및 북아일랜드, 그리고 미합중국의 정부는,

남극지역에 있어서 과학적 조사에 관한 국제협력이 과학적 지식에 대하여 초래한 실질적인 공헌을 확인하고,

국제지구관측년 중에 실현된 남극지역에 있어서 과학적 조사의 자유를 기초로 하는 협력을 계속하고 또한 발전시키기 위하여 확고한 기초를 확립함이 과학상의 이익 및 전인류의 진보에 따르는 것임을 확신하고,

또한 남극지역을 오직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는 것과 또 남극지역에 있어서 국제간의 평화를 계속함을 확보하는 조약이 국제연합헌장에 제시된 목적과 원칙을 조장하는 것임을 확신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한다.

제 1 조

- ① 남극지역은 평화적 목적을 위해서만 이용된다. 군사기지, 방비시설의 설치, 군사연습의 실시 및 모든 형의 병기실험과 같은 군사적 성질의 조치는 금지한다.
- ② 본조약은 과학적 연구를 위하여, 또는 기타의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군의 요원이나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 2 조

국제지구관측년 중에 실현된 남극지역에 있어서의 과학적 조사의 자유 및 이를 위한 협력은 본조약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계속하는 것으로 한다.

제 3 조

- ① 체약국은 제 2조에 정한 바에 따라 남극지역에 있어서 과학적 조사에 관하여 국제협력을 촉

진하기 위하여 실행가능한 최대한도로 다음의 사항에 동의한다.

- ㉔ 남극지역에 있어서 과학적 계획의 가장 경제적이고 능률적인 실시를 가능케 하기 위하여 그 계획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는 것
 - ㉕ 남극지역에 있어서 탐험대 및 기지간에 과학요원을 교환하는 것
 - ㉖ 남극지역에서 얻어지는 과학적 관측 및 그 결과를 교환하고 또한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 ② 본조의 규정을 실시함에 있어서 남극지역에 과학적 또는 기술적인 관심을 가지는 국제연합전문기관 및 기타의 국제기관과의 협력적 활동관계를 설정하는 것을 모든 방법으로 장려한다.

제 4 조

- ① 본조약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진 것으로 해석해서는 아니된다.
- ㉔ 어떠한 체약국이 이미 주장한 바가 있는 남극지역에 있어서의 영토주권 또는 영토에 관해서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
 - ㉕ 어떠한 체약국 또는 그 국민이 남극지역에 있어서 그 활동의 결과 또는 기타 이유에 의해 소유하는 영토에 관해서 청구권의 기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것
 - ㉖ 타국의 남극지역에 있어서의 영토주권, 영토에 관해서 청구권 또는 그 청구권의 기초를 승인하거나 부인하는 것에 관해서 어떠한 체약국의 지위를 해하는 것
- ② 본조약의 유효기간 중에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은 남극지역에 있어서 영토에 관한 청구권을 주장하고 지지하며, 또한 부인하기 위한 기초를 이루며, 또는 남극지역에 있어서 주권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다. 남극지역에 있어서 영토에 관한 신청권 및 기존의 청구권의 확대는 본조약의 유효기간 중은 주장하지 못한다.

제 5 조

- ① 남극지역에 있어서 모든 핵폭발 및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은 금지한다.
- ② 핵폭발 및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을 포함한 핵에너지의 이용에 관한 국제협정이 제 9 조에 규정하는 회의에 대표자를 참가시킬 권리를 가진 모든 체약국을 당사국으로 하여 체결되는 경우에는 그 협정에 의거하여 규정되는 규칙은 남극지역에 적용된다.

제 6 조

본조약의 규정은 남위 60도 이남의 지역(모든 빙원을 포함)에 적용한다. 단, 본조약의 여하한 규정도 동지역내의 공해에 관하여 국제법에 의거한 여하한 국가의 권리 또는 권리의 행사까지 해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제 7 조

① 본조약의 목적을 촉진하고 또 그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 9 조의 회의에 대표자를 참가시킬 권리를 보유하는 각 체약국은 본조에 규정하는 사찰을 행할 감시원을 지명하는 권리를 가진다. 감시원은 그를 지명하는 국가의 국민이어야 한다.

감시원의 성명은 감시원을 지명하는 권리를 보유하는 기타의 모든 체약국에 통보하며, 또한 감시원의 임무종료에 관하여도 똑같은 통고를 행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의해 지명된 각감시원은 남극지역의 일방 또는 모든 지역에 언제나 출입하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다.

③ 남극지역의 모든 지역(이 지역의 모든 기지, 시설, 장비 그리고 화물 및 인원의 적재 또는 하재지점에 있는 선박 및 항공기를 포함)은 언제나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감시원의 사찰을 위하여 개방된다.

④ 감시원을 지명할 권리를 보유하는 여하한 체약국도 남극지역의 일방 또는 모든 지역의 공중 감시를 언제나 행할 수 있다.

⑤ 각체약국은 본조약이 그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 때에 타체약국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통보하며, 그 후는 사전에 통고를 행한다.

㉠ 자국의 선박 또는 국민이 참가하는 남극지역행의 또는 동지역에 있는 모든 탐험대 및 자국의 영역내에서 조직되고 동지역에서 출발하는 모든 탐험대

㉡ 자국의 국민이 접거하는 남극지역에 있어서 모든 기지

㉢ 제 1 조 제②항에 규정하는 조건에 따라서 남극지역에 보내기 위한 군의 요원 또는 장비

제 8 조

① 본조약에 의거한 자기의 임무수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제 7 조 제①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된 감시원 및 제 3 조 제①항 ㉠의 규정에 의해 교환된 과학요원, 그리고 이에 수반하는 직원은 남극지역에 있어서 기타의 모든 자에 대한 재판권에 관해서 체약국이 각각의 지위

를 해함이 없이 남극지역에 있는 동안에 자기의 임무수행의 목적을 갖고 행한 모든 작위 또는 부작위에 관해서는 그가 소속하는 체약국의 재판권에만 복종한다.

- ② 제①항의 규정을 해함이 없이 남극지역에 있어서 재판권행사에 관한 분쟁에 관계하는 체약국은 제 9 조 제①항 ㉔의 규정에 따를 조치가 채택될 때까지 상호 수락할 수 있는 해결에 도달하기 위하여 신속히 협의한다.

제 9 조

- ① 본조약의 전문에 열거한 체약국의 대표자는 정보를 교환하고 남극지역에 관한 공통의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며, 아울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 본조약의 원칙 및 목적을 조장하는 조치를 입안하고 심의하며, 또 각각의 정부에 권고하기 위하여 본조약의 발효 후 2개월 이내에 칸베라에서, 그 후는 상당한 간격을 두고 또한 적당한 장소에서 회합한다.
- ㉔ 남극지역을 평화적 목적에만 이용하는 것
 - ㉕ 남극지역에 있어서의 과학적 연구를 용이하게 하는 것
 - ㉖ 남극지역에 있어서의 국제간의 과학적 협력을 용이하게 하는 것
 - ㉗ 제 7 조에 규정하는 사찰을 행할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것
 - ㉘ 남극지역에 있어서의 재판권의 행사에 관한 것
 - ㉙ 남극지역에 있어서의 생물자원을 보호하고 또한 보존하는 것
- ② 제 13 조의 규정에 의거한 가입에 의해 본조약의 당사국이 된 각체약국은 과학적 기지의 설치 또는 과학적 탐험대의 파견과 같은 남극지역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과학적 연구활동의 실시에 의해 남극지역에 대한 자국의 관심을 표시하고 있는 동안은 제①항의 회합에 참가할 대표자를 임명할 권리를 가진다.
- ③ 제 7 조에 언급된 감시원으로부터의 보고는 제①항의 회합에 참가하는 체약국의 대표자에게 송부한다.
- ④ 제①항에 언급된 조치는 그 조치를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된 회합에 대표자를 참가시킬 권리를 가진 모든 체약국에 의해 승인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 ⑤ 본조약에 있어서 설정된 어떠한 또는 모든 권리는 본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는 조치가 제안되고 심의되며, 또는 승인여부를 불문하고 본조약의 발효일부터 행사할 수 있다.

제10조

각체약국은 어떠한 자도 남극지역에 있어서 본조약의 원칙과 목적에 위반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적당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한다.

제11조

- ① 본조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둘 이상의 체약국간에 분쟁이 발생한 때에는 그들 체약국은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재판, 사법적해결 또는 체약국이 선택하는 기타의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한다.
- ② 전기의 방법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종류의 분쟁은 각각의 경우에 모든 분쟁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해결을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한다. 그러나 분쟁당사국은 국제사법재판소에 부탁하는 것에 합의에 달할 수 없는 때에도 제①항에 제시된 각종의 평화적 방법의 어느 것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책임이 있다.

제12조

- ① ② 본조약은 제 9조에 규정한 회합에 대표자를 참가시킬 권리를 보유하는 체약국의 일치된 합의에 의해 언제나 수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그 수정 또는 개정은 이것을 비준한 취지의 통고를 기탁정부가 전기의 모든 체약국으로부터 수령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 ③ 그 후 본조약의 수정 또는 개정은 타체약국에 관해서는 이를 비준한 취지의 통고를 기탁정부가 수령한 때에 효력을 발생한다. 타체약국중 ②의 규정에 따라 수정 또는 개정이 발효한 날로부터 2년의 기간내에 비준의 통고가 수령되지 않는 것은 이 기간의 만료일에 본조약으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된다.
- ④ ② 본조약의 효력발생일로부터 30년을 경과한 후, 제 9조에 규정한 회합에 대표자를 참가시킬 권리를 보유하는 어떠한 체약국이 기탁정부 앞으로의 통보에 의해 요청할 때에는 본조약의 적용에 관한 검토를 위하여 가능한 한 신속히 모든 체약국의 회의를 개최한다.
- ⑤ 전기의 회의에 있어서 그 회의에 출석하는 체약국이 과반수(단, 제 9조에 규정한 회합에 대표자를 참가시킬 권리를 보유하는 체약국의 과반수를 포함)에 의해 승인된 본조약의 수정 또는 개정은 그 회의의 종료후 즉시 기탁정부에 의해 모든 체약국에 통보되고, 또한 제 ①항의 규정에 따라 효력을 발생한다.
- ⑥ 전기의 수정 또는 개정이 모든 체약국에 통보된 날로부터 2년의 기간내에 제①항 ②의 규

정에 따라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할 때는 어떠한 체약국도 그 기간의 만료 후는 언제나 본 조약으로부터 탈퇴하는 취지를 기탁정부에 통고할 수 있다. 이 탈퇴는 기탁정부가 통고를 수령한 후 2년만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

- ① 본조약은 서명국에 의해 비준될 것으로 한다. 본조약은 국제연합가맹국 또는 제9조에 규정한 회합에 대표자를 참가시킬 권리를 보유하는 모든 체약국의 동의를 얻어 본조약에 가입하도록 초청된 기타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 ② 본조약의 비준 또는 가입은 각국의 헌법상의 절차에 따라 행한다.
- ③ 비준서 또는 가입서는 기탁정부로 지정된 미합중국정부에 기탁한다.
- ④ 기탁정부는 모든 서명국과 가입국에 대하여 비준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일과 아울러 본조약 및 그 수정과 개정의 효력발생일을 통보한다.
- ⑤ 본조약은 모든 서명국이 비준서를 기탁한 때에 그들 국가 및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에 관하여 효력을 발생한다. 그 후 본조약은 어떠한 가입국에 관해서도 그 가입서의 기탁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 ⑥ 본조약은 기탁정부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다.

제14조

본조약은 동등히 정문인 영어, 불어, 노어 및 스페인어에 의하여 작성되고, 미합중국정부의 기록에 기탁한다. 동정부는 그 인증등본을 서명국정부 및 가입국정부에 송부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전권위원회는 정당하게 권한의 위임을 받아 본조약에 서명한다.

(서명략)

〈附錄 2〉

南極물개 保存協約

(Convention for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Seals)

서명 1972년 6월 1일

발효 1978년 3월 11일

체약당사국은

1959년 12월 1일 워싱턴에서 서명된 남극조약에 따라 채택된 남극동물군과 식물군의 보존을 위한 합의조치를 상기하고

상업적 포획에 대한 남극물개의 취약성에 관한 일반적인 우려와 이에따른 효과적인 보존조치의 필요성을 인정하며

남극물개자원은 효과적인 보존을 위하여 국제협정을 필요로하는 해양환경상의 중요한 생물자원임을 인정하며

이 자원은 과잉포획에 의하여 멸종되어서는 아니되며 따라서 어떠한 포획도 적정 생존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되어야 함을 인정하며

과학적 지식을 향상시키고 합리적 근거에 의하여 포획하기 위하여 남극물개수에 관한 생물학적 및 기타 조사를 권장하고 장래의 물개포획 작업에 관한 통제로부터 정보를 얻기 위하여 모든 노력이 기울여짐으로써 합당한 추가 규칙이 제정되어야 함을 인정하며

국제과학연맹이사회의 남극연구과학위원회는 본 협약에서 요구된 업무를 수행할 용의가 있음에 유의하여

남극물개의 보호, 과학적 연구 및 합리적 이용의 목적을 증진, 달성하며 생태계내에서 적합한 균형을 유지하기를 기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범 위

(1) 본 협약은 남극조약 제 4조 규정을 인정하는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남위 60도 이남 해양에 적용된다.

(2) 본 협약은 다음의 어떤 또는 모든 종에 적용될 수 있다.

- 남방코끼리 물개 (Mirounga leonina),
- 표범 물개 (Hydrurga leptonyx),
- 웨델 물개 (Leptonychotes weddelli),
- 크랩이더 물개 (Lobodon carcinophagus),
- 로스 물개 (Ommatophoca rossi),
- 남방털가죽 물개 (Arctocephalus sp).

(3) 본 협약의 부속서는 본 협약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 2 조 이 행

- (1) 계약당사국은 제 1 조에 열거된 물개류가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국민 또는 자국기 계양 선박에 의하여 협약지역 내에서 살해되거나 포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합의한다.
- (2) 각 계약당사국은 본 협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것으로서 법, 규칙 및 적절한 경우 허가제도를 포함한 기타 조치를 자국민과 자국기 계양선박을 위하여 채택하여야 한다.

제 3 조 부 속 조 치

(1) 본 협약은 계약당사국이 본조에 의하여 채택하는 조치를 명기한 부속서를 포함한다. 계약당사국은 물개자원의 보존, 과학적 연구, 합리적이고 인도적 이용에 관하여, 특히 다음사항을 명시한 다른 조치를 금후 수시로 채택할 수 있다.

- (가) 포획허용한도
- (나) 보호종과 비보호종
- (다) 포획기와 금획기
- (래) 보호지 지정을 포함한 포획수역과 금획수역
- (매) 물개에 대한 방해금지의 특별지역 지정
- (배) 각 종류의 성, 크기 또는 연령에 관한 제한
- (사) 물개포획의 일시, 기간, 제한 및 방법에 관한 규제
- (애) 포획 어구, 장비 및 기구의 형식과 특징
- (재) 포획반입 및 기타 통제적, 생물학적 기록

- (차) 과학정보의 검토 및 평가를 원활하게 하는 절차
- (캐) 검사의 효과적 제도를 포함한 기타 규제조치

- (2) 본조 1항에 따라 채택된 조치는 과학적 및 기술적 증거에 기초를 두어야 한다.
- (3) 부속서는 제 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서 수시로 개정될 수 있다.

제 4 조 특별 허가

- (1) 본 협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국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서 제한된 양의 물건을 살해, 또는 포획하는 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 (가) 사람 또는 개에게 필수불가결의 양식으로 제공되는 경우
 - (나) 과학적 조사를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
 - (다) 박물관, 교육적 또는 문화적 기관에게 표본으로 제공되는 경우
- (2) 각 계약당사국은 가능한 한 조속히, 여타 계약당사국 및 남극연구과학위원회에 대하여 본조 1항에 따라 발급된 모든 허가서의 목적과 내용 그리고 동 허가서에 따라 살해 또는 포획된 물개의 수에 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조 정보 및 과학적 자문의 교환

- (1) 각 계약당사국은 여타 계약당사국 및 남극연구과학위원회에 대하여 부속서에 명기된 정보를 지정된 기간내에 제공하여야 한다.
- (2) 각 계약당사국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6월 30일동안 본 협약의 제2조에 따라서 취해진 조치에 관한 정보를 매년 10월 31일 이전에 여타 계약당사국 및 남극연구과학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 (3) 상기 두항목에 따라 보고할 정보가 없는 계약당사국은 매년 10월 31일 이전에 이를 공식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4) 남극연구과학위원회는 다음에 관하여 초청된다.
 - 가) 동조에 따라서 접수된 정보를 평가하는 경우 ;
 - 계약당사국간의 과학적 자료 및 정보교환을 권유하는 경우 ;
 - 과학적 조사를 위한 프로그램을 권고하는 경우 ;

협약지역내에서 물개포획대에 의하여 수집된 통계 및 생물학적 자료를 권고하는 경우 ;
부속서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는 경우 ;

- (나) 협약지역에서 특정 종류의 물개포획이 그 종류의 전체 자원과 특정 지역의 생태계에 현저한 악영향을 주고 있을 때 통계적, 생물학적 그리고 기타 이용가능한 증거를 근거로하여 보고하는 경우
- (5) 남극연구과학위원회는 특정 물개 종류에 대한 포획허용 한도가 해당포획기에 초과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체약당사국에 보고하도록 되어있는 수탁국에 대하여 통보하고 이 경우 포획허용 한도가 도달될 예측일자를 제시하도록 초청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별도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자국민과 자국기 계양선박이 상기 예측일자 후 그 물개종류를 살해하거나 포획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6) 남극연구과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유엔 식량농업기구로부터 평가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구할 수 있다.
- (7) 제 1조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체약당사국은 남위 60 도 이북 유빙지역에서 자국민과 자국기 계양선박에 의하여 살해되거나 포획되는 제 1조 2 항에 열거된 물개에 관한 통제에 대하여 각 체약당사국 및 남극연구과학위원회에게 자국내법에 따라 참고하도록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조 체약국간의 협의

- (1) 상업적 포획이 시작되면 어느때라도 체약당사국은 수탁국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체약국 회의를 개최하도록 제안할 수 있다.
- (가) 본 협약 서명국으로서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의 동의를 포함하여, 체약당사국 3분의 2의 과반수 찬성으로, 본 협약 규정의 이행에 관한 검사를 포함한 효과적인 통제체계의 설립
- (나) 본 협약에 따라 체약당사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의 설립
- (다) 다음 사항을 포함한 기타 제안에 대한 고려 ;
- ① 독자적 과학자문에 관한 규정 ;
 - ② 상업적 물개포획이 현저할 경우 본 협약에 따라 체약당사국 3분의 2의 과반수로 남극연구과학위원회에 요구된 일부 또는 모든 기능을 담당하는 과학자문위원회의 설립 ;

- ③ 계약당사국의 참여에 의한 과학프로그램의 수행 ;
- ④ 물개포획유예를 포함한 추가 규제조치의 제시

(2) 계약당사국의 3분의 1이 합의할 경우, 수탁국은 신속히 회의를 소집한다.

(3) 본 협약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남극물개의 포획이 전체물개 자원과 특정지역의 생태계에 현저하게 악영향을 준다고 남극연구과학위원회가 보고할 경우, 어느 계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하더라도 회의가 소집될 수 있다.

제 7 조 운용의 검토

계약당사국은 본 협약의 발효 5년이내에 회의를 가져야 하며, 그로부터 적어도 매 5년마다 협약 운용에 대하여 검토한다.

제 8 조 협약의 개정

- (1) 본 협약은 어느때라도 개정될 수 있다. 계약당사국에 의하여 제안된 개정안은 수탁국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수탁국은 이를 모든 계약당사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2) 계약당사국의 3분의 1이 제안된 개정안을 토의하기 위하여 회의소집을 요구하면 수탁국은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 (3) 개정문안은 수탁국이 모든 계약당사국으로부터 그에 관한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접수한 이후 발효한다.

제 9 조 부속서의 개정

- (1) 어느 계약당사국도 본 협약의 부속서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개정문안은 수탁국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수탁국은 다른 모든 계약당사국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 (2) 제안된 개정문안은, 수탁국이 계약당사국에 통고한 후 120일이내에 반대가 접수되지 않고 계약당사국의 3분의 2가 서면동의를 수탁국에게 통고하면 수탁국이 이를 계약당사국에게 통고한 일자로부터 6개월 후에 모든 계약당사국에 대하여 유효하게 된다.
- (3) 만일 통고일 120일 이내에 계약당사국으로부터 반대가 접수되면 이 문제는 차기회의에서

논의된다. 이 회의에서 동 문제에 대한 만장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체약당사국은 회의 종료로부터 120일 이내에 개정원안이나 또는 이 회의에 의하여 제안된 새로운 개정안의 수락 또는 거부를 통고하여야 한다. 만약 이 기간내에 체약당사국의 3분의 2가 개정안을 수락할 경우, 동 개정안은 수락을 통보한 체약당사국들에 대하여 회의종료로부터 6개월 후 유효하게 된다.

- (4) 제안된 개정안에 대하여 반대했던 체약당사국은 어느때라도 이를 철회할 수 있으며, 제안된 개정안이 이미 발효중일 경우 즉시 또는 본조의 조건에 따라 유효하게 되는 시기에 그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유효하게 된다.
- (5) 수탁국은 체약당사국으로부터 개정안의 수락, 반대 또는 반대의 철회 그리고 발효에 관하여 접수하는 즉시 이를 각 체약당사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6) 부속서에 대한 개정안이 발효한 후 본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국가는 개정된 부속서의 구속을 받는다.

제안된 개정안이 미확정된 기간동안 본 협약의 당사국이 되는 국가는 다른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적용되는 시기의 한도내에서 동 개정안을 수락하거나 반대할 수 있다.

제 10 조 서 명

본 협약은 1972년 2월 3일부터 11일까지 런던에서 개최된 남극물개 보존에 관한 회의에 참가한 국가들에 의하여 1972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런던에서 서명되기 위하여 개방된다.

제 11 조 비 준

본 협약은 비준 또는 수락되어야 한다. 비준서 또는 수락서는 본조에 의하여 수탁국으로 지정된 영국정부에 기탁되어야 한다.

제 12 조 가 입

본 협약은 모든 체약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본 협약가입에 초청된 국가에 대하여 가입이 개방된다.

제 13 조 발 효

- (1) 본 협약은 7 번째 비준서 또는 수락서가 기탁된 날로부터 30 일째에 발효한다.
- (2) 그 이후부터 본 협약은 비준서, 수락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후 30 일째에 비준, 수락, 또는 가입한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 14 조 탈 퇴

체약당사국은 매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 수탁국에게 통고함으로써 당해년도 6월 30일에 본 협약을 탈퇴할 수 있으며 수탁국은 그러한 통보의 접수 즉시 여타 체약당사국에게 이를 통고하여야 한다. 여타 체약당사국은 같은 방식으로 수탁국으로부터 그러한 통고의 사본을 접수한 후 1개월 이내에 탈퇴통고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본 협약은 그러한 통고를 한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당해년도 6월 30일에 실효한다.

제 15 조 수탁국에 의한 통보

수탁국은 모든 서명국과 가입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개 본 협약의 서명, 비준, 수락, 가입서의 기탁 및 탈퇴통고
- 내 본 협약의 발효일자 그리고 본 협약 및 부속서 개정안의 발효일자

제 16 조 정본 및 등록

- (1) 본 협약은 동등히 정본인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에 의하여 작성되어 영국정부의 공문 보관소에 기탁되며, 영국 정부는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에게 본 협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 (2) 본 협약은 수탁국에 의하여 국제연합헌장 제 102조에 따라 등록된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약에 서명하였다.

1972년 6월 1일 런던에서 작성되었다.

부 속 서

1. 포획허용한도

채약당사국은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 살해 또는 포획되는 각 종류의 물개 총 수를 아래에 명기된 수로 제한해야 한다.

아래 숫자는 과학적 평가에 따라 재검토 될 수 있다.

(개) 크랩이터 물개 (*Lobodon carcinophagus*)의 경우 175,000 마리

(나) 표범 물개 (*Hydrurga leptonyx*)의 경우 12,000 마리

(다) 웨델 물개 (*Leptonychotes weddelli*)의 경우 5,000 마리

2. 보호종

(개) 로스 물개 (*Ommatophoca rossi*), 남방코끼리 물개 (*Mirounga leonina*) 또는 학명이 아크토세팔러스 (*Arctocephalus*) 인 남방털가죽 물개를 살해 또는 포획하는 것은 금지된다.

(나) 성년 번식 물개종이 가장 집중되어 있고 취약한 시기동안 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1년생 및 그 이상된 웨델물개에 대하여 9월 1일부터 익년 1월 31일까지 살해하거나 포획하는 것은 금지된다.

3. 금획기와 포획기

3월 1일부터 8월 31일간의 기간은 금획기이며 이기간동안 물개의 살해 및 포획은 금지된다. 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 기간은 포획기이다.

4. 포획구역

이 조항에 나열된 포획 각 구역은 9월 1일부터 익년 2월말일까지의 기간동안 본 부속서의 1항에 나열된 물개종의 포획수의 결과에 따라 폐쇄된다.

이러한 폐쇄는 본 협약 발효시기의 제 5차 남극조약협회의의 보고서의 부속서 B-2항 및 부속서 1에 따른 구역과 동시에 시작된다.

폐쇄기간의 만료에 따라 영향받았던 다음 구역은 포획이 재개된다.

제 1 구역 : 서경 60 도와 120 도 사이

제 2 구역 : 서경 60 도와 서부에 위치한 웨델해 부분을 포함하여 서경 0 도와 60 도 사이

제 3 구역 : 동경 0 도와 70 도 사이

제 4 구역 : 동경 70 도와 130 도 사이

제 5 구역 : 동경 130 도와 서경 170 도 사이

제 6 구역 : 서경 120 도와 170 도 사이

5. 물개보호구역

물개번식지역 또는 장기간 과학조사지역인 다음의 보호구역에서 물개를 살해하거나 포획하는 것은 금지된다.

- (가) 남위 60도 20분과 60도 56분 사이와 서경 44도 05분과 46도 25분 사이의 남오르니 군도 주변지역
- (나) 남위 76도 이남과 동경 170도 서쪽의 남서로스해지역
- (다) 에디스토섬 이남지역과 남위 72도 19분, 동경 170도 18분의 케이프 할레트 및 남위 72도 11분, 동경 170도의 헤름 포인트를 잇는 선의 서부지역

6. 정보의 교환

(가) 체약당사국은 전년도 7월 1일부터 익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동안 협약지역에서 자국민과 자국기계양 선박에 의하여 살해되거나 포획한 모든 물개에 관한 통계정보의 요약을 여타 체약당사국과 남극연구과학위원회에게 매년 10월 31일 이전에 제공하여야 한다. 본 정보는 지역과 월수에 따라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① 체약당사국 선박의 총 톤수 및 순 톤수, 브레이크, 마력, 승무원수, 조업일수
 - ② 각 종류별로 포획된 물개의 성년 및 유아별 수
특별히 요청되는 경우, 본 정보는 선박과 관련하여 매 조업일 시각의 선박위치와 동일 포획량을 제공하여야 한다.
- (나) 물개산업이 개시되었을 경우 각 지역에서 살해 또는 포획되는 각종의 물개수에 대한 보고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1주일보다 짧지않게) 남극연구과학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다) 체약당사국은 특히 남극연구과학위원회에 대하여 특히 다음의 생물학적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① 성
- ② 재 생산조건
- ③ 연령

남극연구과학위원회는 체약국의 동의를 얻어 추가 정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라) 체약당사국은 제안된 물개포획대에 관한 정보를 모항 출발전 최소한 30일전에 다른 체약당사국과 남극연구과학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7. 포획방법

(가) 남극연구과학위원회는 신속하고 고통이 없으며 효율적인 물개 살해 및 포획방법에 대하여

여 보고하고 권고하기 위하여 초청될 수 있다. 계약당사국은 남극연구과학위원회의 견해를 당연히 고려하면서 물개 살해 및 포획에 종사하는 자국민 또는 자국기 계양 선박을 위하여 적절한 규칙을 채택하여야 한다.

- (내) 이용 가능한 과학적 및 기술적 자료에 근거하여 계약당사국은 자국민과 자국기 계양 선박이, 본 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과학조사를 하기 위한 제한된 양의 포획을 제외하고서는 물개의 살해 또는 포획을 자제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동의한다.

예외적인 경우가 해당되는 과학조사는 보존목적을 위한 남극물개 자원의 인도적, 합리적 활용 및 관리의 관점에서 물개포획 방법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를 포함한다. 그러한 과학적 조사프로그램의 착수와 결과는 남극연구과학위원회와 수탁국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수탁국은 이를 다른 계약당사국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附錄 3〉

南極 海洋生物資源 保存協約

(Convention on the Conservation of Antarctic Marine Living Resources)

서명 1980년 5월 20일

발효 1982년 4월 7일

체약당사국은,

남극대륙주변 해양의 환경보존과 생태계의 원상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남극수역에서 발견되는 해양생물자원군과 이들 자원에 대한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이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음에 유의하고,

남극해양생물자원 보존조치의 긴급성을 인식하고,

어획에 관한 결정이 확실한 과학적 정보에 기초하여 행하여질 수 있도록 남극해양생태계와 그 구성요소에 관한 지식을 늘임이 필수적임을 고려하고,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을 위하여서는 남극조약의 제 규정에 대한 적절한 고려와 남극수역에서 조사 및 어획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제협력이 요청됨을 믿고,

남극환경의 보호와 보존을 위한 남극조약협약의 당사국의 주된 책임, 특히 남극대륙에 있어서의 생물자원의 보호와 보존에 관한 남극조약 제9조 1항(f)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남극조약협약의 당사국에 의하여 이미 취해진 조치, 특히 남극의 동물군과 식물군의 보존을 위한 합의조치 및 남극물개보존에 관한 협약의 제 규정을 상기하고,

남극조약협약의 당사국이 제9차 남극조약협약회의에서 밝힌 남극해양 생물자원보존에 대한 관심과 이 협약의 제정을 가져온 권고 제9-2호 규정의 중요성을 염두에 두고,

남극대륙을 둘러싼 수역을 평화적인 목적만을 위하여서만 보존하고, 이 수역이 국제분쟁의 무대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 모든 인류에 유익함을 믿고,

상기에 비추어 남극해양생물의 보존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과학적인 연구를 권고하고, 촉진하고, 결정하거나 조정하기 위한 적절한 기구의 설치가 바람직함을 인정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1. 이 협약은 남위 60도 이남지역에 있어서 남극해양생물자원 및 남위 60도와 남극수렴선 사이의 지역에 있어서의 남극해양생태계에 속하는 남극해양생물자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남극해양생물자원이라 함은 남극수렴선 이남에서 발견되는 지느러미 있는 어류, 연체동물, 갑각류동물 및 조류를 포함한 기타 모든 종류의 생물자원을 말한다.
3. 남극해양생태계라 함은 남극해양생물자원 상호의 관계 및 동자원과 이들 자원을 포함하는 자연환경과의 관계가 복합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4. 남극수렴선이라 함은 위도선과 자오선에 따라 다음의 점을 연결한 선을 말한다.
남위 50도·경도 0도, 남위 50도·동경 30도, 남위 45도·동경 30도, 남위 45도·동경 80도,
남위 55도·동경 80도, 남위 55도·동경 150도, 남위 60도·동경 150도, 남위 60도·서경 50도,
남위 50도·서경 50도, 남위 50도·경도 0도

제 2 조

1. 이 협약의 목적은 남극해양생물자원의 보존에 있다.
2. 이 협약의 적용상 “보존”이라는 용어는 합리적 이용을 포함한다.
3. 이 협약이 적용되는 지역에서의 어떠한 어획이나 관련 활동은 이 협약의 규정과 다음의 보존 원칙에 따라 행하여져야 한다.
 - (a) 어획되는 자원에 대하여 그 규모가 당해 자원의 안정적인 보충을 확보하는 수준이하로 감소되는 것을 방지할 것. 이를 위하여 그 규모가 최대의 연간 순증식량을 확보하는 수준에 가까운 수준이하로 저하되도록 허용되어서는 아니됨.
 - (b) 남극해양생물자원중 어획되는 자원, 그에 의존하는 자원 및 관계가 있는 자원간의 생태학적 관계를 유지할 것과 고갈된 자원에 대하여 그 규모를 상기 (a)항에 규정된 수준으로 회복시킬 것.
 - (c) 남극해양생물자원 중 지속적 보존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어획에 따른 직접 및 간접적 영향, 외래종의 도입이 미치는 영향, 연관활동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이용 가능한 지식의 형편을 고려하여, 20년 또는 30년에 걸쳐 잠재적으로 회복될 수 없는 해양생태계에 있어서의 변화를 방지하거나 또는 변화 위험성을 최소화할 것.

제 3 조

체약당사국은, 남극조약의 당사국 여부를 불문하고, 남극조약지역에서 동 조약의 원칙과 목적에 반하는 어떠한 활동도 행하지 아니할 것과, 그들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남극조약 제1조 및 제5조에서 정한 의무를 따를 것을 동의한다.

제 4 조

1. 남극조약지역과 관련하여, 모든 체약당사국은 남극조약의 당사국 여부를 불문하고, 그들의 상호관계에 있어서 남극조약 제4조 및 제6조에 따른다.
2.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이나 이 협약의 발효중에 이루어지는 어떠한 행위나 활동도 :
 - (a) 남극조약 지역에서 영토에 관한 청구권을 주장하거나, 지지하거나 부인하기 위한 근거를 이루거나, 남극조약 지역에서 어떠한 주권도 설정하지 아니한다.
 - (b) 이 협약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국제법에 따라 연안국의 관할권을 행사하는 권리 또는 당해 관할권을 행사할 청구권 또는 청구권의 근거를 어떠한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포기시키거나 축소시키거나 또는 그러한 권리, 청구권 또는 청구권의 근거를 손상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c) 그러한 권리·청구권 또는 청구권의 근거를 승인하거나 또는 부인하는 것에 관한 체약당사국의 입장을 손상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d) 남극조약의 발효중에는 남극지역에서 영토에 대한 새로운 청구권 또는 기존 청구권의 확대를 주장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남극조약 제4조 2항의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5 조

1. 남극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체약당사국은 남극조약 지역의 환경보호 및 보존을 위한 남극조약협약당사국의 특별한 의무와 책임을 인정한다.
2. 남극조약의 당사국이 아닌 체약당사국은 남극조약 지역에서의 활동에 있어서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남극의 동물군과 식물군의 보존을 위한 합의조치 및 남극조약협약당사국이 모든형태의 해로운 인간의 개입으로부터 남극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하여 권고한 기타 조치를 준수할 것을 동의한다.
3. 이 협약의 적용상 남극조약협약당사국이라 함은 남극조약 제9조에 의한 회의에 그 대표가 참가하는 남극조약의 체약당사국을 말한다.

제 6 조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도 채약당사국의 국제포경규제협약과 남극물개보존에 관한 협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훼손하지 아니한다.

제 7 조

1. 채약당사국은 이에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유지할 것을 합의한다.
2. 위원회의 회원국 자격은 다음과 같다.
 - (a) 이 협약이 채택된 회의에 참가한 각 채약당사국은 위원회의 회원국이 된다.
 - (b) 제 29 조에 따라 이 협약에 가입한 각국은 당해 가입국이 이 협약이 적용되는 해양생물 자원과 관련된 조사 또는 어획활동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위원회의 회원국이 될 자격이 있다.
 - (c) 제 29 조에 따라 이 협약에 가입한 각 지역경제통합기구는 동 기구의 회원국이 그러한 자격이 있는 동안 위원회의 회원국이 될 자격이 있다.
 - (d) 상기 (b), (c)항에 따라 위원회의 작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채약당사국은 위원회의 회원국이 되고자 하는 근거와 발효중인 보존조치의 수락의사를 수탁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수탁자는 그러한 통고와 관련정보를 위원회의 각 회원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수탁자로부터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후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어떠한 회원국도 이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특별회의를 개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한 요구를 접수하는 즉시 수탁자는 특별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회의 요구가 없으면, 통고를 행한 채약당사국은 위원회의 회원자격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된다.
3. 위원회의 각 회원국은 교체대표와 자문위원을 동반할 수 있는 1인의 대표에 의하여 대표된다.

제 8 조

위원회는 법인격을 가지며, 각 당사국의 영토에서 그 임무를 수행하고,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상의 능력을 향유한다. 당사국의 영토에서 위원회와 그 직원이 향유할 특권과 면제는 위원회와 당해 당사국간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 9 조

1. 위원회의 임무는 이 협약 제 2 조에 규정된 목적과 원칙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위원회는,
 - (a) 남극해양생물자원과 남극해양생태계에 관한 조사 및 포괄적인 연구를 촉진하고,
 - (b) 남극해양생물자원량의 상태와 변화에 관한 자료 및 어획종과 이들에 의존하거나 또는 관계가 있는 종 또는 개체군의 분포, 풍요도 및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 (c) 어획자원에 대한 어획량 및 어획노력량에 관한 통계의 입수를 확보하고,
 - (d) 상기 (b), (c)항에 언급된 정보와 과학위원회의 보고서를 분석 보급, 간행하고,
 - (e) 보존 필요성을 확인하고, 보존조치의 효율성을 분석하고,
 - (f) 이 조 제 5 항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이용 가능한 최선의 과학적 증거에 기초하여 보존조치를 작성, 채택, 수정하고,
 - (g) 이 협약 제 24 조에 따라 설치된 감시 및 검사제도를 실시하고,
 - (h)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타 활동을 수행한다.
2. 상기 제 1 항 (f)에 언급된 보존조치는 다음을 포함한다.
 - (a) 이 협약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어획될 수 있는 종별의 양을 지정하는 것.
 - (b) 남극해양생물자원의 개체군의 분포에 기초한 구역 및 소구역을 지정하는 것.
 - (c) 구역 및 소구역의 개체군으로부터 어획될 수 있는 양을 지정하는 것.
 - (d) 보호생물종을 지정하는 것.
 - (e) 어획될 수 있는 종의 체장, 연령 및 적절한 경우 성별을 지정하는 것.
 - (f) 어기 및 금어기를 지정하는 것.
 - (g) 보호 및 과학적 연구를 위한 특별지역을 포함하여 과학적 연구 또는 보존을 위한 지역, 구역 및 소구역의 조업 및 금어를 지정하는 것.
 - (h) 어떠한 구역이나 소구역에서의 지나친 어획 집중을 특히 피하기 위하여 어구를 포함한 어획 노력량 및 어획방법을 규제하는 것.
 - (i) 어획 및 연관활동이 어획된 개체군 이외의 해양생태계의 구성요소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기타 보존조치를 채택하는 것.
3. 위원회는 발효중인 모든 보존조치에 관한 기록을 발간하고 유지한다.

4. 위원회는 상기 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과학위원회의 권고와 자문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5. 위원회는 남극조약 제9조에 따른 협의회의 또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들어올 수 있는 중에 대하여 책임있는 기존 어업위원회가 작성하거나 또는 권고한 관련조치 또는 규칙에 따른 체약당사국의 권리·의무와 위원회가 채택하는 보존조치에 따른 체약당사국의 권리의무가 저촉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들 관련조치 또는 규칙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6. 위원회의 위원국은 이 협약에 따라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조치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 (a) 위원회는 위원회의 모든 회원국에게 보존조치에 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b) 보존조치는 아래 (c), (d)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통고후 180일이 경과하면 위원회의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발생한다.
 - (c) 위원회의 어느 회원국이 (a)항에 규정된 통고후 90일 이내에 보존조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락할 수 없음을 위원회에 통고하는 경우 동 회원국은 통고에 의하여 표명된 범위내에서 동 보존조치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 (d) 위원회의 어느 회원국이 상기 (c)항에 규정된 절차를 원용한 경우, 위원회는 어떠한 회원의 요청에 따라라도 보존조치를 재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하여야 한다. 그러한 회합시 또는 회합후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어떠한 회원국도 동 보존조치를 더 이상 수락할 수 없음을 선언할 권리를 가지며, 이 경우 그 회원국은 그러한 조치에 더 이상 구속되지 아니한다.

제 10 조

1. 위원회는 이 협약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의 국민 또는 선박에 의하여 취해진 활동이 이 협약의 목적수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 국가의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모든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체약당사국에 의한 이 협약의 목적수행 또는 이 협약에 따른 동 체약당사국의 의무이행에 영향을 끼친다고 위원회가 판단하는 체약당사국의 여하한 활동에 대하여도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

제 11 조

위원회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지역과 동 지역에 인접한 해역에서 다같이 발생하는 종 또는

이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종의 계군의 보존과 관련하여 그러한 계군에 관하여 채택된 보존조치와 조화를 기하기 위하여 이 협약이 적용되는 지역에 인접한 해역에서 관할권을 행사하는 계약당사국과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12 조

1. 실질문제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은 의견의 일치로 행한다. 어떤 문제가 실질문제인지 여부에 관한 문제는 실질문제로 취급한다.
2. 상기 1항에 언급된 문제 이외의 문제에 대한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위원회 회원국의 단순 과반수에 의한 의결로 행한다.
3. 결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에 있어서, 지역경제통합기구가 그 결정을 행하는데 참가할 것인지 여부 및 참가하는 경우, 그 기구의 어느 회원국이 또한 참가할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상기에 따라 참가하는 계약당사국의 수는 위원회의 회원국인 지역경제통합 기구의 회원국의 수를 초과할 수 없다.
4. 이 조에 따라 결정을 행함에 있어서 지역경제통합기구는 1개의 투표권만을 가진다.

제 13 조

1. 위원회의 본부는 호주의 타스마니아주 호바트에 둔다.
2. 위원회는 정기 연례회의를 개최한다. 기타 회의는 회원국의 3분의 1의 요청에 의하거나 이 협약이 달리 정하는 바에 따라 개최한다. 위원회의 제 1차회의는, 계약당사국중에서 이 협약이 적용되는 지역내에서 어획활동을 행하고 있는 국가가 최소한 2개국이 될 것을 조건으로, 이 협약 발효후 3개월 이내에 개최된다. 제 1차회의는, 어떠한 경우에도, 이 협약발효후 1년 이내에는 개최되어야 한다. 수탁자는 위원회의 실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서명국이 위원회에 대표되는 것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제 1차회의에 관하여 서명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위원회의 본부에서 위원회의 제 1차회의를 소집한다. 그 후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의 본부에서 개최된다.
4. 위원회는 회원국의 대표중에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며,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하고, 1

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초대위원장은 최초의 임기를 3년으로 하여 선출된다. 의장과 부의장은 동일 계약당사국의 대표이어서는 아니된다.

5. 위원회는 이 협약 제 12조에서 규정하는 문제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 회의의 운영에 관한 절차규칙을 채택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한다.
6. 위원회는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 14 조

1. 계약당사국은 이에 위원회의 자문기관으로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과학위원회(이하 “과학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과학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과학위원회는 위원회의 본부에서 보통 회합한다.
2. 위원회의 각 회원국은 과학위원회의 회원국이 되며, 적절한 과학적 자격을 갖춘 1명의 대표를 임명한다. 동 대표는 다른 전문가와 자문위원을 동반할 수 있다.
3. 과학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히 다른 과학자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 15 조

1. 과학위원회는 이 협약이 적용되는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연구 및 교환과 관련된 협의와 협력을 위하여 공개토론회의를 마련하여야 한다. 과학위원회는 남극해양생태계의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지식을 넓히기 위하여 과학적인 조사분야에 있어서 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하여야 한다.
2. 과학위원회는 위원회가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시하는 활동 및 다음의 활동을 수행한다.
 - (a) 이 협약 제 9조에 언급된 보존조치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적용될 기준과 방법을 제정하는 것.
 - (b) 남극해양생물자원의 양의 상태와 경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 것.
 - (c) 어획이 남극해양생물자원의 개체군에 대하여 미치는 직접, 간접적 영향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는 것.
 - (d) 어획의 방법 또는 규모에 관하여 제안된 변경과 제안된 보존조치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
 - (e) 이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 및 조사에 관하여, 요청에 따라 또는 자기의 발

의에 의하여 평가, 분석, 보고 및 권고를 위원회에 전달하는 것.

(f) 남극해양생물자원에 관한 국제적 및 국가적 조사계획의 시행을 위한 제안을 작성하는 것.

3. 과학위원회는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기타 관련된 기술적·과학적 기구의 작업과 남극조약의 테두리내에서 행해지는 과학적 활동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 16 조

1. 과학위원회의 제 1 차회의는 위원회의 제 1 차회의후 3 개월 이내에 개최된다. 과학위원회는 그 이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수시로 회합한다.
2. 과학위원회는 그 절차규칙을 채택하고 필요에 따라 개정한다. 규칙과 그 개정은 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한다. 동 규칙은 소수의견 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절차를 포함한다.
3. 과학위원회는,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임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제 17 조

1. 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 및 조건에 따라 위원회와 과학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임명한다. 사무국장의 임기는 4 년이며, 연임될 수 있다.
2. 위원회는 필요한 사무국의 직원조직을 인정하고, 사무국장은 위원회가 정하는 규칙, 절차 및 조건에 따라 사무국의 직원을 임명, 지휘, 감독한다.
3. 사무국장과 사무국은 위원회가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제 18 조

위원회 및 과학위원회의 공용어는 영어, 불어, 러시아어, 서반아어로 한다.

제 19 조

1. 매 연례회의에서 위원회는 위원회 및 과학위원회의 예산을 의견의 일치로 채택한다.
2. 위원회, 과학위원회 및 보조기관의 예산안은 사무국장이 작성하여 적어도 위원회의 연례회의의 개최 60 일 이전에 위원회의 회원국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3. 위원회의 각 회원국은 예산을 분담하여야 한다. 이 협약 발효후 5 년이 경과하기까지는 위원회의 각 회원국의 분담금은 동일하다. 그 이후의 분담금은 어획량과 위원회의 모든 회원국간의 균등분담원칙의 두가지 기준에 따라 결정된다. 위원회는 이 두가지 기준이 적용되는 비율을 의견의 일치로 결정하여야 한다.

4. 위원회 및 과학위원회의 재정활동은 위원회가 채택한 재정규칙에 따라 수행되어야 하고, 위원회가 선임한 외부 회계사에 의하여 연례감사를 받아야 한다.
5. 위원회의 각 회원국은 위원회 및 과학위원회의 회의 참석에 따른 자국의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6. 계속하여 2년간 분담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위원회의 회원국은 지불불이행 기간동안 위원회의 결정에 참가할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제 20 조

1. 위원회의 회원국은 위원회와 과학위원회가 각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계적·생물학적 및 기타 자료와 정보를 가능한 한 최대한 매년 위원회와 과학위원회에 제공하여야 한다.
2. 위원회의 회원국은 신뢰할 만한 어획량과 어획 노력량에 관한 통계가 수집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조업 지역 및 선박을 포함하여 자국의 어획활동에 관한 정보를 정해진 방법과 기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회원국은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취해진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정해진 기간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위원회의 회원국은 어획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자국의 어획활동을 이용하여 수집할 것을 동의한다.

제 21 조

1.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약의 제 규정과 이 협약 제 9조에 따라 당사국이 따라야하는 위원회가 채택한 보존 조치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권한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위반에 대한 제재부과를 포함하여 상기 1항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 관한 정보를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 22 조

1. 각 체약당사국은 어느 누구도 이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적절한 노력을 할것을 약속한다.

2. 각 계약당사국은 자국이 인지한 이 협약의 목적에 반하는 어떠한 활동에 관하여서도 위원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 23 조

1. 위원회와 과학위원회는 남극조약협약당사국의 권한내에 있는 사항에 관하여 남극조약협약당사국과 협력하여야 한다.
2. 위원회와 과학위원회는 적당한 경우에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및 기타 전문기구와 협력하여야 한다.
3. 위원회와 과학위원회는 적당한 경우에는 남극연구과학위원회, 해양연구과학위원회 및 국제포경위원회를 포함하여 그들의 작업에 기여할 수 있는 정부간 및 비정부간 국제기구와 협조적인 업무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4. 위원회는 이 조에서 언급된 기구 및 적당한 경우에는 기타 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위원회와 과학위원회는 그러한 기구에 대하여 위원회, 과학위원회 및 이들의 보조기관의 회의에 옵서버를 파견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제 24 조

1. 이 협약의 목적을 추진하고, 이 협약의 제 규정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당사국은 감시 및 검사제도를 수립할 것을 합의한다.
2. 감시 및 검사제도는 다음의 원칙을 토대로 위원회가 작성한다.
 - (a) 계약당사국은 현존 국제관행을 고려하고, 감시 및 검사제도의 효과적인 실시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이 제도는, 특히 위원회의 회원국에 의하여 지명된 감시원 및 검사원의 승선과 검사에 관한 절차와 승선 및 검사로부터 나오는 증거를 기초로 한 기국의 소추 및 제재에 관한 절차를 포함한다. 그러한 소추 및 부과된 제재에 관한 보고는 이 협약 제 21 조에 규정된 정보에 포함되어야 한다.
 - (b) 이 협약에 따라 채택된 조치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시 및 검사는 위원회의 회원국에 의하여 지명된 감시원 및 검사원이 위원회가 정한 조건에 따라 이 협약이 적용되는 지역에서 해양생물자원의 과학적 조사 또는 어획에 종사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실시한다.
 - (c) 지명된 감시원 및 검사원은 그들의 국적국인 계약당사국의 관할권에 종속된다. 그들은 그들을 지명한 위원회의 회원국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동 회원국은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감시 및 검사제도의 수립시까지 위원회의 회원국은 감시원 및 검사원을 지명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와같이 지명된 감시원 및 검사원은 상기 2항에 규정된 제 원칙에 따라 검사를 실시할 권한이 주어진다.

제 25 조

1. 이 협약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둘 이상의 체약당사국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동 체약당사국은 교섭, 심사, 중개, 조정, 중재, 사법적 해결 또는 그들이 선택하는 기타의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들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한다.
2. 위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한 상기와 같은 성격의 분쟁은, 각각의 경우에 모든 분쟁당사국의 동의를 얻어 해결을 위하여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중재에 부탁되어야 한다. 분쟁당사국은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중재에 부탁하는 것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상기 1항에 언급된 여러가지 평화적 수단중 어느 것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계속 노력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3. 분쟁이 중재에 부탁되는 경우, 중재재판소는 이 협약 부칙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구성된다.

제 26 조

1. 이 협약은 1980년 5월 7일부터 5월 20일까지 캔버라에서 개최된 남극 해양생물자원보존에 관한 회의에 참가한 국가들의 서명을 위하여 1980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캔버라에서 개방된다.
2. 위와 같이 서명한 국가는 이 협약의 원 서명국이 된다.

제 27 조

1. 이 협약은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 수락 또는 승인되어야 한다.
2.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이 협약에서 수탁자로 지정된 호주정부에 기탁된다.

제 28 조

1. 이 협약은 제 26조 1항에 언급된 국가들이 8번째의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날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2. 이 협약 발효후에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국가 또는 지역경제통합기구에 대하여 이 협약은 그 기탁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한다.

제 29 조

1. 이 협약은 이 협약이 적용되는 해양생물자원에 관한 조사 또는 어획활동에 관심이 있는 국가에 의한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이 협약은 그 기구의 일개국 이상의 회원국이 위원회의 회원국이며 그 기구의 회원국이 이 협약이 규율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기구에 위임하고 있는 주권국가로 구성된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그러한 지역경제통합기구의 가입은 위원회의 회원국간의 협의의 대상이 된다.

제 30 조

1. 이 협약은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2. 위원회의 회원국의 3분의 1이 개정안의 토의를 위한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수탁자는 동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3. 개정은 수탁자가 위원회의 모든 회원국으로부터 그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접수한 때에 발효한다.
4. 동 개정은 그후 수탁자가 기타 계약당사국으로부터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의 통고를 접수 하였을때 그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상기 3항에 따라 개정이 발효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기타 계약당사국이 아무런 통고도 아니하지 않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 협약으로부터 탈퇴한 것으로 간주된다.

제 31 조

1. 어느 계약당사국도 어느해의 1월 1일 이전에 수탁자에게 서면통고를 함으로써 동년 6월 30일에 이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그러한 통고 접수시 여타 계약당사국에게 동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여타의 계약당사국도 수탁자로부터 그러한 통고의 사본을 접수한 후 60일 이내에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탈퇴 통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협약은 그러한 통고를 한 계약당사국에 대하여 동년 6월 30일에 실효한다.
3. 위원회의 회원국에 의한 이 협약으로부터의 탈퇴는, 이 협약에 따른 동 회원국의 재정적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 32 조

수탁자는 모든 계약당사국에게 다음 사항을 통보한다.

- (a) 이 협약의 서명 및 비준서, 수탁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의 기탁
- (b) 이 협약의 발효일자와 개정의 발효일자

제 33 조

1. 영어, 불어, 러시아어 및 서반아어본이 동등히 정본인 이 협약은 호주 정부에 기탁되며, 호주 정부는 모든 서명국 및 가입국에게 이 협약의 인증등본을 송부한다.
2. 이 협약은 국제연합헌장 제 102조에 따라 수탁자가 등록한다.
1980년 5월 20일 캔버라에서 작성되었다.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중재재판소에 관한 부속서

1. 제 25 조 3 항에 언급된 중재재판소는 아래와 같이 임명되는 3 인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 a) 소송절차를 개시하는 분쟁당사국은 타방 당사국에게 1 명의 중재인의 성명을 통보하며, 타방 당사국은 그 통보후 40 일 이내에 제 2 의 중재인의 성명을 통보한다.
분쟁당사국은 제 2 의 중재인이 임명된후 60 일 이내에 제 3 의 중재인을 임명하며, 동 제 3 의 중재인은 쌍방 어느 한 당사국의 국적을 가지거나 다른 두 중재인의 한 사람과 같은 국적을 가져서도 아니된다. 제 3 중재인이 재판을 주재한다.
 - b) 제 2 의 중재인이 소정의 기간내에 임명되지 아니하거나, 분쟁당사국이 소정의 기간내에 제 3 의 중재인의 임명에 관하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제 2 의 중재인 또는 제 3 의 중재인은 어느 일방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상설중재재판소 사무총장이 이 협약의 계약당사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국제적 명성이 있는 사람중에서 임명한다.
2. 중재재판소는 그 본부의 소재지를 결정하고, 그 자체의 절차 규칙을 채택한다.
3. 중재재판소의 판정은 구성원의 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구성원은 표결에 기권할 수 없다.
4. 분쟁당사국이 아닌 계약당사국도 중재재판소의 동의를 얻어 소송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5. 중재재판소의 판정은 최종적이며, 모든 분쟁당사국과 소송절차에 참가한 당사국을 구속하고, 지체없이 이행되어야 한다.
중재재판소는 어느 한 분쟁당사국 또는 소송절차에 참가한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판정을 해석한다.
6. 중재재판소가 사건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하여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구성원의 보수를 포함한 중재재판소의 비용은 분쟁당사국이 동일하게 분담하여야 한다.

〈부록 4〉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전 문

이하에서 당사국으로 규정된 남극조약의정서 당사국은,

남극환경 및 이에 부속되고 관련된 생태계의 보호를 증진할 필요성을 확신하고,

남극이 영구히 평화적 목적으로만 계속 이용되도록 그리고 국제분쟁의 무대 또는 대상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남극조약체제를 강화할 필요성을 확신하며,

남극의 특별한 법적·정치적 지위와 남극에서의 모든 활동이 남극조약의 목적과 원칙에 합치하도록 보장할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의 특별한 책임에 유념하고,

남극을 특별보존구역으로 지정하였던 사실과 남극환경 및 이에 부속되고 관련된 생태계의 보호를 위하여 남극조약체제하에서 채택된 다른 조치들을 상기하며,

지역적으로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중요성을 지닌 사태의 추이에 대한 과학적 감시와 연구를 위하여 남극이 제공하는 특이한 기회를 더욱 인식하고,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협약의 보존원칙들을 재확인하며,

남극환경 및 이에 부속되고 관련된 생태계의 보호를 위한 포괄적 체제의 개발이 인류전체에 이익이 됨을 확신하고,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남극조약의 보안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 1 조 정 의

이 의정서의 목적을 위하여,

- 가. "남극조약"이라 함은 1959년 12월 1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남극조약을 말한다.
- 나. "남극조약지역"이라 함은 남극조약 제6조에 따라서 남극조약의 제규정이 적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 다.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라 함은 남극조약 제9조에 규정된 회의를 말한다.
- 라.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라 함은 남극조약 제9조에 규정된 회의에 참가하는 대표를 임명할 권한을 가진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을 말한다.
- 마. "남극조약체제"라 함은 남극조약, 남극조약하에서 실시중인 제조치, 남극조약과 관련되어 발효중인 별도의 국제문서와 그러한 문서하에서 실시중인 제조치를 말한다.
- 바. "중재재판소"라 함은 이 의정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의정서부록에 따라서 설립된 중재재판소를 말한다.
- 사. "위원회"라 함은 제11조에 따라서 설립된 환경보호위원회를 말한다.

제 2 조 목적 및 지정

당사국은 남극환경 및 이에 부속되고 관련된 생태계의 포괄적 보호를 약속하고, 이에 의하여 남극을 평화와 과학을 위한 자연보존구역으로 지정한다.

제 3 조
환경원칙

1. 남극환경 및 이에 부속되고 관련된 생태계의 보호와 남극의 야생적·미학적 가치 및 특히 지구환경을 이해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의 가치를 포함하여 남극의 고유한 가치의 보호는 남극지역에서 모든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근본적인 고려사항이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가. 남극조약지역에서의 활동은 남극환경 및 이에 부속되고 관련된 생태계에 대한 해로운 영향을 제한하도록 계획되고 수행된다.

나. 남극조약지역에서의 활동은 다음 사항을 피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수행된다.

(1) 기후 또는 일기의 유형에 대한 해로운 영향

(2) 공기와 수질에 대한 중대한 해로운 영향

(3) 대기·지상(수생을 포함한다)·빙하 또는 해양에서의 환경의 중대한 변화

(4) 동·식물의 종 또는 종의 개체군의 분포, 번성 또는 생산력의 해로운 변화

(5) 멸종위기에 있거나 위협받는 종 또는 그러한 종의 개체군에 대한 더 이상의 위협

(6) 생물학적·과학적·역사적·미학적 또는 야생적 중요성을 지니는 지역의 가치 저하 또는 그러한 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

다. 남극조약지역에서의 활동은 남극환경 및 이에 부속되고 관련된 생태계와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남극의 가치에 대하여 그러한 활동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하는 충분한 정보에 기초하여 계획되고 수행된다. 그러한 판단을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충분히 고려한다.

- (1) 활동하는 지역·지속기간 및 강도를 포함한 활동의 범위
- (2) 활동자체 및 남극조약지역에서의 다른 활동과 연계된 활동의 누적적 영향
- (3) 활동이 남극조약지역에서의 다른 활동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인지의 여부
- (4) 환경적으로 안전한 운영을 제공하기 위하여 기술과 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
- (5) 활동의 해로운 영향을 확인하여 조기경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리고 남극환경 및 이에 부속되고 관련된 생태계에 대한 감시의 결과 또는 증대된 지식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간주된 운영절차의 수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요환경변수 및 생태계 구성요소를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 (6) 특히 환경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존재하는지의 여부

라. 정기적이고 효과적인 감시는 예견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을 포함하여 현재 진행중인 활동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허용되도록 수행된다.

마. 정기적이고 효과적인 감시는 남극조약지역의 내·외에서 수행된 활동이 남극환경 및 이에 부속되고 관련된 생태계에 미치는 예견되지 아니할 수 있는 영향의 조기발견을 촉진하도록 수행된다.

3. 활동은 과학적 연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하여 그리고 지구환경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연구를 포함하여 그러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의 남극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하여 남극조약지역에서 계획되고 수행된다.

4. 과학적 연구계획에 따라서 남극조약지역에서 수행되는 활동·관광 그리고 보급 및 지원활동을 포함하여 남극조약 제7조제5항에 따라서 사전통고가 요구되는 다른 모든 정부활동 및 비정부 활동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이 조의 원칙과 합치되는 방식으로 수행된다.

나. 그러한 활동이 환경원칙과 합치되지 아니하게 남극환경 및 이에 부속되고 관련된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게 되거나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을 위협하는 경우, 수정·정지 또는 취소된다.

제 4 조 남극조약체제의 다른 구성요소와의 관계

1. 이 의정서는 남극조약을 보완하지만 그러한 조약을 수정하거나 개정하지 아니한다.

2. 이 의정서의 어떠한 내용도 남극조약체제안에서 발효중인 다른 국제문서에 따른 이 의정서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손상하지 아니한다.

제 5 조 남극조약체제의 다른 구성요소와의 조화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목적 및 원칙의 성취를 보장하기 위하여 또한 그러한 국제문서의 목적 및 원칙의 성취에 대한 방해 또는 이 의정서와 그러한 국제문서의 이해사이의 불일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남극조약체제안에서 발효중인 다른 국제문서의 계약당사자들 및 그들의 각 기관과 협의하고 협력한다.

제 6 조 협 력

1. 당사국은 남극조약지역에서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협력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남극환경 및 이에 부속되고 관련된 생태계의 보호에 관한 과학적·기술적 및 교육적 가치가 있는 협력계획의 추진

- 나. 환경영향평가의 준비중에 다른 당사국에 대한 적절한 원조의 제공
- 다. 요청에 따라 다른 당사국에게 잠재적 환경위험에 관한 정보와 남극환경 또는 이에 부속되고 관련된 생태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사고의 효과를 최소화하는 원조의 제공
- 라. 기지의 특정지역에로의 과도한 집중으로부터 일어나는 누적적 영향을 회피할 수 있는 기지예정지 및 다른 시설의 선택에 관한 다른 당사국과의 협의
- 마. 적절한 경우 공동탐사의 수행과 기지 및 다른 시설 사용의 공유
- 바.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에서 합의될 수 있는 제조치의 수행

2. 남극환경 및 이에 부속되고 관련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 당사국이 남극조약지역에서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가능한 한도까지 공유할 것을 약속한다.

3. 당사국은 남극조약지역에서의 활동이 그러한 지역에 대하여 해로운 환경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남극조약지역과 인접한 지역에서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당사국과 협력한다.

제 7 조 광물자원활동의 금지

과학적 연구를 제외하고는 광물자원과 관련된 어떠한 활동도 금지된다.

제 8 조 환경영향 평가

1. 아래의 제2항에서 제안된 활동은 그러한 활동이 다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그러한 활동이 남극환경 또는 이에 부속되거나 관련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하여 부속서 I 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다.

- 가. 사소하거나 또는 일시적 영향이하의 것
- 나. 사소하거나 또는 일시적인 영향
- 다. 사소하거나 일시적인 영향이상의 것

2. 각 당사국은 과학적 연구계획에 따라 남극조약지역에서 수행되는 어떠한 활동·관광 그리고 보급 및 지원활동을 포함하여 남극조약 제7조제5항에 의하여 사전통고가 요구되는 다른 모든 정부활동 및 비정부 활동에 관한 결정에 도달하는 계획과정에 있어서 부속서 I 에 규정된 평가절차가 적용되도록 보장한다.

3. 부속서 I 에 규정된 평가절차는 활동의 변경이 현존활동의 강도에 있어서의 강화 또는 약화, 활동의 부가, 시설의 해체 또는 기타 방법으로부터 일어나는지에 관계없이 활동에 있어서의 어떠한 변화에도 적용된다.

4. 활동이 둘이상의 당사국에 의하여 공동으로 계획되는 경우, 관련당사국은 부속서 I 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절차의 이행을 조정할 자를 각각 1인씩 지명한다.

제 9 조 부속서

- 1. 이 의정서의 부속서들은 의정서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 2. 부속서 I 내지 IV에 추가되는 부속서는 남극조약 제9조에 따라서 채택되고 발효될 수 있다.
- 3. 부속서에 대한 수정과 개정은 남극조약 제9조에 따라서 채택되고 발효될 수 있다. 다만, 어떠한 부속서도 부속서 자체에 앞당겨 발효될 수정 및 개정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다.

4. 부속서와 위의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발효되는 수정 및 개정조항은, 부속서 자체가 수정 또는 개정의 발효에 관하여 달리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 수탁자가 계약 당사국의 승인통지를 접수하였을 때, 남극조약협약당사국이 아니거나 또는 이 의정서의 채택 당시 남극조약협약당사국이 아니었던 남극조약 계약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5. 부속서가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는 제18조 내지 제20조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에 따른다.

제 10 조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

1.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는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과학적 및 기술적 자문에 의존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이 의정서의 제규정에 따라 남극환경 및 이에 부속되고 관련된 생태계의 포괄적 보호를 위한 일반정책을 규정한다.

나. 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하여 남극조약 제9조에 따른 제조치를 채택한다.

2.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는 위원회의 작업을 재검토하고 남극탐사과학위원회의 자문뿐 아니라 위의 제1항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원회의 자문과 권고에 따른다.

제 11 조 환경보호위원회

1. 환경보호위원회를 설립한다.

2. 각 당사국은 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고 전문가와 자문위원을 대동할 수 있는 대표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3. 위원회에서 읍서버 지위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어떠한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에게도 개방된다.

4. 위원회는 남극탐사과학위원회 위원장과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과학위원회 의장을 회기시 읍서버로서 참가하도록 초청한다. 위원회는 또한 남극조약협의당사국 회의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작업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른 과학적·환경적 및 기술적 관련 기구들을 읍서버로서 회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초청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매 회기에 관한 보고서를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 제출한다. 보고서는 회기에서 심의된 모든 문제들을 다루며 제기된 견해들을 반영한다. 보고서는 당사국과 회기에 참가한 읍서버들에게 배포되고 그후 공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6. 위원회는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여 그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제 12 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의 기능은 부속서의 운영을 포함한 이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서의 심의를 위하여 당사국에게 자문을 제공하고 권고문을 작성하는 것과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가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는 것이다. 특히,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가. 이 의정서에 따라 취하여진 조치의 유효성

나. 그러한 조치들을 새롭게 하거나 강화하거나 또는 달리 향상시킬 필요성

다. 적절한 경우 추가부속서를 포함한 추가조치에 대한 필요성

라. 제8조 및 부속서 I 에 규정된 환경영향평가절차의 적용과 이행

마. 남극조약지역에서의 활동의 환경적 영향을 최소화 또는 완화하는 수단

- 바. 환경비상사태에 있어서의 대응조치를 포함한 긴급조치를 요구하는 상황을 위한 절차
- 사. 남극보호구역체제의 운영과 정교화
- 아. 조사보고서의 형식 및 조사수행을 위한 점검목록을 포함한 조사절차
- 자. 환경보호에 관련된 정보의 수집·보관·교환 및 평가
- 차. 남극환경의 상태
- 카. 이 의정서의 이행과 관련된, 환경감시를 포함한, 과학적 연구의 필요성

2.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위원회는 적절한 경우 남극탐사 과학위원회,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 과학위원회 및 다른 과학적·환경적 및 기술적 관련 기구들과 협의한다.

제 13 조 이 의정서의 준수

1.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신의 권한안에서 법령·행정조치 및 강제조치의 채택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각 당사국은 누구도 이 의정서에 반하는 활동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유엔헌장과 합치하는 적절한 노력을 경주한다.
3. 각 당사국은 위의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하는 제조치를 다른 모든 당사국에게 통고한다.
4.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목적과 원칙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활동에 대하여 다른 모든 당사국들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5.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는 이 의정서의 당사국이 아닌 국가 또는 그러한 국가의 대리인·대행기관·자연인 또는 법인·선박·비행기 또는 그밖의 다른 운송수단에 의하여 취하여지는 활동중 이 의정서의 목적과 원칙의 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대하여 그 국가의 주의를 환기시킨다.

제 14 조
조 사

1. 남극환경 및 이에 부속되고 관련된 생태계의 보호를 촉진하고 이 의정서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남극조약협약 당사국들은 남극조약 제7조에 따라서 구성될 감시원에 의한 조사를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준비한다.

2. 감시원은 다음을 말한다.

가. 남극조약협약 당사국의 국민으로서 그러한 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옵서버

나. 남극조약협약 당사국회의에 의하여 확립된 절차에 따라 조사를 수행
하기 위하여 남극조약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지명된 감시원

3. 당사국은 조사를 수행하는 감시원과 충분히 협력하여야 하고, 조사를 수행하는 동안 감시원이 이 의정서에 따라 요구하는 모든 보존기록 뿐 아니라 남극조약 제7조제3항에 의하여 조사가 개방된 기지·설치물·장비·선박 및 비행기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4. 조사보고서는 그 보고서에 의하여 다루어진 기지·설치물·장비·선박 또는 비행기가 소속된 당사국에게 송부된다. 그러한 당사국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가 주어진 후에, 보고서 및 의견진술서는 차기 남극조약협약 당사국회의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모든 당사국과 위원회에 배포되고 그 후에는 공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 15 조
비상 대응 조치

1. 남극조약지역에서의 환경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 사항에 동의한다.

- 가. 과학적 연구계획·관광 그리고 보급 및 지원활동을 포함하여 남극조약 제7조제5항에 따라 사전통보가 요구되는 남극조약지역안에서의 다른 모든 정부활동 및 비정부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긴급사태에 대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조치의 제공
 - 나. 남극환경 또는 이에 부속되고 관련된 생태계에 해로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계획의 수립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한다.
- 가. 그러한 비상계획의 작성과 이행에의 협력
 - 나. 환경비상사태의 즉각적인 통고 및 협력적 대응을 위한 절차 수립
3. 이 조를 이행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적절한 국제기구의 자문을 요청한다.

제 16 조 배상책임

남극환경 및 이에 부속되고 관련된 생태계의 포괄적 보호를 위한 이 의정서의 목적과 합치하도록 당사국은 남극조약지역에서 일어나고 이 의정서에 의하여 다루어진 활동으로부터 일어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관련한 규칙과 절차를 상세히 규정할 것을 약속한다. 그러한 규칙과 절차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채택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부속서에 포함된다.

제 17 조 당사국에 의한 연례보고

1.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의 이행을 위하여 취한 조치에 대하여 연례적으로 보고한다. 그러한 보고서는 제13조제3항에 따라 행하여진 통고와 제15조에 따라 작성된 비상계획, 그리고 정보의 배포와 교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이 의정서에 따라 요구된 다른 통고와 정보를 포함한다.

2. 위의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는 모든 당사국과 위원회에 배포되고 차기 남극조약협약당사국회의에서 심의되며, 공개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다.

제 18 조 분쟁해결

이 의정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분쟁당사국은 당사국중 어느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교섭·심사·조정·화해·중재·사법적 해결 또는 분쟁당사국이 합의하는 다른 평화적 수단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가능한 조속히 그들 상호간에 협의한다.

제 19 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1. 각 당사국은 이 의정서를 서명·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하는 때 또는 그 후 언제든지 이 의정서의 제7조·제8조·제15조, 부속서에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의 제규정, 그리고 이러한 제조항 및 규정에 관련되는 한 제13조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의 해결을 위한 다음의 수단중 하나 또는 양자를 서명에 의한 선언으로 선택할 수 있다.

가. 국제사법재판소

나. 중재재판소

2. 위의 제1항에 따라 행하여진 선언은 제18조 및 제20조제2항의 운영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위의 제1항에 따른 선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선언이 더 이상 자신에게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는 당사국은 중재재판소의 권한을 수락한 것으로 본다.

4. 분쟁당사국이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동일한 수단을 수락하였을 경우에는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분쟁은 그러한 절차에만 회부될 수 있다.

5. 분쟁당사국이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동일한 수단을 수락하지 아니하였거나 두 가지 수단을 모두 받아들였을 경우에는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분쟁은 중재재판소에만 회부될 수 있다.

6. 위의 제1항에 따라 행하여진 선언은 선언이 조건에 따라 종료될 때까지 또는 서면에 의한 취소의 통지가 수탁자에게 기탁된 후 3월까지 효력을 가진다.

7. 새로운 선언, 취소의 통지 또는 선언의 종료는 분쟁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어떠한 방식으로든 국제사법재판소 또는 중재재판소에서 진행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8. 이 조에 규정된 선언과 통지는 수탁자에게 기탁되고 수탁자는 모든 당사국에게 그 사본을 송부한다.

제 20 조 분쟁해결절차

1. 제7조·제8조·제15조 또는 부속서가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의 규정 또는 이러한 제조항 및 규정에 관련되는 한, 제13조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분쟁의 당사국이 제18조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12월 이내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에 합의하지 아니한 경우, 분쟁은 분쟁당사국중 어느 일방의 요청에 의하여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의하여 결정된 절차에 따른 해결에 회부된다.

2. 중재재판소는 남극조약 제4조의 범위안에 있는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서도 결정을 내리거나 판결할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다. 뿐만 아니라, 이 의정서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사법재판소나 분쟁당사국간의 분쟁을 해결할 목적으로 설립된 다른 재판소에 남극조약 제4조의 범위안에 있는 어떠한 문제에 대하여도 결정을 내리거나 달리 판결할 권한이나 관할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 21 조
서 명

이 의정서는 1991년 10월 4일 마드리드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고 그 이후에는 워싱턴에서 1992년 10월 3일까지 남극조약 체약당사자인 국가에게 개방된다.

제 22 조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1. 이 의정서는 서명국에 의하여 비준·수락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1992년 10월 3일 이후 이 의정서는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인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3.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의 문서는 수탁자로 지정된 미합중국정부에 기탁된다.
4.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이 우선 이 의정서를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남극조약협의당사국들은 그러한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이 이 의정서의 발효일 이후 남극조약 제9조제2항에 따라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에 참가할 대표를 임명하는 자격과 관련하여 행하는 통고에 효과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제 23 조
발 효

1. 이 의정서는 이 의정서가 채택되는 일자에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인 모든 국가에 의하여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의 문서가 기탁된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2. 이 의정서의 발효일이후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의 문서를 기탁하는 각 남극조약 체결당사국에 대하여, 이 의정서는 그러한 기탁 후 3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을 발생한다.

제 24 조
유 보

이 의정서에 대한 유보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제 25 조
수정 또는 개정

1. 제9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이 의정서는 남극조약 제12조제1항가호 및 나호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2. 이 의정서의 발효일부터 50년이 경과한 후 어떤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이 의정서의 운영을 재검토하기 위한 회의의 개최를 수탁자에 대한 통보에 의하여 요청하는 경우, 그러한 회의는 실행할 수 있는 한 조속히 개최된다.

3. 위의 제2항에 따라 소집된 재검토회의에서 제안된 수정 또는 개정은 이 의정서의 채택당시 남극조약협의당사자이었던 국가의 4분의 3을 포함한 당사국의 과반수에 의하여 채택된다.

4. 위의 제3항에 따라 채택된 수정 또는 개정은 이 의정서의 채택당시 협의 당사국이었던 모든 국가의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을 포함한 협의당사국 4분의 3의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시에 발효된다.

5. 가. 제7조와 관련, 남극광물자원활동이 수락될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수락될 수 있다면 어떠한 조건하에서인지를 결정하기 위한 합의된 수단을 포함하여 남극광물자원활동에 관한 구속력있는 법적 체제가 발효되지 아니

하는 한, 제7조에 포함된 남극광물자원활동에 관한 금지는 지속된다. 이러한 체제는 남극조약 제4조에 규정된 모든 국가의 이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그에 포함된 원칙들을 적용한다. 그러므로, 제7조에 대한 수정 또는 개정이 위의 제2항에 규정된 재검토회의에서 제안되는 경우, 그 수정 또는 개정은 그러한 구속력 있는 법적 체제를 포함한다.

나. 그러한 수정 또는 개정이 채택된 날부터 3년이내에 발효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떠한 당사국도 그 이후 언제라도 이 의정서로부터의 탈퇴를 수탁자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그러한 탈퇴는 수탁자가 통지를 접수한 때부터 2년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 26 조 수탁자에 의한 통고

수탁자는 모든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에게 다음사항을 통고한다.

- (가) 이 의정서의 서명과 비준·수락·승인 또는 가입 문서의 기탁
- (나) 이 의정서 및 추가되는 부속서의 발효일
- (다) 이 의정서의 수정 또는 개정의 발효일
- (라) 제19조에 따른 선언 및 통지의 기탁
- (마) 제25조제5항나호에 따라 접수된 통지

제 27 조 정본 및 유엔에의 등록

1. 각각 동등하게 정본인 영어·불어·러시아어 및 스페인어로 작성된 이 의정서는 미합중국정부의 문서보관소에 기탁되며 미합중국정부는 모든 남극조약 체약당사국에게 이 의정서의 인증사본을 적절히 송부한다.

2. 이 의정서는 유엔헌장 제102조에 따라 수탁자에 의하여 등록된다.

의정서 부록

중재재판

제 1 조

1. 중재재판소는 이 부록을 포함한 의정서에 따라서 구성되고 기능한다.
2. 이 부록에 규정된 총장은 상설중재재판소의 사무총장을 말한다.

제 2 조

1. 각 당사국은 3인이상의 중재관을 지명할 권한을 가진다. 이들 중 적어도 1인은 이 의정서가 동 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한 3월이내에 지명된다. 각 중재관은 남극문제에 경험이 있고 철저한 국제법지식과 공정성·능력 및 성실성에 대한 최고의 명성을 지닌다. 이렇게 지명된 자의 성명은 중재관 명부를 구성한다. 각 당사국은 동 명부에 항상 최소한 중재관 1인의 성명을 유지한다.
2. 아래의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당사국이 지명한 중재관은 5년동안 명부에 남아있고 추가 5년의 임기로 동 당사국에 의한 재지명에 피선될 자격이 있다.
3. 중재관을 지명한 당사국은 동 중재관의 성명을 명부에서 철회할 수 있다. 중재관이 사망하거나 또는 어떠한 이유로 인하여 당사국이 지명한 중재관의 성명을 명부에서 철회하는 경우, 문제의 중재관을 지명한 당사국은 즉시 총장에게 통보한다. 명부에서 성명이 철회된 중재관은 중재재판소의 소송을 완결시킬 때까지 지명된 중재재판소에서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4. 총장은 이 조에 따라 지명된 중재관의 최신명부가 유지되도록 확보한다.

제 3 조

1. 중재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지명될 3인의 중재관으로 구성된다:

가. 소송을 개시한 분쟁당사국은 제2조에 규정된 명부에서 자국민인 1인의 중재관을 임명한다. 이 임명은 제4조에 규정된 통보에 포함된다.

나. 동 통보의 접수로부터 40일 이내에 타방 분쟁당사국은 제24조에 규정된 명부에서 자국민인 제2의 중재관을 임명할 수 있다.

다. 제2의 중재관 임명으로부터 60일 이내에 분쟁당사국은 합의에 의하여 제2조에 규정된 명부에서 제3의 중재관을 임명한다. 제3의 중재관은 분쟁당사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분쟁당사국에 의하여 지명된 사람이 아니고 처음 2인의 중재관 중 어느 1인과의 동일한 국적이 아니다. 제3의 중재관이 중재재판소의 의장이 된다.

라. 만일 제2의 중재관이 규정된 기간내에 임명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분쟁당사국이 규정된 기간내에 제3의 중재관 임명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재관 또는 중재관들은 분쟁당사국의 요청과 동 요청이 접수된 30일 이내에 제2조에 규정된 명부와 위의 나호 및 다호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국제사법재판소장에 의하여 지명된다. 이 호에 의하여 부여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국제사법재판소장은 분쟁당사국과 협의한다.

마. 만일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위의 라호에서 부여된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나 또는 분쟁당사국의 국민인 경우에는 재판소의 부소장이 그 기능을 수행한다. 다만, 부소장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없거나 또는 분쟁당사국의 국민인 경우에는 분쟁당사국의 국민이 아니고 직무가능한 다음 최선임자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2. 중재관의 공석은 최초의 임명을 위하여 규정된 방식에 의하여 보충된다.

3. 2개 이상의 당사국이 관련된 분쟁에서는 동일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당사국 이외의 제1항나호에 명시된 기간내에 합의에 의하여 1인의 중재관을 임명한다.

제 4 조

소송을 제기한 분쟁당사국은 이를 서면으로 타방 분쟁당사국 또는 분쟁당사국들과 총장에게 통보한다. 동 통보시에는 통보가 기초하고 있는 주장과 근거를 진술한다. 총장은 모든 당사국에게 상기 통보를 전달한다.

제 5 조

1. 분쟁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중재는 중재재판소 기록이 유지되는 헤이그에서 진행된다. 중재재판소는 자체의 절차규칙을 채택한다. 동 규칙은 각 분쟁당사국이 사건을 진술하고 제시할 충분한 기회를 가지도록 보장하고 또한 소송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보장한다.

2. 중재재판소는 분쟁과 관련된 반소를 심리하고, 판정할 수 있다.

제 6 조

1. 중재재판소는 의정서하에서 동 재판소가 일견 관할권을 가진다고 고려하는 경우,

가.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의하여 분쟁당사국 각각의 권리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잠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나. 남극환경 또는 이에 부속되거나 관련된 생태계에 대한 중대한 훼손의 방지를 위하여 동 상황에서 적절한 것으로 여겨지는 잠정조치를 규정할 수 있다.

2. 분쟁당사국은 제9조의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 위의 제1항나호상에 규정된 잠정조치를 즉각적으로 준수한다.

3. 의정서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분쟁당사국은 제4조에 따라 타방 분쟁당사국 또는 당사국들 및 총장에게 통보함으로써 언제라도 중재 재판소가 비상 잠정조치를 지시하거나 규정하는 예외적인 긴급한 문제로 이 조에 따라 설치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동 경우에 중재재판소는 제3조에 따라 가능한 한 조속히 설치된다. 다만 제3조제1항나호·다호 및 라호에서의 기간이 각 경우에 있어서 14일로 축소되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중재재판소는 의장의 선임으로부터 2월 이내에 비상 잠정조치의 요청에 대한 판결을 내린다.

4. 위의 제3항에 따라 행한 비상잠정조치의 요청에 대한 중재재판소의 판결이 있는 후 분쟁의 해결은 의정서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진행된다.

제 7 조

중재재판소의 판정에 의하여 전체적으로든 또는 개별적으로든 본질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을 가졌다고 믿는 당사국은 중재재판소가 달리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는 한, 당해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제 8 조

분쟁당사국은 중재재판소의 작업을 촉진시키고 특히 자신들의 법에 따라 그리고 자신들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재판소에 모든 관련 문서와 정보를 제공하며 필요시 증인 또는 전문가를 불러 증거를 얻을 수 있도록 한다.

제 9 조

분쟁당사국 중 일방이 중재재판소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사건을 항변하지 못하는 경우 분쟁의 여하한 타방 당사국도 중재재판소에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정을 내릴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 10 조

1. 중재재판소는 이 협약 및 이 협약과 상반되지 아니하는 그밖의 다른 적용 가능한 국제법규에 근거하여 중재재판소에 의뢰된 분쟁을 판정한다.

2. 분쟁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중재재판소는 형평과 선의 원칙에 따라 제기된 분쟁을 판정할 수 있다.

제 11 조

1. 중재재판소는 판정을 내리기에 앞서, 중재재판소가 당해 분쟁에 대하여 권한을 가지며 소송 또는 반소가 사실과 법률에 충분히 근거하고 있음을 충족시킨다.

2. 판정에는 판정에 대한 이유서가 첨부되어야 하고 이를 모든 당사국에게 전달하여야 할 총장에게 송부된다.

3. 판정은 최종적이고 분쟁당사국과 소송에 참가한 모든 당사국을 구속하며, 강제없이 이행된다. 중재재판소는 분쟁당사국 또는 소송에 참가한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중 판정을 해석한다.

4. 판정은 동 특정 사건을 제외하고는 구속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5. 중재재판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 중재판의 보수를 포함한 중재재판소의 비용은 분쟁당사국이 동일하게 부담한다.

제 12 조

제5조·제6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판정을 포함한 중재재판소의 모든 판정은 표결에서 기권할 수 없는 중재판들의 다수결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제 13 조

1. 이 부록은 남극조약 제9조제1항에 따라서 채택되는 조치에 의하여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동 조치가 달리 상술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또는 개정은 하나 이상의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수탁자에게 아래의 기간내에 동 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거나 또는 동 조치를 승인할 수 없음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조치가 채택된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종료 1년후에 승인한 것으로 보고 발효된다.

2. 위의 제1항에 따라 발효하는 이 부록의 어떠한 수정 또는 개정도 수탁자가 그밖의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승인 통고를 접수하였을 때부터 그밖의 다른 당사국에게 발효한다.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부속서 I

환경 영향 평가

제 1 조 예비단계

1. 의정서 제8조에 규정된 제안된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활동이 시작되기 전에 적절한 국내절차에 따라서 검토된다.
2. 어떤 활동이 사소하거나 또는 일시적인 것이하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결정되면, 동 활동은 즉시 수행될 수 있다.

제 2 조 초기 환경평가

1. 어떤 활동이 사소하거나 또는 일시적인 것이하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포괄적 환경평가가 제3조에 따라 준비되고 있지 아니하다면, 초기 환경평가가 준비된다. 초기 환경평가에는 제안된 활동이 사소하거나 또는 일시적인 것이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를 평가할 충분히 상세한 사항과 다음이 포함된다.

- 가. 활동의 목적·위치·지속기간 및 강도를 포함한 제안된 활동에 대한 기술
- 나. 제안된 활동에 대한 대안과 누적적 영향에 대한 고려를 포함하여 현존하고 알려진 계획된 활동의 견지에서 활동이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고려

2. 초기 환경평가에서 제안된 활동이 단지 사소하거나 또는 일시적인 영향만을 미칠 것으로 나타난다면, 감시를 포함한 적절한 절차가 활동의 영향을 평가하고 입증하기 위하여 준비되어 있다는 조건하에 동 활동은 계속될 수 있다.

제 3 조
포괄적 환경평가

1. 계획된 활동이 사소하거나 또는 일시적인 것이상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초기환경평가에 나타나거나 또는 달리 결정된다면 포괄적 환경평가가 준비된다.
2. 포괄적 환경평가는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제안된 활동의 목적·위치·지속기간·강도 및 실행되지 아니한 대안을 포함한 활동에 대한 가능한 대안과 그 대안들의 중요성에 대한 기술
 - 나. 예측된 변화와 비교될 초기환경평가 상태에 대한 기술과 제안된 활동이 없을 경우 미래의 환경관련 상태에 대한 예측
 - 다. 제안된 활동의 영향을 예측하기 위하여 사용된 방법과 자료에 대한 기술
 - 라. 제안된 활동의 있을 수 있는 직접적 영향의 성질·정도·지속기간과 강도에 대한 평가
 - 마. 제안된 활동의 존재 가능한 간접적 또는 2차적인 영향에 대한 고려
 - 바. 현존 활동과 그밖의 다른 알려진 계획된 활동의 견지에서 제안된 활동의 누적적 영향에 대한 고려
 - 사. 제안된 활동의 영향을 감소 또는 완화시키고 예상되지 아니한 영향을 탐지하기 위하여 취해질 수 있으며 또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사고를 처리하고 활동의 부정적 영향을 조기 경고할 수 있는 감시 계획을 포함한 조치의 확인
 - 아. 제안된 활동의 피할 수 없는 영향의 확인
 - 자. 제안된 활동이 과학연구수행과 그밖의 다른 현존하는 사용목적 및 가치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고려
 - 차. 이항에서 요구되는 정보 수집 과정에서 만나는 지식과 불확실성의 차이 확인

카. 이항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전문적이지 아니한 요약
다. 포괄적 환경평가를 준비한 사람 또는 기구의 성명과 주소 및 그에 대한
논평을 보낼 곳의 주소

3. 포괄적 환경평가안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고 또한 모든 당사국에게 논평을
위하여 배포되며 당사국은 그것을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토록 조치한다. 논평의 접수
위하여 90일의 기간이 부여된다.

4. 포괄적 환경평가안은 적절한 검토를 위하여 적어도 차기 남극조약협의
당사국회의 개최 120일전에 당사국에 배포됨과 동시에 위원회에도 송부된다.

5. 남극조약 지역에서 제안된 활동을 계속 수행하려는 어떠한 최종 결정도,
포괄적 환경평가안이 남극조약협의 당사국회의에서 위원회의 조언에 따라 검토되지
아니하는 한 내려지지 아니한다. 다만, 제안된 활동을 수행하려는 결정이 이항의
운용을 통하여 포괄적 환경평가안의 배포일부터 15월이상 지체하지 아니한다는
조건하에서이다.

6. 최종적인 포괄적 환경평가는 포괄적 환경평가안에 대하여 접수된 논평을
언급·포함 또는 요약한다. 최종적인 포괄적 환경평가와 이와 관련된 어떤 결정에
대한 통지, 그리고 제안된 활동의 이점과 관련하여 예견되는 영향의 중요성에
대한 어떠한 평가도 모든 당사국에게 배포된다. 또한 당사국은 남극조약지역에서
제안된 활동이 시작되기 적어도 60일전에 이들을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하도록 한다.

제 4 조 포괄적 환경평가에 기초한 결정

제3조가 적용되는 어떠한 제안된 활동이 계속될 것인지 그리고 계속된다면 원래의
형태인지 또는 수정된 형태인지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그밖의 다른 관련 고려사항
뿐만 아니라 포괄적 환경평가에 기초한다.

제 5 조 감 시

1. 포괄적 환경평가가 완결된후 계속되는 어떤 활동의 영향을 평가하고 입증하기 위하여 주요한 환경 지표에 대한 적절한 감시를 포함한 절차가 준비된다
2. 위의 제1항과 제2조제2항에 규정된 절차는 특히 다음을 위하여 활동의 영향에 대한 규칙적이고 입증할 수 있는 기록을 제공하도록 계획된다.
 - 가. 그러한 영향이 이 의정서와 조화를 이루는 정도에 대한 평가의 가능
 - 나. 영향을 최소화 또는 완화시키는데 유용한 정보와 적절한 경우 활동의 정지·취소 또는 수정 필요성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 6 조 정보의 배포

1. 다음 정보는 당사국에게 배포되고 위원회에 송부되며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 가. 제1조에 규정된 절차에 대한 기술
 - 나. 제2조에 따라 준비된 어떠한 초기환경평가와 평가 결과 취하여진 결정에 대한 연간표
 - 다. 제2조제2항 및 제5조에 따라 준비된 절차를 통하여 획득한 중요한 정보와 그 결과 취하여진 어떤 조치
 - 라. 제3조제6항에 규정된 정보
2. 제2조에 따라 준비된 어떠한 초기환경평가도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제 7 조 긴급한 경우

1. 이 부속서에 규정된 절차를 완결하지 아니한 상황에서도 활동을 필요로 하는 인간의 생명, 선박과 항공기 또는 고가 장비와 설비의 안전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긴급한 경우에는 이 부속서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긴급하지 아니하였다면 포괄적 환경평가에 대한 준비를 필요로하였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긴급한 경우에 취한 활동에 대한 통지는 즉시 당사국에 배포되고 위원회에 보내진다. 그리고 수행된 활동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활동이 수행된 90일 이내에 행하여진다.

제 8 조 수정 또는 개정

1. 이 부속서는 남극조약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되는 조치에 의하여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동 조치가 달리 상술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또는 개정은 하나 이상의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수탁자에게 아래의 기간내에 동 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거나 또는 동 조치를 승인할 수 없음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조치가 채택된 남극조약협의당사국회의 종료 1년후에 승인된 것으로 보고 발효된다.

2. 위의 제1항에 따라 발효되는 이 부속서의 어떠한 수정 또는 개정도 수탁자가 그밖의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승인 통고를 접수하였을 때부터 그밖의 다른 당사국에게 발효한다.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부속서 II

남극동식물군 보존

제 1 조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을 위하여,

가. "토착포유동물"이라 함은 포유강에 속하고 남극조약지역에 고유하거나 또는 자연이주를 통하여 계절적으로 남극조약지역에 출현하는 어떤 종의 구성원을 말한다.

나. "토착새"라 함은 남극조약지역에 고유하거나 또는 자연이주를 통하여 계절적으로 남극조약지역에 출현하는 알의 시기를 포함한 생활사의 어떤 단계에 있는 조류강의 어떤 종의 구성원을 말한다.

다. "토착식물"이라 함은 남극조약지역에 고유한 생활사의 어떤 단계에 있는 종자 또는 그밖의 다른 번식기를 포함한 선대류·지의류·균류 및 해조류를 포함한 어떤 육상 또는 담수산 식물을 말한다.

라. "토착무척추동물"이라 함은 남극조약지역에 고유한 생활사의 어떤 단계에 있는 어떤 육상 또는 담수산 무척추동물을 말한다.

마. "적정당국"이라 함은 당사국이 이 부속서하에서 허가서 발행권한을 부여한 어떤 개인 또는 기구를 말한다.

바. "허가서"라 함은 적정당국에 의하여 서면으로 발행된 공식허가를 말한다.

사. "포획" 또는 "획득"이라 함은 토착포유류 또는 새를 살해하거나 상처를 입히거나 생포하거나 길들이거나 또는 괴롭히거나 또는 지역적 분포 또는 번성함에 심하게 영향을 줄 정도로 토착식물의 양을 제거하거나 손상을 입히는 것을 말한다.

아. "유해한 간섭"이라 함은 다음을 말한다.

- (1) 새와 물개의 군집을 방해할 수 있는 헬리콥터 또는 그밖의 다른 항공기의 이·착륙
- (2) 새와 물개의 군집을 방해하는 호버크라프트와 소형배틀 포함한 차량 또는 선박의 이용
- (3) 새와 물개의 군집을 방해하는 폭탄 또는 화기의 사용
- (4) 새의 부화 또는 털갈이 또는 새와 물개의 군집에 대한 인간의 의도적 방해
- (5) 항공기 착륙·차량운전·도보 또는 다른 수단에 의한 토착 육상 식물의 군집을 심하게 훼손
- (6) 토착포유동물·새·식물 또는 무척추동물의 어떤 종이나 또는 개체군의 서식환경에 심각한 변형을 초래하는 어떤 활동

자. "국제포경규제협약"이라 함은 1946년 12월 2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협약을 말한다.

제 2 조 긴급한 경우

1. 이 부속서의 규정은 인간의 생명, 선박과 항공기 또는 고가 장비와 설비의 안전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되는 긴급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긴급한 경우에 취하여진 활동에 대한 통지는 모든 당사국에게 즉시 배포된다.

제 3 조
토착 동식물군 보호

1. 허가서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획득 또는 유해한 간섭은 금지된다.
2. 동 허가서는 언제, 어디서 그리고 누구에 의하여 수행될 것인지를 포함한 허가된 활동을 상술해야 하고 다음의 경우에만 발급된다.
 - 가. 과학연구 또는 과학정보를 위한 표본의 제공
 - 나. 박물관·식물표본실·동물원 및 식물원 또는 그밖의 다른 교육적 또는 문화적 기구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표본의 제공
 - 다. 위의 가호 및 나호에 의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할 수 없는 과학활동 또는 과학지원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따른 결과의 제공
3. 동 허가서는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발급이 제한된다.
 - 가. 상기 제2항에 규정된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엄격히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토착 포유동물·새 또는 식물이 포획되지 아니할 것
 - 나. 단지 소수의 토착 포유동물 또는 새만이 살해되도록 하고 그밖에 허용된 포획과 조화틀 이루어 그 다음 계절에 자연 번식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보다 어떤 경우에도 더 많은 토착 포유동물 또는 새가 특정 개체군으로부터 살해되지 아니할 것
 - 다. 그들의 생존에 필수적인 서식지 및 남극조약지역안에 존재하는 생태계의 균형 뿐 아니라 종의 다양성이 유지될 것
4. 이 부속서의 부록에 실려있는 토착포유동물·새 및 식물의 어떤 중도 특별보호종으로 지정되고 당사국에 의한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5. 허가서는 포획이 다음의 경우의에는 특별보호종을 포획하도록 발행되지 아니한다.
 - 가. 엄격한 과학목적

나. 동 종 또는 특정지역 개체군의 생존 또는 회복을 위태롭게 하지 아니함.
다. 적절한 경우 치명적이지 아니한 포획술의 사용

6. 토착 포유동물과 새에 대한 모든 포획은 실행할 수 있는 한 최소한의 통증과 고통을 가하는 방식으로 행한다.

제 4 조 비토착종·기생충 및 질병의 반입

1. 남극조약지역에 토착이 아닌 동물 또는 식물의 어떠한 종도 허가서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극조약지역의 육지·빙붕 또는 해양으로 반입되지 아니한다.

2. 개는 육지 또는 빙붕으로 반입되지 아니한다. 현재 동 지역에 있는 개는 1994년 4월 1일까지 반출한다.

3. 위의 제1항의 허가서는 이 부속서의 부록B에 실려 있는 동물과 식물만의 반입을 허용하도록 발행되고 종·수량 그리고 적절하다면 연령·성 크리고 탈출 및 토착 동식물군과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질 예방책을 상술한다.

4. 위의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허가서가 발행된 어떠한 식물 또는 동물도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남극조약지역으로부터 제거되거나, 소각 또는 토착 동식물군에 대한 위협을 제거하는 동등하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처리된다. 허가서는 이 의무를 명시한다. 남극조약지역으로 반입된 동 지역에 토착이 아닌 후손을 포함한 그밖의 다른 식물 또는 동물은 그들이 토착 동식물군에게 위협을 가하지 아니한다고 결정되지 아니한다면 번식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각 또는 동등하게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거 또는 처리된다.

5. 어떠한 생존동물도 식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되지 아니하고 또한 모든 식물과 동물의 일부 및 제품이 주의깊게 통제된 조건하에 의정서의 부속서Ⅲ과 이 부속서의 부록C에 따라 처리된다면, 이 조의 어떠한 내용도 남극조약지역으로 식품을 반입하는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6. 각 당사국은 토착 동식물군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이러스·박테리아·기생충·효모 및 균류와 같은 미생물의 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 부속서의 부록C에 있는 것을 포함한 예방책을 취할 것을 요청한다.

제 5 조 정 보

각 당사국은 특히 금지된 활동을 설명하고 있고 남극조약지역에 있거나 또는 동 지역으로 들어갈 예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보호종과 관련보호지역에 관한 목록을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동인들이 이 부속서의 제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제 6 조 정보의 교환

1. 당사국은 다음을 준비한다.

- 가. 남극조약지역에서 매년 포획된 토착포유동물·새 또는 식물의 각종의 수 또는 양에 관련되는 허가서의 기록을 포함한 기록과 통계 자료의 수집 및 교환
- 나. 남극조약지역에 있는 토착포유동물·새·식물 및 무척추동물의 상태에 관한 정보와 종 또는 개체군의 보호필요 정도에 관한 정보의 획득 및 교환
- 다. 이 정보가 아래의 제2항에 따라 당사국에 의하여 제출되는 공동 양식의 작성

2. 각 당사국은 매년 11월말 이전에 위원회 뿐 아니라 다른 당사국에게 지난해 7월 1일부터 당해 6월 30일까지 위의 제1항에 따라 취한 조치와 이 부속서 하에서 발급된 허가서의 수와 성질에 관하여 통보한다.

제 7 조
남극조약체제 외 다른 협약과의 관계

이 부속서의 어떠한 내용도 국제포경규제협약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손상시키지 아니한다.

제 8 조
재검토

당사국은 남극 동식물군의 보존을 위한 조치를 계속 재검토하고 위원회로부터의 어떠한 권고도 고려한다.

제 9 조
수정 또는 개정

1. 이 부속서는 남극조약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되는 조치에 의하여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동 조치가 달리 상술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또는 개정은 하나이상의 남극조약협의당사국이 수탁자에게 아래의 기간내에 동 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거나 또는 동 조치를 승인할 수 없음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조치가 채택된 남극조약협의 당사국회의 종료 1년후에 승인된 것으로 보고 발효된다.

2. 위의 제1항에 따라 발효되는 이 부속서의 어떠한 수정 또는 개정도 수탁자가 그밖의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승인 통고를 접수하였을 때부터 그밖의 다른 당사국에게 발효된다.

부속서의 부록

부록 A 특별보호종

털가죽물개속에 속하는 모든 종, 로스물개

부록 B 동물과 식물의 반입

다음 동물과 식물은 이 부속서 제4조하에서 발급되는 허가서에 따라 남극조약 지역으로 반입될 수 있다.

가. 관상식물

나. 병원체·박테리아·효모 및 균류를 포함한 실험실 동물과 식물

부록 C 미생물 반입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책

1. 어떠한 살아있는 가금 또는 그밖의 다른 살아있는 새도 남극조약지역으로 반입되지 아니한다. 요리할 수 있도록 준비된 가금은 남극조약지역으로 선적하기 위하여 포장되기 전에 뉴캐슬병·결핵·효모 감염과 같은 질병의 흔적을 찾기 위하여 검사를 받는다. 소비되지 아니한 어떠한 가금 또는 부분도 남극조약지역으로부터 제거되거나 또는 소각이나 토착 동식물군에 대한 위험을 제거하는 동등한 수단으로 처리된다.

2. 멸균되지 아니한 토양의 반입은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피한다.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부속서Ⅲ

폐기물 처리 및 관리

제 1 조 일반적 의무

1. 이 부속서는 과학연구계획에 따라 남극조약지역에서 취하여진 활동·관광 및 보급과 지원활동을 포함한 남극조약 제7조제5항하에서 사건 통보를 요구하는 남극조약지역에서의 다른 모든 정부와 비정부활동에 적용된다.
2. 남극조약지역에서 생산 또는 처리되는 폐기물의 양은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남극의 자연적 가치, 과학탐사 및 남극조약과 조화를 이루는 남극의 다른 용도에 대한 지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행할 수 있는 한 축소되어야 한다.
3. 폐기물의 재활용과 발생원의 감소 뿐 아니라 저장·처리 및 남극조약지역으로부터의 제거는 남극조약지역에서 활동을 계획하고 수행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고려사항이다.
4. 남극조약지역으로부터 제거된 폐기물은 실행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폐기물을 발생시킨 활동이 계획된 국가 또는 관련 국제협약에 따라 그러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준비가 이루어진 국가로 반송된다.
5. 육상에 있는 과거와 현재의 폐기물 처리장소와 남극활동의 폐쇄된 작업장은 동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와 동 장소의 사용자에 의하여 정화되어야 한다. 이 의무는 다음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 가. 유적지 또는 기념물로 지정된 어떤 구조물의 제거
 - 나. 어떤 실용적인 선택에 따라 행한 구조물 또는 폐기물의 제거가 그들을 현재의 위치에 그대로 두는 것보다 환경에 더욱 해로운 영향을 일으키는 상황에서 어떤 구조물 또는 폐기물의 제거

제 2 조
남극조약지역으로부터의 제거에 의한 폐기물 처리

1. 다음 폐기물은, 이 부속서가 발효한후 생성된다면, 그러한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 의하여 남극조약지역으로부터 제거된다.

가. 방사성 물질

나. 전지류

다. 액체 및 고체연료

라. 유해한 수준의 중금속 또는 맹독성 또는 유해하며 분해되지 아니하는 화합물을 내포한 폐기물

마. 폴리염화비닐·폴리우레탄·스티로폴·고무와 윤활유, 화학처리된 목재 및 조각하는 경우 유해물질을 발생시키는 첨가물이 포함된 제품

바. 폐기물용 봉지와 같은 저농도 폴리에틸렌 용기가 제3조제1항의 방법에 의해 조각된다면 이를 제외한 다른 모든 플라스틱 폐기물

사. 연료용 드럼통

아. 그밖의 다른 고체 불연성 폐기물

다만, 위의 사호 및 아호에 내포된 드럼통과 고체 불연성폐기물을 제거할 의무는 어떤 실용적인 선택에 따라 행한 등 폐기물의 제거가 그들을 현재의 위치에 그대로 두는 것보다 환경에 더욱 해로운 영향을 일으킬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2. 위의 제1항에 의하여 망라되지 아니한 액체 폐기물과 하수 및 생활폐수는 실행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등 폐기물을 생성시킨 자에 의하여 남극조약 지역으로부터 제거된다.

3. 다음의 폐기물은 조각시키거나 멸균 또는 살균시키지 아니한다면, 등 폐기물을 생성시킨 자에 의하여 남극조약지역으로부터 제거된다.

- 가. 반입동물 시체의 잔여물
- 나. 실험실에서 배양된 미생물과 식물병원균
- 다. 반입된 조류제품

제 3 조 소각에 의한 폐기물처리

1. 아래의 제2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여 남극조약지역으로부터 제거되지 아니한 제2조제1항에 규정된 것이 아닌 연소폐기물은 실행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유해물질의 배출을 감소시키는 소각로에서 연소시킨다. 특히 위원회와 남극탐사과학 위원회가 권고할 수 있는 어떠한 배출 기준과 장비의 지침도 고려된다. 동 소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체잔여물은 남극조약지역으로부터 제거된다.

2. 폐기물의 모든 야외소각은 실행할 수 있는 한 신속히 축소되고 1998/1999 말보다 늦지 아니한다. 그러한 축소가 완결되기 전에 야외소각에 의한 폐기물처리가 필요할 때는, 연소부산물의 침전을 제한하고 특히 남극조약하에서 보호를 받는 지역을 포함한 특별한 생물학적·과학적·역사적·미학적 또는 야생적 중요성을 가진 지역의 오염을 피하기 위하여 바람의 방향·속도 및 연소될 폐기물의 종류를 고려한다.

제 4 조 육상에서의 다른 폐기물처리

1.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제거 또는 처리되지 아니한 폐기물은 얼음이 없는 지역 또는 담수지역에서 처리되지 아니한다.

2. 제2조에 따라 남극조약지역으로부터 제거되지 아니한 오물, 생활폐수 및 그밖의 다른 액체폐기물은 실행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해빙, 빙봉 또는 빙판위에서 처리되지 아니한다. 다만, 내륙의 빙봉 또는 빙판에 위치한 기지에 의하여 만들어진 동 폐기물은, 그러한 처리가 실행가능한 유일한 선택인 경우, 깊은 얼음구덩이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동 구덩이는 얼음이 없는 지역 또는 높은 삭마 지역으로 끝나는 알려진 유빙선위에 위치하지 아니한다.

3. 야외캠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이 부속서에 따라 동 폐기물을 발생시킨 자에 의하여 실행할 수 있는 한 최대한도로 처리를 위한 지원기지 또는 선박으로 이동된다.

제 5 조 해양에서의 폐기물 처리

1. 하수와 생활폐수는 동 폐기물을 수용하는 해양환경의 흡수능력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건하에서 직접 해양으로 배출될 수 있다.

가. 초기의 회석과 신속한 분산을 위한 조건이 구비된 동 배출가능 장소를 찾아낸다.

나. 남극의 여름기간동안 주당 평균 거주자가 대략 30여명의 기지에서 발생한 동 폐기물의 많은 부분은 최소한 분쇄에 의하여 처리된다.

2. 그러한 처리가 주변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또한 해양에서의 동 처리가 의정서의 부속서Ⅳ에 따라 행하여진다면 회전생물접촉방법에 의한 처리 또는 유사한 과정에 의한 하수처리의 부산물은 해양으로 처리될 수 있다.

제 6 조 폐기물 보관

남극조약지역으로부터 제거 또는 달리 처리되는 모든 폐기물은 주위환경으로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보관된다.

제 7 조 금지품

어떠한 폴리염화 비페닐류, 멸균되지 아니한 토양, 폴리스티렌 구슬, 나무토막 또는 유사한 형태의 포장 또는 과학적·의학적 또는 위생상 목적외의 살충제는 남극조약지역의 육상·빙봉 또는 해양으로 반입되지 아니한다.

제 8 조 폐기물 관리계획

1. 남극조약지역에서 활동을 수행하는 각 당사국은 동 활동과 관련하여 폐기물을 기록하기 위한 기초로서 그리고 과학활동과 보급 및 지원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목적의 연구를 촉진시키기 위한 기초로서 폐기물처리 분류체제를 수립한다. 동 목적으로 생산된 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 가. 하수 및 생활폐수(1군)
- 나. 연료와 윤활유를 포함한 다른 액체폐기물과 화학제품(2군)
- 다. 연소될 고체(3군)
- 라. 그밖의 다른 고체폐기물(4군)
- 마. 방사성 물질(5군)

2. 남극환경에 대한 폐기물의 영향을 더욱 감소시키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폐기물 감축, 보관 및 처분이 포함되는 폐기물 관리계획을 준비하고 매년 재검토하며 갱신한다. 동 계획은 각각의 고정된 장소와 일반적으로는 야외 캠프 그리고 고정된 장소 또는 선박 운영의 일부분인 소형이 아닌 각각의 선박에 대한 현존 관리계획을 고려한 다음을 상술한다.

- 가. 현존 폐기물처리장소 및 폐기된 작업장소를 정확하기 위한 계획
- 나. 최종적 처리를 포함한 현재 및 계획된 폐기물 관리 준비

다. 폐기물 및 폐기물 관리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을 위한 현존 및 계획된 준비

라. 폐기물 및 폐기물 관리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밖의 다른 노력

3. 각 당사국은 실행할 수 있는 한 평단선·연료저장소·야외기지·추락항공기와 같은 과거에 활동이 행하여진 장소에 대한 목록을 동 정보가 상실되기 전에 준비한다. 그 결과 그러한 장소는 눈 화학 및 지의류 식물 또는 빙하중의 오염물질 분석과 같은 미래의 과학 프로그램을 계획하는데 고려될 수 있다.

제 9 조 폐기물 관리계획의 배포 및 재검토

1. 제8조에 따라 준비된 폐기물 관리계획, 동 계획의 이행에 관한 보고서 및 제8조제3항에 규정된 목록은 남극조약 제3조·제7조 및 동 조약 제9조하의 관련 권고문에 따라 연례정보교환에 포함된다.

2. 각 당사국은 각자의 폐기물 관리계획서 사본과 동 계획의 이행 및 재검토에 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송부한다.

3. 위원회는 폐기물 관리계획과 그에 관한 보고서를 재검토할 수 있고, 당사국의 고려를 위하여 계획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제안, 계획에 대한 수정 및 개선사항을 포함한 논평을 할 수 있다.

4. 당사국은 특히 이용가능한 폐기물을 적게 발생시키는 기술, 현존설비의 전환, 폐수에 대한 특별요구사항 및 적절한 처리와 배출 방법에 관한 정보교환 및 조언을 할 수 있다.

제 10 조
관리 관행

각 당사국은,

- 가. 폐기물관리계획을 발전시키고 감시할 폐기물 관리공무원을 임명한다.
야외에서는 이 책임이 각 장소에 있는 적정인에게 위임된다.
- 나. 탐사대원들의 작업이 남극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고 그들에게 이 부속서의 요구사항을 통보하기 위하여 계획된 훈련을 동 대원들이 받도록 확보한다.
- 다. 염화비닐 제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남극조약 지역 탐사대가 남극조약 지역에 반입할 수 있는 염화비닐 제품을 이 부속서에 따라서 추후 제거하도록 하기 위하여 조언받을 수 있도록 확보한다.

제 11 조
재 검 토

이 부속서는 폐기물처리 기술과 절차의 향상을 반영하기 위하여 갱신될 것과 남극환경을 최대한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재검토를 받는다.

제 12 조
긴급한 경우

1. 이 부속서는 인명·선박과 항공기 또는 고가의 다른 장비와 설비의 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긴급한 경우에 취하여진 활동에 대한 통지는 즉각 모든 당사국에게 배포된다.

제 13 조
수정 또는 개정

1. 이 부속서는 남극조약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되는 조치에 의하여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동 조치가 달리 상술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또는 개정은 하나 이상의 남극조약 협의당사국이 수탁자에게 아래의 기간내에 동 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거나 또는 동 조치를 승인할 수 없음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조치가 채택된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 종료 1년후에 승인된 것으로 보고 발효된다.

2. 위의 제1항에 따라 발효되는 이 부속서의 어떠한 수정 또는 개정도 수탁자가 그밖의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승인 통고를 접수하였을 때부터 그 다른 당사국에게 발효된다.

환경보호에 관한 남극조약의정서 부속서Ⅳ

해양오염방지

제 1 조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을 위하여

- 가. "배출"이라 함은 원인여하를 불문하고 선박으로부터의 모든 유출을 말하고, 유실·처분·누출·누설·배수·방출 또는 공출을 포함한다.
- 나. "쓰레기"라 함은 제3조 및 제4조가 다루는 물질을 제외한 선박의 통상적인 운항중에 발생하는 신선한 어류와 동 어류의 부분을 제외한 모든 종류의 음식·가사 및 운항상 생기는 폐물을 말한다.
- 다. "MARPOL 73/78"이라 함은 1973년 선박으로부터의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과 동 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 및 그 이후 발효한 모든 개정을 말한다.
- 라. "유해 액체물질"이라 함은 MARPOL 73/78의 부속서Ⅱ에서 정의된 유해액체 물질을 말한다.
- 마. "기름"이라 함은 제4조 규정에 근거한 석유화학 제품이 아닌 원유·연료유·슬러지·폐유 및 정제유를 포함한 모든 형태의 석유를 말한다.
- 바. "유성혼합물"이라 함은 유분을 함유한 혼합물을 말한다.
- 사. "선박"이라 함은 해양에서 운항중인 모든 형태의 배를 말하며 수중익선·공기부양선·잠수선·부양기선·고정 또는 부양되어 있는 플랫폼을 포함한다.

제 2 조 적 용

이 부속서는 각 당사국에 대하여는 당사자의 국기를 계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에게, 그리고 남극운항에 종사하거나 동 운항을 지원하는 그밖의 다른 선박에 대하여는 동 선박이 남극조약지역에서 운항중인 동안에 적용된다.

제 3 조 기름의 배출

1. 해양으로의 기름 또는 유성 혼합물의 배출은 MARPOL 73/78의 부속서 I 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남극조약지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은 해양으로 배출할 수 없는 모든 슬러지·오염된 벨러스트·탱크 세정수 및 그밖의 다른 기름 찌꺼기와 혼합물을 선박내부에 저장하여야 한다. 선박은 이 찌꺼기를 남극조약지역 외부의 수용시설 또는 MARPOL의 부속서 I 하에서 달리 허용된 것처럼 한다.

2. 이 조는 다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선박 또는 그 장비의 손상으로 인하여 일어난 해양으로의 기름 또는 유성혼합물의 배출

(1) 다만, 배출을 방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손상의 발생 또는 배출이 발견된 후에는 모든 합리적인 예방책이 취하여야 한다는 조건하에서이다.

(2)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이 고의적으로 손상을 초래하거나 또는 분별력 없이 그리고 손상이 초래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도 행동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오염으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특정한 오염사고에 대처할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름을 포함한 물질의 해양으로의 배출

제 4 조
유해 액체물질의 배출

해양환경에 유해한 정도의 양 또는 농축된 유해 액체물질과 그밖의 다른 화학 또는 기타 물질의 해양으로의 배출은 금지된다.

제 5 조
쓰레기의 처분

1. 합성बाट줄·합성어망 및 플라스틱제 쓰레기봉을 포함한 모든 플라스틱류를 해양으로 처분하는 것은 금지된다.
2. 종이 제품·넙마·유리·금속·병·도기류·던니지·소각재·라이닝과 포장 물질을 포함한 그밖의 모든 쓰레기의 해양으로의 처분은 금지된다.
3. 음식찌꺼기의 해양으로의 처분은 동 찌꺼기가 분쇄기 또는 연마기를 통과하였을 때 허용될 수 있다. 다만, 동 처분이 MARPOL 73/78의 부속서 V 하에서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행가능한 한 육지와 빙봉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행하여져야 하나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가까운 육지 또는 빙봉으로부터 12해리 미만으로 떨어져서는 안된다는 조건하에서이다. 이와 같이 분쇄되거나 또는 연마된 음식찌꺼기는 25밀리미터 이하의 구멍을 가진 스크린을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4. 이 조에서 다루어진 물질 또는 재료가 상이한 처분 또는 배출 요건을 포함한 배출 또는 처분을 위한 그밖의 다른 물질 또는 재료와 혼합되어 있을 때에는, 가장 엄격한 처분 또는 배출요건이 적용된다.
5. 위의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 가. 손상의 발생 전후에 유출을 방지 또는 최소화할 목적으로 모든 합리적인 예방책이 취하여졌다는 조건하에 선박 또는 그 장비에 대한 손상으로부터 발생하는 쓰레기의 유실

나. 모든 합리적인 예방책이 그러한 상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취하여졌다는 조건하에 합성어망의 우발적인 상실

6.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쓰레기 기록부의 사용을 요청한다.

제 6 조 하수의 배출

1. 남극운항을 과도하게 훼손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 각 당사국은 육지 또는 빙봉의 12마일 이내에서 처리되지 아니한 하수(MARPOL 73/78의 부속서IV에서 정의된 "오물")의 해상으로의 어떠한 배출도 배제한다.

나. 그러한 거리가상으로 떨어진 경우, 저장탱크에 수용된 하수는 동시에 배출되어서는 안되나, 적당한 속도로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경우 선박 4노트 정도의 속도로 항행중일 때 배출한다.

이 항은 10인 또는 그이하의 인원을 운반하도록 공인된 선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하수 기록부의 사용을 요구한다.

제 7 조 긴급한 경우

1. 이 부속서의 제3조 내지 제6조는 선박과 승선한 인명의 안전 및 해상에서의 인명구조와 관계되는 긴급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 긴급한 경우에 취하여진 활동에 대한 통보는 모든 당사국과 위원회에 즉각 배포된다.

제 8 조
부속 및 관련생태계에 대한 효과

이 부속서의 규정을 이행하는 데에는 남극조약지역외의 부속 및 관련생태계에 대한 피해를 피하여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적절한 고려를 한다.

제 9 조
선박의 저장능력 및 수용시설

1. 각 당사국은 자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모든 선박과 남극운항에 종사하거나 또는 동 운항을 지원하는 그밖의 다른 선박이 남극조약지역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슬러지·오염된 벨러스트·탱크 세정수 및 그밖의 다른 기름 찌꺼기와 유성 혼합물의 저장을 위하여 선내에 충분한 용량의 1개 또는 여러개의 탱크를 설치하고, 남극조약 지역에서 항행중일 동안에는 충분한 폐기물 수용능력이 있으며, 동 지역을 떠난 후 수용시설에 동 기름찌꺼기 및 쓰레기를 배출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하였음을 확보한다. 선박은 또한 유해 액체물질에 대한 충분한 수용능력을 보유한다.

2. 각 당사국은 동 당사국의 항구에서 선박이 남극조약지역으로 출발하거나 동 지역으로부터 도착하는 경우, 실행할 수 있는 한 신속히 모든 슬러지·오염된 벨러스트·탱크 세정수·그밖의 다른 기름찌꺼기와 유성 혼합물 및 선박으로부터의 폐기물을 수용하기 위한 적절한 시설이 지나친 지연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동 시설을 사용하는 선박의 필요에 따라 제공되도록 확보한다.

3. 다른 당사국의 항구에서 남극조약지역으로 출발하거나 또는 동 지역으로부터 도착하는 선박을 운항하는 당사국은 항구수용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남극조약 지역에 인접하여 있는 당사국이 불공평한 부담을 받지 아니하도록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당사국과 협의한다.

제 10 조
선박의 설계·건조·선원배치 및 장비

남극운항에 종사 또는 동 운항을 지원하는 선박의 설계·건조·선원배치 및 장비를 설치함에 있어서, 각 당사자는 이 부속서의 목적을 고려한다.

제 11 조
주권면제

1. 이 부속서는 어떠한 군함·해군보조함 또는 국가가 소유 또는 운영하고 당분간 정부의 비상업적 역무에만 사용되는 그밖의 다른 선박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각 당사국은 동 당사국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동 선박의 운영 또는 운영능력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적절한 조치를 채택함으로써 그러한 선박이 합리적이고 실행할 수 있는 한 이 부속서와 일치되게 행동할 것을 확보한다.

2. 위의 제1항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각 당사국은 남극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고려한다.

3. 각 당사자는 다른 당사국에게 이 규정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하여 통보한다.

4. 의정서 제18조 내지 제20조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는 이 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예방조치·긴급 대비 및 대응

1. 남극조약지역에서의 해양오염 긴급사태 및 그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당사국은, 의정서 제15조에 따라 남극조약지역에서 운항하고 있는 고정장소 또는 선박운항의 일부분을 형성하는 소형선박이 아닌 특히 화물로서 기름을 운반하고 있는 선박에 대한 긴급 조치계획과 해양으로 돌출되어 있는 연안설비 시설에서 기인하는 기름 누출에 대한 긴급 조치계획을 포함한 남극조약지역에서의 해양오염 대응을 위한 긴급 조치계획을 개발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당사국은,

가. 동 계획의 수립 및 이행시 협력하고,

나. 위원회·국제해사기구 및 그밖의 다른 국제조직의 조언을 구한다.

2. 당사국은 또한 긴급오염사태에 대한 협력대응을 위한 절차를 수립하고, 동 절차에 따라서 적절한 대응행동을 취한다.

제 13 조
제 검 토

당사국은 이 부속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MARPOL 73/78하에서 채택된 어떠한 수정과 새로운 규제를 포함한 남극해양환경의 오염을 방지·축소하고 대응하기 위하여 이 부속서의 제규정과 그밖의 다른 조치를 계속 재검토한다.

제 14 조
MARPOL 73/78과의 관계

MARPOL 73/78에도 또한 당사국인 당사국에 대하여는, 이 부속서의 어떠한 내용도 그에 따른 구체적 권리 및 의무를 훼손하지 아니한다.

제 15 조
수정 또는 개정

1. 이 부속서는 남극조약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되는 조치에 의하여 수정 또는 개정될 수 있다. 동 조치가 달리 상술하지 아니하는 한 수정 또는 개정은 하나 이상의 남극조약 협의당사국이 수탁자에게 아래의 기간내에 동 기간의 연장을 희망하거나 또는 동 조치를 승인할 수 없음을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조치가 채택된 남극조약 협의당사국회의 종료 1년후에 승인된 것으로 보고 발효된다.

2. 위의 제1항에 따라 발효되는 이 부속서의 어떠한 수정 또는 개정도 수탁자가 그밖의 다른 당사국으로부터 승인 통고를 접수하였을 때부터 그 다른 당사국에게 발효된다.